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37-10

깨끗한 대한민국
클린 코리아

2008

부패방지 심의 · 의결례집

제7집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발 간 사



국가청렴도 향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의 벽을 해소하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한편으로는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전 예방과 사후 적발·처벌을 아우르는 체계적·종합적 반부패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유발적인 불합리한 제도의 발굴·개선, 청렴도 측정·평가, 부패신고사건 접수·처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그리고 반부패 교육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청렴문화 확산과 신뢰 사회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펴내는 「부패방지 심의·의결레집」은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 부패방지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사항을 요약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는 부패신고 관련 122건,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30건, 부패영향평가 및 제도개선 관련 11건 등의 심의·의결 내용을 수록하여 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위한 정책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향후 사료적 가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획기적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양심적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식하고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자원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렴문화의 정착은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의 힘만으로 이룩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공직기관·시민단체·국민 모두가 청렴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의지를 확산하는데 다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심의·의결레집이 공공·민간부문을 망라하여 반부패·청렴 정책 참고자료로, 혹은 학술·연구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국민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9. 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동건*

일 러 두 기

- 「부패방지 심의·의결레집」은 깨끗한 사회 건설을 위한 부패사례 및 부패 예방활동 홍보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자성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부패 업무활용 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과 보고사항 및 그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 자료집입니다.
-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상정순서에 따라 수록하되, 의결사항은 신고사건, 보호·보상건, 제도개선 권고안 등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였고, 보고사항은 위원회 내부업무 관련사항 및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사안으로 목차만 수록하였습니다.
- 본 심의·의결레집의 신고사건 등의 자료는 부패의 신고에 대한 신고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위원회 내부적으로 처리방향을 의결한 사안일 뿐임에 따라 신고자의 보호와 피 신고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을 배제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 특히, 권한 있는 기관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기 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제1장 의결사항..... 11

제1절 신고사건..... 13

I. 구)국가청렴위원회..... 15

1. 국립 대학교 교수의 연구용역비 횡령 등 의혹 17
2. 특급호텔 유치 관련 특혜 의혹 이첩기관 변경 18
3. 기초자치단체장과 도로관련 공무원의 부패행위 19
4. 광역시의회 의원의 공공기관 재산손실 등 비리 의혹 20
5. 중소기업 대표의 기술개발지원금 횡령 등 의혹 21
6. 대기업의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 22
7. 고용보험료 과다 청구 23
8.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비리 의혹 24
9.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25

II. 국민권익위원회..... 27

1. 국립○○연구기관 예산횡령 비리 의혹 29
2. 보조사업자 보조금 허위교부 등 비리 30
3. 국립○○대학교 교수 연구비 횡령 등 비리 의혹 31
4. ○○안전성능 연구시설 특혜 의혹 32
5. 연안정비사업 관련 예산횡령 비리 의혹 33
6. 기초자치단체장의 행동강령 위반 의혹 34
7.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35
8. 민간병원의 요양급여 부당편취 비리 36

Contents

9. 유령직원을 이용한 복지관 인건비 편취	• 37
10.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부당발급	• 38
11. 도로보수용 관급자재 납품비리 의혹	• 39
12. ○○식품의 군납비리 의혹	• 40
13. 유가보조금 편취 등 비리 의혹	• 41
14. 정부 보조금 부당집행	• 42
15. 토지거래업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등	• 43
16. 공사관련 시공사에게 뇌물 요구 및 수수	• 44
17. 건설사업 허가를 이유로 부당알선 및 금품요구	• 45
18. 지하차도 설치공사 불법시공	• 46
19. 풍랑관련 보조금 및 용자금 지급비리 의혹	• 47
20. 중소기업 사장의 정부지원금 편취	• 48
21. 자치단체장 등 권한을 남용한 청탁 의혹	• 49
22. ○○공사 발주공사 공사비용 부당편취 비리 등	• 50
23. ○○공사 ○○지사 준설사업 관련 비리 의혹 등	• 51
24. 보험급여 허위 청구 비리 의혹	• 52
25. 공직유관단체 연구원의 연구비 횡령	• 53
26. 개발행위 준공검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 54
27. ○○유역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산손실 등	• 55
28. ○○연구원 예산낭비 의혹	• 56
29. 정부보조금 지원사업비 부당집행 등 혐의	• 57
30. 하천확장공사관련 건축물보상금 부당지급	• 58
31.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토지편취	• 59
32. 행정심판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 60

33. 지방공기업 직원의 수뢰 및 배임	• 61
34. ○○병원 요양급여 부당편취 등 비리 의혹	• 62
35. 상수도관 납품비리 의혹	• 63
36. 특정업무 경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 64
37. 「특정업무경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65
38. 「특정업무경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재조사요구	• 66
39. 정부보조금 집행 비리 의혹	• 67
40. 용역사업실적 허위기재로 용역대금 부당 편취	• 68
41. 전력량계 납품비리 의혹 등	• 69
42. 교통량 조사장비 등 납품비리 의혹	• 70
43. 시공회사의 관급자재 불법처분	• 71
44. 주유소 도로점용 및 방호시설 허가관련 비리 의혹	• 72
45. 한국○○연수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	• 73
46.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금 횡령 의혹	• 74
47. 공직유관단체장의 업무상배임	• 75
48.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의혹	• 76
49.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금품수수	• 77
50. 토지업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 78
51. 종교시설에 의한 산림훼손 관련 부패 의혹	• 79
52. 사회복지법인의 국고지원금 횡령 의혹	• 80
53. 사행성 불법게임 관련 금품수수 의혹 등	• 81
54. ○○청 지원연구비 횡령 등 비리 의혹	• 82
55. 국고지원금 불법 전용 등 혐의	• 83

Contents

56. 공립학교 축구부 감독의 알선·수뢰 의혹	• 84
57. 유가 보조금 부당편취 의혹	• 85
58. 원생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편취 의혹	• 86
59. 공사 지장물 보상관련 비리 의혹	• 87
60. ○군부사관 선발비리 의혹 등	• 88
61. 가정상담센터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 89
62. 마을 이장의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 90
63.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정발급 의혹	• 91
64. 준설사업 계약관련 준설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 92
Ⅲ.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93
1. 배수펌프장 밸브 설치 예산 낭비	• 98
2. 의료급여 비용 부당청구 의혹	• 99
3. 생동성 시험결과 조작 및 평가 업무 태만	• 100
4. 고속철도 유도대책비용 편취 및 감사대비 증거 조작 행위	• 101
5. 사립학교 운영관련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의혹	• 102
6. ○○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관련 금품수수 등 의혹	• 103
7. 국공립병원 방사선과 의료기기 납품비리 의혹 등	• 104
8. 시금고 선정 관련 금품수수 등 의혹	• 105
9.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법인 선정 비리	• 106
10. 공공기관 발주공사 담합 비리 의혹 등	• 107
11. 예산낭비 부패행위 신고	• 108
12. 사단법인에 보조금 불법지원 및 부당집행	• 109
13. 공기업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부당대출 관련	• 110

14. 국립병원 정보화 사업 등 비리 의혹	• 111
15. 정부투자기관 납품관련 비리 의혹	• 112
16.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등 세무비리 의혹	• 113
17.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의혹	• 114
18. 국립대 교수 연구비 부정수급 등 의혹	• 115
19. 지방자치단체 교육공직자의 부정처사후수뢰 등 의혹	• 116
20. 하수도준설공사 관련 문서조작 및 국고낭비	• 117
21.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 관련 비리	• 118
22. 공공기관 청사 신축교환사업 비리 의혹	• 119
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관련 부패행위	• 120
24. 공기업 보증사업장의 대금관리 비리	• 121
25. 공기업 보증사업장의 분양대금관리 비리	• 122
26.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관련 예산낭비	• 123
27. ○○○과학화 무인경계시스템사업관련 비리 의혹	• 124
28. 공사감리원의 뇌물수수 등	• 125
29. GPS기반 다국어 관광 안내 솔루션 개발 비리 의혹	• 126
30. 경찰관의 부정처사 후 수뢰 등 의혹	• 127
31. 정부투자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관련 부패행위 의혹	• 128
32. 치과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	• 129
33. 약국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	• 130
34. 사회복지법인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등	• 131
35. 등기기록변경 부당처리 및 사건처리명목 금품수수	• 132
36. 면세유 관련 비리	• 133
37.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비리 의혹	• 134

Contents

38. ○○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	• 135
39. 군 화학오염 탐지 및 측정 장비 납품 비리	• 136
40.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 의혹	• 137
41. 군부대 유류시설 개선공사 납품비리 의혹	• 138
4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 139
43. 지장물 보상금 지급 담당자의 예산낭비 등 의혹	• 140
44. ○○대학교 교수의 연구지원금 유용	• 141
45. 부도상가건물 레스토랑 신고 관련 비리	• 142
46. 매립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자 선정비리 의혹	• 143
47. 재래시장 육성자금 횡령 등 의혹	• 144
48. 산지전용허가 관련 부패행위 의혹	• 145
49. 군 숙소 보수 운영경비 비리 의혹	• 146

제2절 신고자 보호 147

1. 「국립병원 전산화사업 관련 예산낭비 비리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 149
2.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서의 업무처리 부적절」건 관련 신변보호조치 요구	• 150
3. 「○○법원장의 위법한 인사발령 등 비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 151
4. 「주민소환투표 과정 비리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 152
5. 「○○식품의 납품비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 153

6. 「○군 영관급 장교의 행동강령위반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 조치요구	• 154
---	-------

제3절 신고자 보상..... 155

1. 보상금 지급..... 157

1.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59
2. 「부산 ○○의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60
3. 「○○시 ○○동사무소 각종 수당 허위 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61
4. 「○○시 ○○의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62
5. 「청소년 수련단체의 보조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63
6.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64
7. 「공무원의 공금횡령등 비리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65
8. 「○○시 ○○의원 등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66
9. 「○○물자 운송관련 부조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67
10.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68
11. 「○○연구원 출장비 횡령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69
12. 「중소기업 창업관련 농지조성비 부당감면」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70
13. 「○○ 직원사옥부지 매입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71

Contents

14. 「○○시 청소용역업체의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72
15. 「국고보조사업 관련 예산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73
16. 「화학작용제 탐지장비 납품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74
17.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75
18. 「태풍피해 어민의 복구사업 보조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 176
II. 포상금 지급	177
1. 「생동성시험결과 조작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	• 179
2. 「국·공립병원 의료기기 납품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	• 180
3. 「국가유공자등록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	• 181
4. 「공무원 직무관련 부동산 투기」건 관련 포상금 지급	• 182
5. 「○○-○○공사구간 공사대금 편취」건 관련 포상금 지급	• 183
6. 「국가유공자 등록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	• 184
제4절 제도개선	185
1.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187
2.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	• 191
3.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권고안	• 195
4.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권고안	• 200
5.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	• 207

6.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217
7.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227
8.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239
9.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 252

제5절 부패영향평가..... 263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법령개선 권고안 · 265
2. 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부패영향평가 · 277

제6절 법령·예규, 기타..... 285

1. 법령·예규..... 287

1.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안 · 289
2.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안 · 290
3.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안 · 291
4.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안 · 292
5.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사무 운영지침안 · 293
6.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안 · 294
7.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안 · 295
8. 부패영향평가 지침안 · 296
9.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 297

Contents

10.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 298
11.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 299
1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전부개정안	• 300
1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수정안	• 301
II. 기 타.....	303
1.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	• 305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제재	• 306
제2장 보고사항.....	307
1. 보고목록	• 309
 【附 錄】	
1.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321
2. 전원위원회·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340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 341
4.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342
5. 국민권익위원회 이용 안내	• 343

제1장 의결사항

제1절 신고사건

- I. 구)국가청렴위원회
- II. 국민권익위원회
- III.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제2절 신고자 보호

제3절 신고자 보상

- I. 보상금 지급
- II. 포상금 지급

제4절 제도개선

제5절 부패영향평가

제6절 법령·예규, 기타

- I. 법령·예규
- II. 기타

제1절 신고사건

- I. 구)국가청렴위원회
- II. 국민권익위원회
- III. 2003~2007년도 이첩사건처리결과 추록

I. 구)국가청렴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00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 － 위 대학교 내 연구실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로 인건비 청구 및 영수증 첨부로 연구용역비를 횡령한 부패의혹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1997.경부터 2007.경까지 ○○부 및 일반기업체 등으로부터 액수미상의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 － 연구에 참석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청구하거나 연구생에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또한 연구기자재 임차료와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돌려받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용역비 약 2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강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연구비 약 1억 6,107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 통보일자 : 2008. 4. 30.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감사원이 분과2007-74호('07. 7. 23.) 「특급호텔 유치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재조사요구를 최초 조사결과와 같이 검찰청에서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하려고 함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신고기록을 반송 받음

2. 의결이유

- 위원회가 부패행위라고 의결한 중요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 및 검찰청이 감사 및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 처리함으로써 부패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기능 및 견제기능이 사라져 버린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부패행위를 묵인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기록 및 관련 증거자료 등에 따라 업무상배임 및 특혜부여에 의한 뇌물수수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7-74호('07. 7. 23.) 「특급호텔 유치 관련 특혜 의혹」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 도로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 － 피신고자들의 친인척이 거주하는 곳으로 진로를 바꾸어 도로를 개설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친인척들에게 이익을 주게 하는 등의 부패행위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들은 직위 등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농어촌도로사업계획 하에 도로를 시공하면서 사실에 입각하여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진로를 바꾸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이익을 주고 예산을 낭비한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사기관의 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노선변경은 당초 계획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결론
- ※ 통보일자 : 2008. 9. 17.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광역시의회 의원 및 ○○지점 요금징수업무 담당자들로서,
- － 2001.경부터 피신고자 광역시의원은 불법으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도 수천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금징수 업무담당자들은 위 불법사실을 묵인해주어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 － 피신고자들은 2001. 9. 경부터 2007. 5. 경까지 식당을 운영해 오면서 불법으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여 불법 사용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검침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묵인해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의 감사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소관기관에 송부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불법 사용한 전기요금 환수하고 기타 혐의사실은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
- ※ 통보일자: 2008. 5. 22.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중소기업 대표이사로서,
- ○○청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기술혁신개발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자재 구입비 및 출장비 부당집행의 방법으로 연구자금을 횡령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1996.경부터 2006. 3.경까지 ○○청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기술혁신개발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 연구용역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 사실이 신고자,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 ※ 통보일자 : 2008. 7.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공사에 ○○장치를 납품하면서 ○○지사를 통하여 원가증빙자료인 수입신고서 가격을 실제금액보다 40 ~ 50%를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6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의 부패행위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공사 감사실에서 혐의내 용을 추가 적발한 사건으로 기 신고사건과 병합할 필요성이 있어 수사중인 수사기관으로 이첩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사장의 1명은 33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입건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관련의안〉**

- 분과2007-129호(2007. 12. 19.) 「대기업의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능력개발사업의 ○○지역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후, 중소기업 직원의 신상정보를 입수한 후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여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액수미상의 훈련위탁 비용을 수령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2006년부터 ○○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능력개발사업의 ○○지역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중소기업 직원의 신상정보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여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훈련위탁 비용을 수령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손실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관내 하수처리를 위해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사 대표 및 책임감리원 등으로
- －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및 정화조 공사 등을 시공하면서 기성내역서 및 감리조서를 허위 작성·보고하여 기성금 중 상당액을 편취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하는 등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 － 하수관거 정비사업 1차분을 시행하면서 설계서와 다르게 축소하여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및 정화조 공사 등을 한 후 기성금을 편취함이 확인되며,
- － 책임 감리원은 현장 감리 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시공사가 마치 설계서대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기성보고 하는 등 시공사로 하여금 기성금을 편취토록 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3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420,000천 원 편취 혐의)
- ※ 통보일자 : 2008. 7. 28.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청 고위공무원인바, 특정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업체에게 수차례에 걸쳐 용역을 수주케 한 후 향응 및 금품을 수시로 제공받는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한 혐의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업체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금 213,469천 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케 하였으며 또한 각종 수당을 지급 받게 한 후, 여러 명목으로 차량 편의 및 해외여행과 LCD TV, 고급양주 및 립살롱 접대 등 향응 및 금품을 수시로 제공받는 등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소관기관의 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및 소관기관에 통보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대검찰청 : 입건유예
- － 제2중앙징계위원회 : 감봉2월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II. 국민권익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립○○연구기관 산하 연구소에 재직하는 공무원들로, 각종 먹이사료 등을 구입하면서 납품수량을 부풀려 그 부풀린 금액을 납품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들은 연구소에 재직하는 동안 각종 먹이사료 등을 구입하면서 납품업자와 납품수량을 부풀려 구입하고 그 부풀린 금액을 납품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여 2003. 3.경부터 2007. 12.경까지 두개의 납품업체로부터 총 1억여 원에 해당하는 사료를 납품받으면서 동 납품업체들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타 납품업체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횡령한 부패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2008. 9. 17.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농산물유통업을 하면서 벼 보관용 창고 건축 관련 보조금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인 바,
- － 벼 보관용 창고 건축을 위한 보조사업 신청 시, 보조 사업비와 자부담으로 벼 보관창고를 건축하는 조건으로 보조사업 승인을 받은 후 자부담 없이 창고를 건축 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에서 2007. 4.경 ○○시에 벼 보관용 창고 건축을 위한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보조 사업비 5,000만 원과 자부담 5,100만 원으로 벼 보관창고를 건축하는 조건으로 보조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자부담 없이 창고를 건축했으면서도 1억 1,000만 원이 전액 소요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부패행위를 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구속 기소의견송치, 유사행위자 11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2008. 8. 6.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들로서,
- －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매하여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에 대한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 － 피신고자들은 연구용역 4건을 용역 받아 이를 추진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여 개인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연구용역 지원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어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기관에서는,
- 안전성능시험기 등을 연구·제작·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2000. 3.경 ○○업체와 2001. 12. 31. 까지 제작·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6. 3. 말 완공하는 것으로 하여 3차례 계약을 연장하였음에도 시험기가 설치 완료되지 못하였고, 계약 기간 1년이 경과한 2007. 3.경 설계 성능보다 훨씬 못 미치는 성능으로 시험하고 개발 완료한 것으로 관계기관에 보고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의혹과 시험기 성능이 미달될 수 있다는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시험기 성능이 미달된 상태에서 완공된 것은 안전기술 개발에 문제가 될 중요한 사안이며 사후조치로 기술개발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예산을 낭비한 것이므로 사업진행과정에서 부실감독과 장비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점검 및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조사결과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약 4억 6,900만 원) 부과, 민간업체와 협조하여 시험기 확보 후 사후 평가완료
- ※ 통보일자 : 2008. 9.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처리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 ‘연안정비사업’ 수주업자 대표 및 공무원들로
- 공사수주업자와 하수급자가 허위준공검사를 받아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순성토 및 사석 운반량을 부풀려 운반비를 편취하고 관련공무원은 이를 묵인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가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2005. 12. 경 발주한 ‘○○정비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주업자와 하수급자는 허위준공검사를 받아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공사연도별 준공검사를 ○○군청으로부터 받으면서 순성토 및 사석 운반량을 부풀려 운반비 합계 약 2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관련 공무원들은 위 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과정에서 이를 묵인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부패행위를 한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통보일자 : 2008. 11.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인 바,
- － 피신고자는 개인휴가를 낸 뒤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들과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으며, 피신고자 동생의 시정개입 의혹 및 피신고자 운전기사 경력자를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문화재단의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확인한 바에 의하면,
- － 직무관련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오긴 했으나 경비를 피신고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이 확인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사실에 대하여도 귀국 후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하여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아니며,
- － 친동생의 시정개입 의혹은 신고자가 단순히 언론보도 내용을 적시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 － 피신고자의 운전원 경력자를 문화재단 이사로 선임한 문제는 재단 이사회 의사결정을 거친 것으로 선임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피신고자가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본 사안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 볼 수 없음

3. 의결결과

종결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또는 산하기관의 고위공무원 들로, 비공식적 퇴임간부의 환송행사에 자비 또는 업무추진비 로 식사를 대접하고 3백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등 행동강령 위반 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 － 퇴임간부의 송환영회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로 경비일부를 집행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중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산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해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에 통보 필요

3. 의결결과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에 통보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14명 대상으로 총 금 170만 원 환수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병원 이사장 등으로서,
- － 관상동맥환자 등의 시술에 사용하는 혈관조영용 카테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후, 이를 다시 세척하여 다른 환자시술에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3. 9. 경부터 2007. 7. 경까지 6억 5,787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 － 의료기기 카테터 등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2003. 9. 경부터 2007. 7. 경까지 요양급여 6억 5,787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어, 위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등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피신고자 병원 이사장 등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 약 15억 8,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통보일자 : 2008. 12. 15.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 경찰청 조사에서 6억 2,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신고자가 추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통하여 9억 6,700만 원이 추가되어 도합 15억 8,700만 원의 편취사실을 확인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장애인 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재직중인 자로,
- － 피신고자 B를 A가 사무국장인 장애인 복지관의 직원으로 채용시킨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하여, 2005. 12.부터 2008. 2.까지 급여 4,900여만 원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관련공문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검토 한 바,
- － 피신고자 A는 2005. 12. 이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신고자 B를 생활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2008. 2. 29.까지 매월 실시하는 급여신청서에 포함하여 신청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직원명부, 출근대장 등 관련서류를 이상 없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고, 자치단체에서 피신고자 B의 급여를 복지관에 지급하면 복지관은 다시 B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유령직원인 B를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보험혜택을 받게 한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피신고자 사기혐의 송치, 부당지급 급여액 약 5,100만 원 확인하여 전액환수
- ※ 통보일자 : 2008. 10. 9.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처리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시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 담당자로
 - － 불법전용 된 농지의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함은 물론, 지목을 “천(川)”에서 “전(田)”으로 허위 기재하여 허가증을 발급하였고,
- 피신고자 B는 ○○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업무 담당자로
 - － 위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농지가 불법 전용이 이루어졌음을 알면서 허위로 농지이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의견을 작성·보고하였고,
- 피신고자 C는 ○○면장으로
 - － 위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에게 인근 하천의 모래, 자갈을 채취하여 평탄작업을 하도록 하여 불법 전용 및 형질변경을 하도록 하였고,
 - － 피신고자 B가 위와 같이 허위의 심사의견서를 작성·보고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 － 불법 전용 및 형질변경 농지를 농지이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허위 심사의견서 작성,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부당 발급한 사실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상급기관인 ○○도에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공무원 4명, 민간인 2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직무유기, 허위 공문서작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 통보일자 : 2008. 10. 24.(○○지방경찰청)
- － 행정기관 “주의”처분 및 공무원 6명 신분상 조치요구
 - ※ 통보일자 : 2008. 9. 3.(○○도)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도로보수용 자재 납품업자로서,
- 2006. 12. 8.부터 2008. 4. 25.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차도 신축이음 보수공사에 사용할 도로봉합제를 납품하면서, 관급자재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함에도 값싼 미국산 도로봉합제를 수입하여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고 2억 원 상당의 공공예산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 관세청 수입 현황보고서, 공사 관련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 값싼 미국 ○○사의 주차장 바닥재용을 수입하여 국내산 도로봉합제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관련회사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피신고자가 1억 579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 통보일자 : 2008. 11. 1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자로,
- － 피신고자는 2006년부터 군부대에 콩나물과 두부를 납품하면서 중량을 부풀려 납품하고 그 차액 수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품하역비를 같은 회사운전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참고인 진술, 업무일지 및 납품 지시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 － 피신고자는 2006. 11. 경부터 군부대에 콩나물 등을 납품하면서 콩나물과 두부의 중량을 속여 납품하거나 참기름 원산지표시 위반 등의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강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부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피신고자가 참기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농산 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할지역 지청으로 이송되어 수사 중임

※ 통보일자 : 2008. 12. 4.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택시운수회사 대표들로,
- － 2004. 1. 1.부터 택시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유가보조금은 실제 LPG 주유비용을 부담한 운전자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자들이 자비로 부담한 가스충전비용까지도 자신들의 택시회사에서 지급해 준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0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택시회사를 운영해오면서 택시 운전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유가보조금 4,000 여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이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에서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강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국고지원 “○○조성사업”을 추진한 자로, 자부담 없이 정부 보조금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자부담 포함하여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군청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타내었으며, 피신고자 B는 담당 공무원으로, 사업자가 자부담 확보 능력이 거의 없고 보조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현저히 떨어져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폐지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신고자 A가 보조금을 편취하도록 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사업비를 부풀려 1억 5천만 원 상당을 자부담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군청에 제출한 사실과, 피신고자 B의 규정에 위배된 업무처리에 대한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피신고자 2명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08. 10. 9.(경찰청)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 － 관할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농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동안 당초 구입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매매가 제한됨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유서를 바탕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금 39,739,12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 되고,
-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에 자경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나 실제 신청인들이 경작하지 않는 등의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신고자 30,000천 원, 명의신탁인 10,000천 원, 명의수탁인 7,000천 원 벌금형으로 각 약식기소
- ※ 통보일자 : 2008. 9. 16.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구청 ‘하수관 개량공사’ 공사감독공무원으로,
- － 위 하수관 개량공사의 원활한 공사를 빌미로 시공사에 금품을 요구하여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특정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것을 강요·수용케 하는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에서 피신고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빌미로 시공사로부터 2008. 3. 금1,500만 원을 계좌를 통하여 수수하였고, 같은 해 4월 시공사로 하여금 특정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것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직권남용과 뇌물수수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계좌추적 등 수사기관의 세부적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피신고자 구속기소(금10,000천 원 뇌물수수), 하도급업자 약식 명령(벌금3,000천 원), 현장소장 입건유예
- ※ 통보일자 : 2008. 8. 22.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들로,
- 건설 컨설팅 회사에서 아파트단지 건설을 하기 위해 2003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시청에 제출한 후,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2007년 초부터 피신고자들은 사업승인 조건을 이유로 사업 준비를 위한 설계용역을 특정업체가 하도록 부당하게 알선하는가 하면, 사업승인 조건으로 제3자를 통하여 약 20억 원의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녹취록이 확인되는 등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개발계획을 허가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참여업체를 알선한 의혹이 있고, 녹취록을 근거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신고자가 주장하고 있는 등 제기된 의혹사항에 대해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와 B는 자치단체 발주 지하차도 설치공사 시공사의 대표자 및 책임감리원으로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 준공내역서 작성 및 일부공정 생략, 기성공사수량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는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준공서류에 첨부된 준공사진, 신고사실과 참고인 진술, 기성금 지출내역 및 공사 진행 상황을 비교·검토 확인한 바, 시공사 대표인 피신고자 A는 공사 기성금 청구시 시공하지 않은 시설물들에 대해서 시공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기성공사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준공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 10억 7천만 원을 편취, 공공기관의 예산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 피신고자 B는 책임감리원으로, 시공업체가 제출한 허위 준공 내역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준공부분 감리조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시공업체가 기성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고, 한편 발주처의 사전 승인없이 시공업체가 일부공정을 생략하고 공사하는 것을 묵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부패행위 혐의가 인정되어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우리 위원회가 조사 이첩 후 정상시공하여 편취혐의 없음
- ※ 통보일자 : 2009. 1.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자치단체에서 풍랑관련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피신고자 B는 복구비를 지원받은 어민으로,
- － A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시설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풍랑관련 피해복구비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B는 복구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현지확인 및 신고자, 참고인 진술에서 피신고자 A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무면허 시설, 허가지역 외의 가두리 양식어업 시설 등을 포함시켜 피해복구비를 지급받게 하였고, 피신고자 B는 실제 복구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치단체로부터 193,500천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수협으로부터 126,370천 원을 융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부패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 편취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풍랑 피해 복구비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감사원으로 각각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자로,
- ○○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부보조사업 국고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배기장치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금을 허위로 부풀려 보고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유력한 증거자료인 공사계약서 원본을 확인한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금액이 금19,000천 원임에도, 공사계약금을 부풀려 금25,000천 원에 계약한 것으로 ○○공단에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 금17,500천 원을 지급받아 금3,000천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손실을 끼친 혐의가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 ※ 통보일자 : 2008. 10.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00광역시자치단체장 및 000구청장 등으로,
- － 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대표가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정·관계에 로비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지역 전·현직 언론사 대표들과 함께 불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직자로서 그 지위와 권한 등을 남용하였다는 취지임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 － 부패행위로는 볼 수 없으나, 선출직 공무원들의 행위가 국민의 시각에서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비춰질 수 있고, 부패한 지방 토호 세력들의 비호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 － 공무원행동강령 및 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보완이 필요할 수 있어 관계부처에 통보함

3. 의결결과

- 불이첩, 참고자료 통보
- － 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통보(2008. 7. 21.)

4. 처리결과**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주)○○대표이며, B는 ○○공사 직원들로서,
- － ○○공사 발주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관급자재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횡령하였고 위 ○○공사 직원들은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공사비 부당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공사 관련 자료 등에서 토목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시험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고,
- ○○공사 직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해주고 그 대가로 자동차 구매대금 및 골프 여행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일부 확인 되어 강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사 ○○지사 직원들로,
- －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설공사 사업자 대표로부터 골재와 모래 반출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사설계도를 특정인에게 제작하도록 요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식사 및 향응접대를 받는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 피신고자들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골재, 모래 등의 준설허가(반출)를 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위 준설 이익금 중 일정금액을 차후에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수차례에 걸쳐 식사 등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가 일부 인정되어 강제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피신고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 ※ 통보일자 : 2008. 12. 4.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인(知人)들을 허위환자로 둔갑시켜 이들이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액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 해 볼 때, 피신고자는 진료받지 않은 사람을 허위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는 한편, 직원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시술을 하게 하여 요양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일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피신고자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08. 12.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정부부처 산하단체 간부들로,
- 연구비를 전용 및 법인카드의 부당한 사적 집행과, 연구물을 직접 연구하지도 않고 실제 연구한 것으로 보고하여 연구비를 지급받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국가 출연금과 운영비를 집행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신고인, 참고인 등을 확인하고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전용하여 유흥비로 사용한 정황이 있고, 법인카드의 부당한 사적 집행 의혹이 있으며, 연구물을 직접 연구하지도 않고 인터넷 검색 후 짜깁기 등을 하고서 실제 연구한 것으로 보고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골프여행, 식사비 등을 각종 회의를 한 것으로 정리하여 처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비 등 국가 출연금과 운영비를 집행한 부패행위 의혹이 있어 감독기관의 확인 및 업무상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부 이첩 및 경찰청 기관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이며 피신고자 B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 －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담당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지목을 변경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등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 － 피신고자 A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인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계획서 및 설계도를 작성·제출하였으나, 계획도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였고,
- － 피신고자 B는 피신고자 A가 계획도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도대로 준공된 것처럼 허위로 출장결과보고서와 준공검사필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담당공무원 1명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08. 11. 26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연구원 직원들로서,
- － ‘2007년도 ○○유역 관리사업’의 설계서를 작성하면서 공사자재 등의 공사비 책정을 물가조사표나 견적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거나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하여 특정업체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주어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케 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설계서를 작성하면서 자재 구입비용을 견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하여 특정단체에게 4,0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주어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케 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및 담당공무원 진술, 공사 관련 자료 등에서 일부 확인되어져 또 다른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도에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예산손실액 2,781만 원 회수조치
- － 관련공무원 6명 및 시공감리원 2명 주의 조치
- ※ 통보일자 : 2008. 11. 3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연구원장, 사업단장, 관련부처 과장들로, 위험보험가입 중개사를 선정함에 있어,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업체가 당연히 낙찰되도록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다른 업체들이 입찰참여를 포기하고 이익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위험보험 가입 중개사 선정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여 심의평가표 반영요율을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평가내용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2단계 경쟁 입찰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중개사 입찰을 강행함으로써 보험중개사로 낙찰된 특정업체가 과다하게 높게 제시한 보험요율로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어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체험마을조성사업 보조사업자로
- －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위배하여 수의계약으로 숙식시설을 설치한 후 일부 시설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 피신고자 B는 위 보조사업을 감독하는 공무원으로
- －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확인이나 조치 없이 방치함으로써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케 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서류 및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 － 피신고자 A는「2005년도 ○○체험마을조성사업의 시행지침」을 위배하여 수의계약으로 종합안내소 등 시설공사를 하여 약 8,761만 원을 낭비함은 물론 숙식시설로 사적 사용하였고,
- － 수자원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세족장 및 탈의실 건물을 신축한 후 “마을공동작업소”로 허위 신고하여 사용승인을 득함은 물론 건축비 약 2억 원을 부당 집행하였으며,
- － 피신고자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묵인하여 성실의무 위반 등의 부패행위 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5. 이후 시행한 ○○체험마을 조성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하천확장공사 공사감독 공무원 및 보상담당자로,
- － 수해복구공사 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주택을 보상대상에 포함 하도록, 허위 편입 지장물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작성하여 주택 보상금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게 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사감독 공무원인 피신고자 A는 수해복구공사 공익사업지구 에 편입되지 않은 주택을 청탁에 의하여 보상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공사관련 보상업무 담당자인 피신고자 B는 당초 위 주택이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도, 허위 편입 지장물 보상금 지급조서를 작성, 동일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주택소유자가 주택보상금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2억 1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게 하는 등, 보상관련 담당공무원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탁에 의한 업무처리와 부당한 예산집행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케 한 혐의내용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내사종결(부정한 관계등에 대한 근거 없음)
- ※ 통보일자 : 2008. 11. 26.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자치단체 공무원이었던 자로,
- － 신고자 소유농지가 근린공원으로 수용된다고 말하면서, 수용대상 지역에 자기소유 토지가 있으면 소유권자로서 수용거부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소유 토지 일부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일부를 헐값으로 양도받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신고자 소유토지에 있는 조경수 등을 무단 철거하였으며, 건축설계도면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음에도 건축허가 당시 담당공무원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해준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지위남용 및 담당공무원들의 성실의무 위반, 건축설계업자의 허위문서 작성 등의 의혹이 있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하고, 농지양도 관계가 뇌물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관할 광역자치단체 이첩 및 경찰청 자료송부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신고자 소유 조경수 등을 무단 철거한 사실 확인 문책조치
※ 통보일자 : 2009. 1. 20.(관할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농지담당 공무원으로
- － 신고자가 제기한 『농지법 위반농지 원상복구 명령 등 이행청구』 행정심판 답변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마치 고발을 한 것처럼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허위 답변서를 작성·제출하였고,
- － 관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불법 농지 전용,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을 적발하고서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관련 공문서, 수사기록 및 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 － 신고인의 민원은 경찰관서 기록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나,
- － 이와 별도로 토지의 불법이용 상황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감독기관의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

3. 의결결과

관할 광역자치단체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자치단체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주차관련 직원들로
- 공단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친·인척 채용과 주차비로 징수한 금전의 횡령 및 부당한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견인을 대행하는 업체에 도움을 주고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단 이사장은 자격증이 없어 공단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부적격인데도 공단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였고,
- 공영주차 수금업무 종사자인 피신고자 A, B는 주차자로부터 매월 25만 원 씩 총 1,000여만 원을 받아 횡령한 의혹이 있고,
- 불법주정차 단속원인 피신고자 C, D는 견인업체에서 제공하는 견인차량에 동승하여 견인대행실적을 올려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병원 흉부외과 의사 및 심폐기 펌프보조기사로서,
 — 공모하여 수술용 재료 등을 구입하지 않고도 구매한 것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로부터는 수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병원 및 의료공단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2006. 경부터 위 ○○병원 흉부외
 과 수술재료를 구매하면서 허위 검수서류를 작성해주고,
 ○ 입원환자들에게 위 수술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
 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1억 2천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고, 의약품 납품업체들로
 부터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수수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어 강제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구속 1명, 불구속 1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여 7명은
 기소, 7명은 기소유예 처분함
 (편취금액 2억 4,000만 원, 약 1억여 원 뇌물수수 사실 확인)
 ※ 통보일자 : 2008. 12.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상수도용 주철관 및 강관 등을 생산하는 회사대표로, 2004. 경부터 상수도용 관로를 국내에서 생산한 KS인증 주철관으로 납품하기로 조달청과 계약한 후 전국의 자치단체에 납품하면서 중국에서 값싼 상수도관을 수입하여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편취하는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인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4. 1. 경부터 자치단체에 상수도관로 약 300억 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국내에서 생산한 KS제품이 아닌 중국산 주철관을 수입하여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약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되어 관련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강제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약 8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사실이 확인되어 업체 대표 1명 구속, 1명 불구속, 뇌물수수 공무원 14명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기관통보 27명

※ 통보일자 : 2008. 12.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장, 피신고자 B는 예산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특정업무경비예산을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격려금 지급 등 업무추진비 용도 등으로 집행하고, 월정액 지급기준(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구체적인 사용증빙을 갖추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특정업무경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하여서는 안되며, 특정업무경비를 직책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및 연구지원비 등 당초 편성목적과 다르게 업무추진비 용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공기관에 재산손실을 가한 부패행위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기관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해당 기관 주의 및 담당자 경고 조치, 제도개선
※ 통보일자 : 2008. 11. 21.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기관으로의 이첩은 부패기관 스스로 자신의 비위에 대해 조사하라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 － 수표추적 등의 금융조회를 통해 실제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므로 감사원 및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

2. 의결이유

- 특정업무경비 부당집행 관련 신고사항을 감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여 ○○기관으로 이첩한 위원회의 의결이 잘못되었거나 달리 불만한 사정이 없음

3. 의결결과

기각

4. 처리결과**5. 비 고**

1. 의안개요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기준금액 초과 월정액 지급 등으로 지적된 특정업무경비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대상자, 집행일시 및 집행용도 등을 특정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의 법령 준수 여부 및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재조사를 요구

2. 의결이유

- 해당기관이 스스로 특정업무경비 부당집행을 인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자체 조사 결과를 수용

3. 의결결과

재조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의결

4. 처리결과**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자신의 토지에 자부담 없이 국고 지원의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으로 구입이 불가한 시설물품을 구입하였으며, 피신고자 B와 C는 담당공무원으로 A의 위법한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사업완료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참고인 진술 및 입증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 A는 자부담으로 부지 매입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구입불가한 물품 약 4,000만 원 상당을 사들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피신고자 B, C는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위법성을 사실상 묵인해 주고 특히 준공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대표로서,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건설폐기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성내역을 허위 보고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재하도급 처리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임차사실이 없는 지입차를 동원한 것처럼 건설폐기물 반출 및 계근서류 등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성내역을 부풀려 보고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편취하고,
-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재위탁할 수 없음에도 회사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으로 처리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소유 차량이 운행한 것처럼 TRS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건설폐기물중량확인서 등을 허위 작성하는 등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45,418천 원 편취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3명)으로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08. 12.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역물관리용 전력량계 보급을 추진해 오면서, 특정업체만 위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참여시켜 사업자로 선정하고 또 다른 납품계약에서는 표준규격인증시험에 불합격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주고 금품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과, 관련기관의 구매자료 등 증거자료에서, 피신고자들이 사업계획을 특정업체에만 미리 알려주고 동일 소유의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켜 사업자로 선정한 사실,
- 또 다른 입찰 건에서 표준자격인증시험 등에 불합격된 업체를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시켜 전력량계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금품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교통량 조사장비 등을 수입하는 업체 대표로서,
- 2006년경부터 ○○연구원에서 발주한 교통량 조사장비 보수공사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수입면장 등 견적서를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여 편취하고, 연구원 소속 사업담당 직원 등은 위 사실을 묵인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교통량조사장비공사 등을 하면서 값싼 수입품의 가격을 부풀려 납품하고 공사비 차액 약 4억 1,2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일부 인정되어져 ○○연구원들의 금품수수 여부와 또 다른 지역에 대한 납품비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의 관급자재를 관리하는 시공회사의 책임자인 피신고자가, 관급자재인 철근을 하청업체의 철근기능공과 공모하여 브로커를 통하여 다른 공사장으로 불법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 시공사의 관급자재 관리담당자인 피신고자는 공사현장에 공급된 관급자재인 철근을 인수하고, 하도급업체의 철근기능공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다른 건설현장에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을 피신고자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부패혐의가 인정되어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국도주변 주유소에서 각종규정을 위반해가며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피신고기관에서 이를 묵인하고 봐주기 행위로 일관하고 있으며, 허가신청이나 감독과정에 금품수수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주장한 내용들을 확인한 결과 주유소들이 「위험물 안전 관리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들에 대해, 불법을 묵인해 준 의혹과 주유소허가 및 감독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반행위가 여러 건 발견된 소방분야는 광역자치단체로 이첩하고, 국도점유 및 사용과 관련된 분야는 국토해양부로 송부

3. 의결결과

- 광역시로 이첩 및 국토해양부 송부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원상복구 및 시정지시 6개 주유소, 행정처분 지시 1개 주유소
- － 담당공무원 2명 훈계 조치
- ※ 통보일자 : 2009. 1. 12.(○○광역시)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연수원장, 피신고자 B는 소속 연구소장으로서
- － 피신고자 A는 피신고자 B로부터 불상액의 금액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신고자 B는 연구소에 기부금 명목으로 입금된 600만 원을 횡령한 후 회계에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여 개인명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피신고자 A등에게 뇌물로 교부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연수원 소속 한 교수가 개인 명의로 수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수원의 시설 및 장비를 일시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연수원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자, 연수원은 ‘교육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수입 처리한 후 ‘교육장비 사용료 오류 입금분 반납’이라는 명목으로 지출결의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신고자 A의 지시에 의해 피신고자 B명의 계좌로 위 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금액에 대한 피신고자 B의 실제 지출내역 및 위 계좌가 연구용역비 등으로 불법 조성된 비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 실제 개발하지 않은 교재를 친분이 있는 교수들과 공모하여 교재를 개발한 것처럼 허위 교재개발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하지 않은 강의를 허위로 정산서를 제출하여 강의료를 수령하는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실제 학부생 등에게 지시하여 교재를 개발하였음에도, 후배 교수가 교재를 개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교재개발비 900만 원을 입금 후 되돌려 받아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신고자가 알고 있는 교수들을 활용하여 실제 강의하지 않고 허위로 강의사실을 조작하여 강의료 2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당시 수강생 명단을 확보하여 확인한바 협의가 인정되어 피신고자와 교재개발 및 강의 교수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및 감사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한국○○연구원의 전 원장으로서,
- －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던 중 자신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 약 20여명에게 직책수당 신설 등 임금상승을 기회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 실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낭비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공부문 경영혁신 조치 일환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여 2002. 까지 퇴직금 일괄 중간정산을 실시 후 2003. 부터 매 1년 마다 1개월 평균임금 지급에 동의 취지로 서명을 받아 중간정산을 실시중이나, 1년 단위 퇴직금 정산을 반대한 3인에 대하여는 2003~2005 3년분에 대하여 은행에 예치한 후 2006. 1. 경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시, 2005. 12.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바 있음
- － 그러나 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23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재 산정하여 그 차액 23,388천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동액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낭비한 혐의가 있으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1. 의안개요

-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상수도 공사 시공업체인 A건설(주)에서는 공사담당 공무원 및 관계 공무원과 지역 신문기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떡값 및 전도금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하고, 하자있는 부실 공사를 묵인해 준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2007~2009. 까지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A건설(주)은 공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24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전도금 명목으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기자 등에게 뇌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1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착공 전 반드시 책임감리회사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감리회사를 선정하지 않아 착공계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검토 없이 착공되었으며,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감리회사를 선정하였고, 감리가 없는 기간 중 담당공무원의 부정기적인 현장 확인 외에 책임 있는 감독이 실시되지 않았고, 그 기간 중 시공한 구간에서 수압시험 결과 누수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한 의혹이 있는 등,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로,
- 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던 중 관내 인쇄업자가 돈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방문한 후 빈 봉투만 들고 나오는 현장을 목격하고 출입문 쪽에 위치한 직원의 책상 책꽂이 위에 현금봉투가 놓여 있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지만, 해당 부서 전 직원이 수수사실을 부인하여, 금품수수 직원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 행동강령 이행점검 조사관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 금품제공자인 인쇄업자가 관련 부서 사무실에 현금 200만 원을 식사비 명목으로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누구에게 제공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아, 형법상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자치단체 농지전용, 토지거래 및 개발행위 허가 등의 토지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농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허위보고하고, 불법형질변경 등 행위를 묵인·방조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관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농지 약 330㎡를 기존 대지와 같은 높이 약 1.5m 이상 성토하여 사무실 등의 부지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인접한 농지 약 154㎡를 장독대로 사용하면서 잡석으로 포장하는 등 불법 전용한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후 원상복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 － 타인 명의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접수하여 허가함은 물론 준공검사 후 승인하고,
- － 위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이용의무 기간 중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데도 자경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태조사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유림 보호·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종교단체가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후에 종교유적지 개발을 위하여 산림을 심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종교단체에 의한 국유림 훼손을 방치하는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종교단체의 국유림 내 불법산지전용행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명령을 하고 행정대집행 등의 적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종교단체의 심각한 국유림훼손 사실을 묵인하는 등 국유림을 보호·관리하는 그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감독기관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기관경고(국유림 훼손에 대한 묵인 등 직무태만)

※ 통보일자 : 2009. 1.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소재 (사)○○사회복지회 이사장으로 ‘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 신축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착복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사적용도에 사용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복지회 통장 출금사실에서 피신고자의 딸 차량을 구입하는데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한 개연성이 보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전기공사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건축자재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1,000만 원, 기계설비 공사에서 1,000만 원, 도장 공사에서 900만 원,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착복 등으로 보조금 약 8,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사실이 인정 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황토 조적공사, 철근콘크리트 시공 등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개연성이 있어 강제수사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전 ○○경찰청 수사관 등으로, 불법온라인 도박 게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주거나, 압수수색을 하면서 불법도박 자금 수천억 원 중 일부만을 압수하여
- 결과적으로 불법게임 업자들로부터 고의로 압수하지 않은 수 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등의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당시 수사 내용 등에서 피신고자들이 사행성 오락게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되어져
- 당시 불법 자금에 대한 입·출금내역, 금품수수 여부, 참고인 조사 및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 강제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게임개발연구 사업을 하는 회사 대표로서,
- 국고 등 1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학교와 공동으로 게임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임 연구원들을 다른 연구단지 등에 파견 보내놓고도 연구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운영지침에 반하여 사무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케 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회사근무 연구원들의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 받은 인건비 지급 명세서 등의 확인을 통하여
-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약 4,000여만 원 상당의 연구지원비를 횡령한 사실이 일부확인 되어져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법인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를 인상·고시하면서 관련 근거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혈액수가를 결정·고시하고,
- 피신고자 B는 피신고자 A를 기망하여 혈액수가를 인상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인상근거와 달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B는 기존 전혈 혈액백을 샘플채취부착관 혈액백으로 교체 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혈액백 교체에 1개당 900원씩 인상요인이 있는 것처럼 피신고자 A를 기망하여 2005년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 개정·고시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약 5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연 5회 이상 다회헌혈자를 위한 건강검진권 구입비로 약 8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인건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등 총 137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피신고자 A의 성실의무 위반, 피신고자 B의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립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의 지도·감독 및 대학 입학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대학교 축구부 입학을 추천한 사례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전 고교 축구부 학부모 총무를 통하여 3학년 축구부 선수 A의 아버지에게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하여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전달하여 2,000만 원을 수수 후,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1억 원을 준비 후 찾아갔으나, ○○대학은 이미 추천이 완료되어 대신 △△대학 축구부로 입학을 시켜주기로 하고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외에도 실력이 뒤지는 다른 학생을 끼워 넣기 방법으로 진학시키고 학부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수수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개인사업자들과 일반 화물차량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 국가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유가 보조금을 실제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영차량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2001년부터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를 인상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업 등 운수업계에 대하여 유류세액(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하되 지입차주분의 유가보조금은 지입차주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는 개인사업자들과 운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서 발생한 유류비에 대해 ‘직영차량 유가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176,642,265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감독기관으로 이첩

3. 의결결과

국토해양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어린이집 대표이며 B와 C는 전, 현직 시설장들로
- 저소득층 자녀 중 영유아 보육아동들을 어린이집 등에 허위 등록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보육료 지원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들에 대해 관할 교육청에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중복으로 청구하여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련기관 확인결과를 종합해 보면,
- 피신고자 A는 본인 및 배우자 등의 명의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하면서 전·현직 시설장인 피신고자 B, C와 함께 실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은 원아 16명에 대해 2008년도 보육료 지원금 10,331,320원을 허위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 유아교육위탁기관인 미술학원의 유아학비 보조금 지원대상 10명을 어린이집의 원아로도 등록하여 보육료 지원금 2,853,000원을 중복으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 등은 공사 직원으로,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부적격 지장물 보상권자 B, C, D 등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등 비리 의혹이 있으며 이들 피신고자 A, B, C, D 등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에 8억 5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고자 A 등은 B, C, D 등에게 정확한 보상기준이나 사실 관계에 관계없이 화훼보상, 축산보상, 종교시설 등으로 보상을 해 주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금품 수수혐의가 인정되므로 보상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병무청내 ○군본부 소속 부사관 모병담당관으로서, 부사관 시험에 지원한 지원자들에게 “부사관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고, 지원자들의 부모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모병담당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7. 8. 경부터 2008. 7.경 사이에 군 부사관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로부터 부사관 시험에 합격 시켜주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져
- 위 혐의사실 이외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지원자 및 부모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국방부(○군본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가정상담센터 운영자로,
-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부부상담 등을 하면서, 상담인원과 상담시간을 부풀려 강사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4년 부터 2008년 경까지 ○○부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을 지원 받아 ○○상담센터를 운영해오면서,
- 강사들의 상담일지와 강사시간표 등을 허위작성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약 8,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에서 피신고자의 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져 강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마을이장으로 농촌전통체험마을 및 주변환경조성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보조금 편취 및 용도 외 예산을 집행하였고,
- 피신고자 B는 마을 노인회장으로 2007년 경로당을 돈버는 웰빙센터로 전환하는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 편취 및 용도 외 예산을 집행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자부담비 10,000천 원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가 있고,
 - － 보조사업 용도 외로 두릅나무 구입비 5,400천 원을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로당 리모델링 보조사업비 중 20,000천 원을 부풀려 계상하여 편취하였고,
- 피신고자 B는 보조사업 용도 외로 두릅나무 구입비 12,000천 원을 집행하고 이 중 2,000천 원과 오미자 구입비 11,710천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 － 피신고자 A와 공모하여 오미자 공동생산 농장 조성비 13,760천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음
- 피신고자 C, D는 위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으로 법규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광역자치단체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하는 ○○공사로
- －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발급함으로써 감면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예산손실을 발생케 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2007. 1. 1.부터 2007. 3. 31.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받은 116명에 대해 노동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내역을 조회한 결과,
- － 19명이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일 기준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허위 발급 또는 부정사용으로 인한 편취 의혹이 있어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퇴적토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모래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중 당초 사업자와 계약한 물량을 대부분 준설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2008. 5.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여 준설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특혜를 준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준설업자가 준설계약에 따라 계약완료일전에 당해 계약물량을 전부 현장에서 반출하고, 준설업자 부담으로 작업장 및 진입로 철거 및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원상복구로 인한 반출량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한 계약변경을 통하여 기존의 낮은 단가로 모래 123만m³를 추가 반출할 수 있게 하여, 준설업자가 약 2,800,240천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부당한 계약변경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Ⅲ.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2003~2007년도 이첩사건 처리결과 일람표

순번	의안번호	의 안 명	추록내용	면수
1	제2005-53호	배수펌프장 밸브 설치 예산 낭비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5집 122
2	분과2005-81호	의료급여 비용 부당 청구 의혹	〃	123
3	분과2006-17호	생동성 시험결과 조작 및 평가 업무 태만	〃	128
4	분과2006-97호	체육유관단체 임직원 장비구입 관련 공금횡령 의혹	조사중	143
5	분과2006-112호	고속철도 유도대책비용 편취 및 감 사대비 증거조작 행위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152
6	분과2006-134호	사립학교 운영 관련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의혹	〃	164
7	분과2006-143호	○○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관 련 금품수수 등 의혹	〃	169
8	분과2007-4호	국공립병원 방사선과 의료기기 납 품비리 의혹 등	〃	6집 17
9	분과2007-13호	시금고 선정 관련 금품수수 등 의혹	〃	25
10	분과2007-18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법인 선정 비리	〃	30
11	분과2007-40호	공공기관 발주공사 담합 비리 의혹 등	〃	50
12	분과2007-42호	기관장의 공금유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	조사중	51
13	분과2007-44호	예산낭비 부패행위 신고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52
14	분과2007-45호	지자체업무 정보화사업 검수 비리 의혹 등	조사중	53
15	분과2007-48호	사단법인에 보조금 불법지원 및 부당 집행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55
16	분과2007-50호	공기기업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부당대출 관련	〃	58
17	분과2007-51호	국립병원 정보화 사업 등 비리 의혹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59
18	분과2007-54호	정부투자기관 납품 관련 비리 의혹	〃	62
19	분과2007-57호	공무원의 외부강의 미신고 행위	조사중	63
20	분과2007-62호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등 세무비리 의혹	조사기관 처리결과,	67

순번	의안번호	의 안 명	추록내용	면수
			위원회 검토의견	
21	분과2007-66호	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	조사중	68
22	분과2007-69호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의혹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70
23	분과2007-70호	국립대 교수 연구비 부정수급 등 의혹	“	71
24	분과2007-71호	지방자치단체 교육공직자의 부정처사후수뢰 등 의혹	”	72
25	분과2007-73호	하수도준설공사 관련 문서조작 및 국고낭비	”	74
26	분과2007-77호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 관련 비리	”	77
27	분과2007-82호	공공기관 청사 신축교환사업 비리 의혹	”	80
28	분과2007-85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관련 부패행위	“	82
29	분과2007-86호	공기업 보증사업장의 대금관리 비리	”	83
30	분과2007-87호	공기업 보증사업장의 분양대금관리 비리	”	84
31	분과2007-88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수 등	조사중	85
32	분과2007-91호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관련 예산낭비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86
33	분과2007-90호	○○과학화 무인경계시스템 사업 관련 비리 의혹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88
34	분과2007-97호	○○시설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조사중	89
35	분과2007-98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	90
36	분과2007-94호	공사감리원의 뇌물수수 등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91
37	분과2007-95호	광역자치단체 고위공무원 금품수수	조사중	92
38	분과2007-96호	GPS기반 다국어 관광 안내 솔루션 개발 비리 의혹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93
39	분과2007-99호	경찰관의 부정처사 후 수뢰 등 의혹	”	94

순번	의안번호	의 안 명	추록내용	면수
40	분과2007-100호	정부투자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부패행위 의혹	"	95
41	분과2007-101호	치과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	"	96
42	분과2007-102호	약국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	"	97
43	분과2007-104호	사회복지법인 국고보조금 횡유용 등	"	98
44	분과2007-108호	등기기록변경 부당처리 및 사건처리명목 금품수수	"	101
45	분과2007-109호	면세유 관련 비리	"	102
46	분과2007-111호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비리 의혹	"	103
47	분과2007-112호	○○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	"	104
48	분과2007-113호	군 화학오염 탐지 및 측정 장비 납품 비리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105
49	분과2007-114호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 의혹	"	106
50	분과2007-117호	군부대 유류시설 개선공사 납품비리 의혹	"	107
51	분과2007-118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	108
52	분과2007-119호	지장물 보상금 지급 담당자의 예산 낭비 등 의혹	"	109
53	분과2007-121호	○○대학교 교수의 연구지원금 유용	"	110
54	분과2007-124호	부도상가건물 레스토랑 신고 관련 비리	"	111
55	분과2007-125호	매립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	112
56	분과2007-126호	재래시장 육성자금 횡령 등 의혹	"	113
57	분과2007-129호	대기업의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	조사중	114
58	분과2007-130호	산지전용허가 관련 부패행위 의혹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115
59	분과2007-131호	화물유류보조금 횡령	조사중	116
60	분과2007-134호	군숙소 보수 운영경비 비리 의혹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117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인 바,
- － 2000. 8. 24.부터 2004. 4. 30.까지 공사비 145억 원의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하면서 공사용 밸브 7대의 설치작업과 관련하여 설계시방서에는 물가정보 가격상 대당 107백만 원인 “펌프제어밸브”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작업시에는 대당 44백만 원인 “혼합역지반”을 설치하였음에도 설계서대로 설치된 것으로 준공처리함으로써 약 4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밸브제작시방서, 물가정보지, 카탈로그 등의 관련서류를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예산낭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예산낭비 등 문제점 발견하지 못함
- ※ 통보일자 : 2006. 3. 30.

〈위원회 검토의견〉

- － 최초 신고내용 이외에 재조사를 요구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에 소재한 ○○의원의 원장인 바,
- － 의원을 운영하면서 투약하지도 않은 주사약제 및 주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면서 사실대로 청구하여야 하나, 2004.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실제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백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있고,
- － 입원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외래급여 비용을 중복청구 하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보건복지부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피신고자 등 2명 요양급여 편취 등 사기혐의, 간호조무사 등 2명 무자격 방사선 촬영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각각 형사고발 조치
- ※ 통보일자 : 2006. 3. 30.

〈위원회 검토의견〉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공기관 담당공무원들로서,
- － ○○○대학교 약학연구소에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 보고 하였고 관련 국가기관에서는 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검증하지 않고 인정하여 대체조제약으로 허가해 준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신고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검찰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어 23명 기소(3명 구속)
 - － 35개 약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생동성시험약품 중 203개 품목 생산허가취소, 150개 품목 재시험 지시 등 유통금지 조치, 생동성시험 전 과정에 대해 감독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실시
- ※ 통보일자 : 2008. 3. 19.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기관은
 - － 고속철도 건설시 전화선 잡음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책수립이 불필요한 곳에도 부당하게 대책을 수립하여 국고를 낭비하였고 이 사실을 감사한 감사원 감사과정에 결과가 잘못되도록 조작한 사실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속인 행위가 있었고,
 - 사전 실시된 시험측정시 고의로 공사가 필요한 수준으로 자료를 조작하여 공공예산을 편취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부패혐의가 일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혐의없음
 - ※ 통보일자 : 2008. 3. 27.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학교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인 바,
- － 학교법인 산하 ○○대학의 공사와 관련,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명수배 되어 도피 중에 있는 자들이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위 학교법인을 계속 운영하도록 함
- － 위 학교법인 이사장 등이 출연금의 출처 또는 출연금의 입증, 위 학교법인의 양도자인 신고자와의 분쟁관계 종식 등 2003. 2. 경 행정기관의 학원운영사항 관련 시정요구 및 계고사항 일부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성실의무를 다하여 위 시정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태만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신고자 진술,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8. 2. 14.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장, 소속 건축담당 공무원들인 바,
- － 2004. 3. 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배드민턴장에 방풍막을 설치할 경우 주변 환경을 저해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협회의 청탁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위 협회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사 관련 특혜 의혹이 있고,
-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감정평가사들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평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2004. 8. 경 ○○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를 감정평가 함에 있어서,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평가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토지소유자들에게 약 3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 내용, 신고자 진술,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감사원으로 각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혐의없음(계좌추적결과 증거없음)

※ 통보일자 : 2008. 1. 3.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공립병원 방사선과 실장인 바,
- － 의료기기 장비를 구매한 후 고장을 대비하여 전 부품을 무상 교체조건으로 유지보수 계약('01. 1.~12.)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대상 부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장비로 위장하여 구입하여 약 1,139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고
- － 2006. 7. 경 직원회식을 하면서 식대 60만 원이 나오자 직원들로부터 40만 원을 각출하고 약품 납품업체들의 법인신용카드 2개를 이용하여 45만 원씩 90만 원을 결제하여 식대와의 차액 30만 원과 직원 각출금 40만 원을 착복 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관련자 350여명을 적발하고 52명을 특가법,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검찰송치, 49명은 기관통보로 징계요구
- ※ 통보일자 : 2008. 2. 29.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시장인 바,
- 2002. 11. 경 당시 제한경쟁입찰이었던 시금고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여 모 금융기관과 시금고 약정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금융기관에서 대출서류를 조작하여 피신고자의 조카 등에게 약 38억 상당의 엔화를 저리로 특혜 대출하도록 하고,
- 2002. 9. 경 ○○유원지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에게 유리한 채점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특혜를 제공하고,
- 군용항공기법 위반을 알고도 ○○도로확장공사를 강행함으로써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포함하여 약 18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혐의 없음(내사종결)
- ※ 통보일자 : 2008. 9.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소속 공무원들과 도매시장법인으로 선정된 업체 대표이사인 바,
- － 피신고자 A는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5. 12. 경 모 업체 대표로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매출실적 전산자료의 요청을 받고, 다른 피신고자 B, C와 공모하여 동 전산자료를 유출하여 위 업체 대표에게 제공하였고, 동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위 업체를 2006. 3. 경 도매시장법인으로 선정하여 준 뒤, 수시로 골프 등 향응접대를 받은 외에 거액의 뇌물을 받은 부패행위를 함
- － 또한, 위 업체 대표이사는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기록상장 및 정가 수익매매로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인건비 허위지출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도매시장법인 대표는 업무상배임죄(4,000만 원 상당 인건비 허위 지출) 불구속기소, 공무원 3인은 혐의 없음 내사종결
※ 통보일자: 2008. 4. 8.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직유관단체 ○○지역본부 입찰업무 담당자, 공사업체 임직원들로서,
- － 2007. 3. 경 ○○시설 방수공사 입찰시 모 업체가 입찰마감 시 한내 입찰서와 기술사용계약서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절차에 따라 응찰하고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 － 입찰업무 담당자인 피신고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전화를 근거로 위 업체를 입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하였고, 위 업체 임직원인 피신고자는 기술협약서 발급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하는 등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져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 전자서명법위반 등의 혐의로 42개 업체대표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 통보일자 : 2008. 12. 3.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소속 간부, 동 의회 의원들인 바,
- 공모하여 ○○시 소재 임야가 1억 4,000만 원(평당 1만 원) 상당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개발제한 구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체육공원 부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소유주로부터 위 임야를 평당 9만 원대인 약 13억 700만 원으로 매입 한 후 방치하는 등 위 소유주에게 그 차액인 약 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고 공공기관에 동액 상당의 예산에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과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혐의없음(검찰청)
- 체육공원 부지조성 사업추진의 가능 여부를 재검토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시장에게 통보(감사원)
- ※ 통보일자 : 2008. 4. 10.(검찰청), 2008. 8. 11.(감사원)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전 ○○시 공무원, 동 시의정회 회장인 바,
- － 전 ○○시 공무원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위반되어 위법인 조례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위 의정회에 보조금을 계속하여 지원함으로써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였고
- － 위 의정회 회장은 2000. 경부터 2006. 경까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시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4,828만 원을 교부받아 대부분을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는 식사비용으로 집행함으로써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행정자치부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각 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중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 삭제 또는 개정 등 권고조치
- － ○○시 관련 공무원 “주의”촉구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석회석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광산업자들인 바,
- － 2006. 5. 경 공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지원 융자금에 해당 신규시설 설치목적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융자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융자목적인 시설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2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 －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무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합계 209억 4,600만 원을 지원받아 83억 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7개 회사의 혐의 인정되어 특경법위반, 횡령,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관계자 2명 구속, 불구속 14명, 기타 1건은 공소권 없음, 2건은 편취혐의 인정할 수 없어 혐의없음 내사종결
- ※ 통보일자 : 2008. 2. 28.

〈위원회 검토의견〉

- － 위 사례를 교훈삼아 향후 구조적 비리와 관련된 사건일 경우 실태조사를 병행, 부패행위를 근원적으로 척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립○○병원 소속 직원들인 바,
- － 2006. 5. 경 병원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검사에 합격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검사팀장 등에게 합격 판정해 주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기성금 약 73억 원을 지급토록 하여 국고를 손실케 하고 그 대가로 액수미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 － 2006년도 의약품 등을 구매하면서 특정 의약품을 수시 및 추가로 구매해주는 방법 등으로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일부 혐의사실이 인정되어져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08. 1. 3.

〈위원회 검토의견〉

- － 2008. 1. 30. 재조사 요구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08. 3. 27.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투자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이사 인바,
- － 2000. 1. 경 정부투자기관에 물품의 납품 유자격자로 지정을 받아 2000. 11. 경부터 2002. 3. 경 사이 납품하기로 수의계약을 한 후 원가계산을 할 때 유리막대와 고무로 이루어진 부품의 전체 무게에서 유리섬유막대의 무게를 뺀 나머지 무게를 고무의 무게로 계산하는 점을 이용하여, 유리섬유막대 빈 공간에 약 100그램의 구리막대를 넣은 제품을 원가계산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기간 물품을 납품하여 부당이득금 약 4억 5,275만 원의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시킨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해당 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해당기관인 ○○공사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피신고자가 3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검에 송치
- ※ 통보일자 : 2008. 6. 2.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업체 대표이사 등인 바,
- － 피신고자 업체는 '98년도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55만 원을 납부한 이후 3년간 신고 실적이 전혀 없다가, 직권폐업 조치된 자료상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자료를 매입하여 '01년도 2기 예정신고 분부터 분기별 15억 원 상당씩 환급받았고, 모범납세자 선정 배제대상임에도 '03. 3. 경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수상하여 1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혐의없음
- ※ 통보일자 : 2008. 1. 2.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들로,
- 2006. 2. 부터 같은 해 9. 까지 초과근무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동 기간 동안 초과근무수당 합계 약 4,610천 원 상당을 편취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에 손실을 야기하였고,
- 이와 같은 초과근무 부당청구 행위는 위 기관 산하 지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부패행위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해당기관의 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해당기관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피신고자 4인 3,880천 원 및 167인의 25,108천 원의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하여 관리책임자 1인 무보직 대기발령 조치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마련
- ※ 통보일자 : 2008. 6.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 교수인 바,
- － 2004. 1. 경 위 대학교에 A 연구과제로 논문게재신청을 하여 연구보조금 200만 원을 선 지급 받은 후, 자신이 지도한 학생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B 연구과제로 위 대학교의 연구보조금에 의하여 계획된 논문으로 변경 신청하여 발표하여 연구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고,
- － 2005. 12. 경 다른 석사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한 내용을 학회지에 2개의 논문으로 게재한 후 대학교에 논문게재장려금을 신청하여 각 100만 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2003학년도 및 2004학년도 연구보조금과 2005학년도 우수연구논문게재장려금 등 1,000만 원을 편취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학위취득 논문을 연구논문으로 게재하면서 학위취득자를 제외하고, 제3자를 공동연구자로 게재한 표절에 해당하여 경고조치 및 연구보조금 200만 원 환수
- ※ 통보일자 : 2008. 1. 18.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무원, 정보기술업체 대표 이사인 바,
- － 피신고자 A는 2001. 4. 경부터 6. 경 사이 기록물 전산화 구현을 위해 납품받은 하드디스크와 시스템 메모리가 비품(납품리스트에 없는 제품)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인 검수확인서에 각 정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그 정품단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해 주고 같은 날 피신고자 B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였고,
- － 2006. 12. 경 정보통신부 고시 등의 유지보수 요율보다 높은 견적서를 받아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함으로써 금 1,767만 원 상당의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피신고자 1명 뇌물요구 혐의로 불구속 기속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08. 1. 30.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문건설업체 대표이사인 바,
- － 2006. 5. 경부터 10. 경 사이에 지방에 소재지를 둔 2개의 건설업체에 하수도준설장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구비토록 하고, 위 건설업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3개의 하수처리구역 하수도 준설공사를 각 낙찰 받은 후, 직접 위 준설공사들을 시행하면서 공사기간과 준설물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약 2억 207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여 공공기관 재산손실을 가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공무원인 피신고자 1인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납품업자 등 5인은 142,644,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 통보일자 : 2008. 4. 14.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파신고자들은 지방의 시외버스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자들인 바,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노선의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시외버스 재정지원금’과 유류세 인상분 보전을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각 지원받기 시작하여 ’04년부터 ’06년까지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을 312억 원을, 유가보조금을 307억 원을 각 지원받으면서
- 위 지원금이 유류사용량에 근거하여 배분한다는 사실을 이용,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위 지원금을 편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여 ’04. 11. 경부터 ’06. 12. 경까지 유류사용량 약 137만 리터를 부풀려 신청하여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약 1억 7,206만 원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약 1억 7,206만 원을 각 편취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버스회사 사장 및 주유소 대표 6명 각 불구속 입건
- ※ 통보일자 : 2008. 1.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주)○○ 대표이사, 이사인 바,
- － 2004. 2. 경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청사 신축교환 사업을 수주 받아 청사 신축 후 이를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등과 공모하여,
- － 사실은 청사 신축 소요 공사비는 38억 원 가량임에도 54억 원으로 부풀린 후, 2005. 5. 경 신축청사를 감정평가 했던 감정평가사 등에게 위 부풀린 공사비 내역서를 각 제출하여 약 88억 665만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그 정을 모르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94억 1,927만 원으로 평가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국가로부터 동액 상당의 토지 등 국유재산을 교환받음으로써 공사비 차액 15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어져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통보일자: 2008. 5. 16.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바,
- － 교통지도업무를 담당하면서 '03. 1. 경 택시업체 대표에 대하여 군 소재지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주사무소, 차고지 변경)인가 신청 건을 처리함에 있어 인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위 업체 대표 등과 공모하여 인가요건에 맞는 것처럼 택시 차고지의 지목을 사실과 다르게 잡종지로 표기하고, 교육훈련시설, 세차장, 정비시설 등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출장복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이를 인가되도록 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 해당 소속기관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 － ○○군 사회경제과, 건설도시과 시정조치 및 담당공무원 1명 훈계, 4명 주의(소속기관)
- ※ 통보일자 : 경찰청/해당 소속기관(2007.9.14 / 2008.1.14)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기업 직원들인 바,
- 상호 공모하여 현직을 이용하여 1999. 11. 경 지방에 아파트 9개동 491세대를 건축 시공함에 있어 공기업, 시행사, 시공사와 3자 약정서를 체결하고 공사 중, 2001. 3. 경 시공사가 부도가 나자 2002. 5. 경 위 아파트 건축공사시 투입된 건축 비용 중 미지급된 금액 66억 원을 채권 가압류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특정 업체에게 그 66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함으로써 공기업에 66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시공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자금집행에 불법이 없고 해당업체가 수령한 금액은 추가 공사비로 특혜의혹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08.2.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기업 직원들인 바,
- － 2003. 9. 경 지방 소재의 주택사업 시행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분양보증서를 발급하고, 분양대금 공동관리협약 체결을 통하여 분양대금 인출업무를 담당하면서,
- － 동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률 부진을 이유로 2004. 12. 경 ‘입주금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위 시행사의 실 사주와 유착되어 현장조사 및 인출자금의 집행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등으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제반규정을 위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 사업장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기성금 결제를 독촉하거나, 직원들에게 동 사에 대한 투자권유 등의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기성금을 실제 공정률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하는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결국 2005. 11. 경 위 시행사의 부도로 동 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에 따른 부도일 현재 추정손실 87억 원 상당의 공공재산에 손실을 가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혐의내용 인정되어 5명(4명 업무상배임, 1명 주택법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 송치
- ※ 통보일자 : 2008.2.18.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상하수도과 공무원으로 계약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인바,
- － '06. 12. 경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7. 1. 1.자로 폐지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폐지 직전에 단가산정 등 기초조사도 없이 단순히 예산액의 92.5%에 해당하는 54억 8,900만 원에 하수처리장 기자재 73개 전 품목을 ○○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단체수의계약 체결하였고,
- － 본건 계약시점은 토목공사 등 본 공사의 발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 및 단체수의계약폐지 직전인 점, 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소홀히 하여 22억 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개연성이 있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상배임, 성실의무 위반 등 부패행위가 인정되어 감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약7억5,000만 원 상당이 과다계상 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장에게 징계요구
- ※ 통보일자 : 2008. 8. 12.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청 및 ○○본부 소속으로 사업자 선정업무 및 납품검수와 검사담당을 하는 자들인 바,
- － 피신고자들은 2006년도 과학화 무인경계 시스템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가 허위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하여 사업자로 선정하고, 또한 설치된 장비가 정상작동이 되지 않음에도 작동하는 것처럼 납품 검수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업체에게는 사업비 4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액수미상의 금품을 수수한 개연성이 있고,
- － (주)○○은 허위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로 선정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예산을 손실케 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방부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대검찰청 : 수사중
 - － 국방부 : ①피신고자들 중 2인이 검사업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되어 ○○청에 징계처분 요구, ②관련 업체에서 27억 원을 부담하여 설치된 장비에 대한 보강공사가 진행중이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형사입건 미 고려
- ※ 통보일자 : 2008. 12. 4.

〈위원회 검토의견〉

- － 피신고자들의 혐의중 일부만 인정되어 행정처분 하였으나 검찰의 조사결과 확인 후 재조사 여부 판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감리원 등으로서,
- － 2004. 7. 경부터 8. 경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암판정을 하면서 지방국토관리청 담당 직원을 참석시키지 않고, 또한 가설벤트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는 등,
- －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발주처를 기망하여 기성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혐의가 인정될 개연성이 있는 등의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내용 및 참고인 진술 등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원으로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어져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공사감리원 등 4명이 공사비 약 6억 3,68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 ※ 통보일자 : 2008. 4. 15.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진흥원 원장, 팀장 및 (주)○○ 대표이사인 바,
- － 2006. 5. 경 2개월 후 공고 예정인 GPS기반 다국어 관광안내 솔루션 개발사업 공고문을 상호 공유하여 입찰과정 공모 및 사업평가를 위한 심사위원에 사업신청인이 추천한 자들을 선정 후 평가에 참여시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으며,
- － ○○진흥원 원장이 사업수주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으며, (주)○○ 대표이사는 사업협약 체결 후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2억 1,900만 원 등을 타용도로 사용하여 횡령 의혹 혐의가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통보일자 : 2008. 1. 22.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바,
- 피신고자는 2004. 6. 경 건외의 000의 사기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해결해주는 대가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 000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고,
- 2005. 1. 경에는 위 사건 담당경찰관을 알선해 주고 직무와 관련하여 1,700만 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혐의없음(증거부족)
- ※ 통보일자 : 2008. 12. 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사 실장 및 과장인 바,
- '06. 6. 경 ~ 12. 경의 기간에 총사업비 약 8억 2,444만 원으로 (주)○○에 용역을 주어 「노무, 총무, 경영분야 ERP 연계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초 설계대로 구축하지 않고 약 2억 4,354만 원~약 4억 3,332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기간 동안 기성고검사보고서, 개발완료보고서, 준공검사보고서, 준공검사내역서 등의 서류를 설계 및 계약서대로 정상적으로 구축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06. 9. 경과 같은 해 12. 경 2회에 걸쳐 각 약 4억 1,220만 원, 약 4억 1,223만 원씩 총사업비 약 8억 2,444만 원 전액을 (주)○○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주)○○로 하여금 최대 약 5억 8,089만 원, 최소 약 3억 9,111만 원 정도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공사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시킨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패혐의가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업체 관계자 2명(업무상횡령), ○○과장 1명(입찰방해방조) 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경찰청)
- 서울 중앙지검 수사중인 사건으로 종결 처리(감사원)
- ※ 통보일자 : 경찰청(2008. 2. 15.) / 감사원(2008. 8.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치과병원 원장인 바,
- 2004. 8. 경부터 2007. 6. 경까지 기간 동안 비급여대상 품목인 인레이보철(금붕)에 사용한 지아이베이스(심한충치 충전치료)임에도 요양급여청구 품목인 지아이즉치(일반충치 충전치료)로, 비급여대상인 보철물 제거치료임에도 요양급여청구 치료로 진료기록을 변조하였고,
-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자를 마치 요양급여청구 대상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액수미상의 요양급여 비용을 ○○공단에 허위 청구 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부패행위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보건복지부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청구 총 9건 확인 후 환수
※ 통보일자 : 2008. 5.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소재에서 약국, 병·의원을 운영하는 자들로
- 2006. 1. 경부터 2007. 2. 경 사이에 사실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병·의원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판매한 것처럼 ○○의원 등 ○○시 소재 병·의원 원장들과 공모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동 기간 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허위로 청구 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부패행위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피신고자 3인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73,415천 원을 편취함은 물론 신고 외 2인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2,990천 원을 편취하여 사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
- ※ 통보일자 : 2008. 8. 2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사회복지법인 상임이사 및 이사장 등 인 바,
- － 피신고자들은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5. 4. 경 법인 산하 복지시설을 신축하면서 주방시설 및 의료장비 구입 명목으로, 2006. 9. 경에는 보조금 1억 원을 방송설비, 샴시 및 조정공사 등의 항목으로 6,000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 － 기타 후원금 등을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을 건축비로 사용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져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피신고자 2명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 통보일자 : 2008. 4. 15.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등기소 등기관 및 경찰 수사관인 바,
- － 피신고자 A는 등기기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06. 10. 경 등기기록변경과정에서 82년 전 발생한 기록을 법원판결 없이 결정해주는 등 경정과정에 의혹이 있으며,
- － 피신고자 B는 경찰수사관으로서 고발사건처리과정에 '07. 6. 경 에어콘을 수령하는 등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부패혐의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감독기관의 감독 및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법원행정처 및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에어컨 설치 등 금품수수 사실은 증거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사건 당사자에게 항응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어 피신고자를 징계 조치
- ※ 통보일자 : 2008. 3. 25.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인 바,
- 국가에서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면세유 공급제도, 즉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신고하여 면세유류구입권을 해당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아 유류공급업소에 제시하여 면세유류를 제공받고, 추후 유류공급업소는 유류를 공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유류를 공급한 정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세금 해당액을 정산(환급)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수량 및 금액 등을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2008.1.10. 피내사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
※ 통보일자 : 2008. 1.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사 소속 직원들로
- － ○○부 주관의 공기업 경영평가 일환으로 '06. 6. 경부터 '06. 10.경까지 기간 중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시 용역회사의 설문서 내용 및 조사방법을 미리 파악하여 산하 기관에 배포하고 소속 직원들을 일반고객으로 가장하여 설문서를 작성하도록 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기업 경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고,
- － 이로 인해 위 공사는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성과상여금 500%, 728억 원을 지급 받게 되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가 예상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부패행위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공사 직원 3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 ※ 통보일자 : 2008. 8. 18.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소재 ○○의원 원장으로
- － 2005. 6. 경부터 2007. 3. 경 기간 중에 요양급여 진료를 받지 않은 자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액수미상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 － 이 외에 의약품 사용현황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액수미상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부패행위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08. 1. 28.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산업(주)인 바,
- － 군 화학오염 탐지 및 측정 장비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장비 수입부품의 일부를 국내 개발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에 이중 청구하여 약 8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부품 국산화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하였으며, 사업진행 과정에 담당공무원과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및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원가 이중 청구에 의한 부당이익 약 5억 원에 대한 국고 환수 및 피신고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도록 조치
- ※ 통보일자 : 2008. 3. 19.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사 차량관리 직원 및 운전기사들인 바,
- － 피신고자들은 ○○카렌드 대표와 공모하여 세차를 하지 않았음에도 세차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 － 2002. 10. 경부터 2007. 7. 경까지 ○○공사가 ○○카렌드에게 세차비 명목으로 총 약 4,543만 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카렌드 대표는 ○○공사가 세차비 명목으로 입금한 동금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세차비의 10%에 상당하는 금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매월 25. 경 차량관리실 운전기사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준 사실이 있으며, 차량관리실 운전기사 18명은 업주로부터 받은 약 3,627만 원을 개인별로 운전 및 관리하는 차량의 세차비 산정기준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혐의사실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산업자원부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피신고자 및 관련자들이 부당 수령한 45,431,000원 환수 결정, 피신고자 및 관련자 전원에 대해 주의 등 문책 요구
- ※ 통보일자 : 2008. 1. 11.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부대 유류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한 업체 대표, 실무책임자인 군무원과 현역 등 인바,
- － 업체 대표는 설계 시방서상의 유류누출 감지기능이 있는 DBBV 밸브 대신에 일반 플러그밸브를 납품하여 공사하도록 하였으며, 위 공사 실무책임자 및 최종감독책임자인 부대장 등은 시공업체에서 시방서와 다른 DBBV 밸브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위 공사에 필요한 유류시설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납품 받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예산 낭비 의혹 및 직무유기 개연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국방부 및 경찰청으로 각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납품업자 :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송치(약 3억1,300만 원 편취)
 - － 경찰청(2008. 6. 24. 통보)
- － 군 무 원 : 불구속 기소의견 국방부 검찰단 송치
 - － 국방부(2008. 7. 15. 통보)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농자재판매상인바,
- － 2006. 1. 경 1,419㎡ 규모의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시 농업현대화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후, 2006년 3월경 자부담 비율(융자금의 20% 이상)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하우스 설치비용으로 1억 8,390만 원(자부담 3,390만 원 포함)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업비투입내역서 등을 ○○시에 제출하여 1억 5,000만 원의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하게 하여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동 금액에 대해 2006년 3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발생한 이자 약 1,577만 원을 편취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피신고자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하나 다만 피신고자의 자부담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보조금 약 660,879원의 환수조치 등을 이해 해당 공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처리토록 함

※ 통보일자 : 2008. 4. 30.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건설과 소속 용지매수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지장물 이전 대상 건물의 소유자인 바,
- － 관련 공무원들은 광역자치단체가 ○○시에 위임한 용지매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전 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이전보상비 약 9,597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건물을 철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고, 지장물의 사용료 부과나, 지장물 이전보상비 회수도 하지 않는 등의 직무를 유기하였고,
- － 동 건물 소유자는 2006. 1. 경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타인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여 광역자치단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행정자치부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관련자 6명 ‘훈계’ 조치 및 95,971,900원 변상 조치
※ 통보일자 : 2008. 2. 18.(행정안전부)
- －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 통보일자 : 2008. 5. 26.(경찰청)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00대학교 교수로, 동 대학 연구단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연구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바,
- 1997. 10.경부터 2007. 2.경까지 ○○재단 등으로부터 연구비로 74억 원 지원받아 연구 과제를 진행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원 인건비 및 출장비를 되돌려 받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전액 회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를 현금화한 후, 자신의 처에게 매달 80~12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각종 경·조사비, 자녀학자금, 해외여행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의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피신고자는 1억6,107만 원 가량을 편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 통보일자 : 2008. 4.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속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인바,
- － 2007. 6.경 부도로 단전이 되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가건물의 레스토랑에 스프링클러설비가 화재안전기준(행정자치부고시제2004-8호, 소방방재청고시제2007-5호)에 어긋나게 설치되었음에도 레스토랑 영업신고에 필요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함으로써 민원인과 유착되어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민원인과 유착되어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발급 과정 및 영업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희박하고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묻도록 감독기관의 감독이 필요

3. 의결결과

경상남도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피신고자 훈계 처분
- ※ 통보일자 : 2008. 2. 22.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주)○○ 폐기물 업체 대표로서,
- － 2006. 12. 경 ○○청에서 발주한 매립폐기물처리용역 사업에 참여하여 입찰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 등의 규정에 의할 경우 폐기물 수탁처리능력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 － 폐기물수탁처리능력 확인서에 수탁처리 가능하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청 계약담당공무원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을 수주하여 기성금 5억 1,900만 원 상당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의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에 의해 신고사실에 대한 혐의가 일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당초 : 혐의없음(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08. 5. 29.
- － 재조사결과 :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송치

〈위원회 검토의견〉

- － 재조사요구(2008. 6. 20)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인 바,
- 2005. 12. 경 ○○청 ○○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이벤트·홍보지원사업(○○시장 비가림시설 준공식 및 경품대축제)’에 사용된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그 정산서류에 이벤트 행사업체와 계약하지도 않은 허위 계약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총 2,1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피신고자 사기혐의 구속기소, 관련자 2명 불구속 기소
- ※ 통보일자 : 2008. 1.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 부군수 등 인바,
- － ○○군은 '03. 7. 경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고, '04. 12. 경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는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06. 5. 경 동일 민원인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한 건을 처리함에 있어 기존의 불허가시와 비교하여 이를 반복할만한 사정변경이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관련서류를 상반되게 기재하여 이를 허가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최초 처분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반복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었음에도 이를 허가하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는 등의 부패행위의 의혹이 있으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광역자치단체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군 산림과 주의조치, 관련 공무원 2명 훈계조치
- ※ 통보일자 : 2008. 2. 15.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2분과위원회(2007. 12. 26.)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 ○○정비창 소속 군인 및 공무원들로
- － 군 숙소 보수공사 및 운영경비 지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사무소가 간이영수증을 23매를 방충망 공사비에 대한 지출서류로 위조한 후 공사비 11,970천 원을 부풀려 청구하였음에도 실제 보수여부나 공사단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 － 지출증빙서류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간이영수증을 그대로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부패행위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군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첩

4. 처리결과**〈조사기관〉**

- － 피신고자 경리담당 외 3인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직무태만 혐의로 신분상 조치 요구
- － 민간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과장 외 2인은 30,340천 원 편취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 시설과장은 도주로 인해 기소 중지
 - 관리소장 및 경리는 시설과장 검거 후 입건 예정
 ※ 통보일자 : 2008. 5. 20.(국방부), 2008. 8. 20.(경찰서)

〈위원회 검토의견〉

-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2008. 5. 9.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해당경찰서에 민간인 수사 의뢰

제2절 신고자 보호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자신이 소속된 국립병원 병원장이 전산화사업을 시행하면서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한 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자신이 제외되자, 이는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2. 심의내용

- 요구인이 신고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였으나 조사결과 무혐의로 통보를 받았으며, 신고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신고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도 무혐의로 통보받았음
- 병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근무성적평정 60점, 성과심사위원회평가 30점, 다면평가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구인은 근평 60점 만점, 다면평가 7.43점, 성과심의위원회평가 1.25점을 취득함
- 요구인이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무성적평정에서 만점을 받은 점은 요구인의 역량에 대한 우위를 인정한 결과라기보다는 평정시기별 순환적 배점으로 판단되며, 다면평가 점수도 동일 일 직급 대상자 49명 중 47번째에 해당하는 점수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점수는 순위배정(49명 중 49번째)의 불공정을 뒷받침할 반대증거로서의 타당성이 떨어짐
- 뿐만 아니라, 요구인은 부패행위 신고 이전인 2006년 성과급 지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된 점으로 볼 때 2007년 성과급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 부패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내려진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기각함.

4. 비 고

〈관련의안〉

- － 분과2007-51('07. 5. 29.)「국립병원 정보화 사업 등 비리 의혹」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컨설팅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 중 지사장의 ‘세금 탈루 및 공금 횡령’ 등에 대하여 본사에 시정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요구인을 해고하였으며, 동일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조사처리가 지연되었고 또한 소속회사의 협박으로 인하여 최근 2달가량 실거주지에 들어가지 못한 채 도피생활을 하고 있음
- 컨설팅 사장은 그 동안의 행동으로 보아 요구인과 가족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며, 요구인은 스스로 일신을 지킬 수 있으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요구인의 부모와 자녀들이 걱정되므로 그들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2. 심의내용

- 신변보호 요구인 진술내용의 타당성, 신변불안 요인의 구체적 존재 여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하여 심의한바,
- 요구인의 진술내용이 타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요구인에 대한 신변불안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관할경찰서에 요구인 가족의 신변보호 요구

4. 비 고

2008.7.16. 부패행위 신고 — 조사 중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법원장의 위법한 승진 인사 발령행위 및 특정업 무경비 부당한 집행 등에 대하여 2007. 7. (구)국가청렴위원회 (이하 청렴위)에 신고하였으나, 청렴위는 위 신고에 대하여 (구)「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하였고, 요구인은 ○○법원장이 요구인을 징계청구한 데 대하여 2007. 8. 청렴위에 신분보장조치요구를 하였으나, 신고 건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되었기 때문에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대해서도 종결 처리한바 있음
- 2008. 4. 감사원에서 특정업무경비 부분에 대하여 ‘집행 부적 정’으로 ‘기관주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자, 요구인은 본인이 2007년 신고한 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고, 본인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2007. 10.)은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신분보장 조치요구서를 2008. 6. 위원회에 제출함

2. 심의내용

- ○○법원이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요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으나, 부패 행위 신고서 제출과 요구인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징계처분이 시기적으로 선후관계로 진행되어 법 제63조(불이익 추정)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요구인이 ○○법원장으로부터 신분상 불 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3. 의결결과

- ○○법원장에게 요구인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취소 요구

1. 의안개요

- 신분보장조치요구인은 주민소환투표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민 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의혹’ 및 ‘청구인서명부 심사업무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이후 2008년 서명부 조작에 관한 매스컴 인터뷰와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유출 등의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여 요구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한다고 주장하며 중징계의결요구 취소 등을 원하는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2. 심의내용

- 일부 관련 법률·내부수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징계의결요구가 부패행위 신고 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실질적 원인이 되고 있어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정황들을 종합할 때 중징계의결요구는 법 제6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해당됨

3. 의결결과

- 피요구인에게 요구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

4. 비 고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소속기관의 식자재 납품 중량 기망 등의 비리 신고 후, 요구인에 대하여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고, 근무자세가 불량했다’는 사유로 정직 6월의 징계와 정직기간 종료 후 복직 시 다른 공장으로 연속 파견 명령을 함은 부패 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징계의 원상회복과 원래의 근무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

2. 심의내용

- 요구인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는 요구인의 포상실적(6회) 및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지 아니하였고, 요구인의 근무자세 불량에 대한 징계 이전에 주의 또는 경고 조치 없이 통합 징계하였으며, 소속기관의 최근 6년간의 징계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요구인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중한 것으로 이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됨
- 요구인의 원근무지 근무희망에 대하여는 요구인과 소속기관 인사담당과장 간에 인사와 관련하여 합의한 사항 및 원 소속 직원 등과의 갈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원 근무지 근무요구에 대하여는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요구인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취소하도록 요구

4. 비 고**〈관련의안〉**

- 분과2007-13호 「○○식품의 납품비리 의혹」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군 ○○단 근무시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 관용차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단장에게 신고(진정)후 부당하게 징계를 받고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된 것은 신고로 인한 징계이며, 이로 인해 근무성적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며 향후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징계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

2. 심의내용

- ○○단에서는 요구인에 대한 징계가 다른 징계 처분자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징계한 것이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사유로 징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요구인이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이므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며, ○○단에서 징계의결 시 법률 제66조제2항(책임의 감면 등)에 따른 징계양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일탈한 행위이고, 이러한 징계처분은 처분기관의 부작위에 의해 요구인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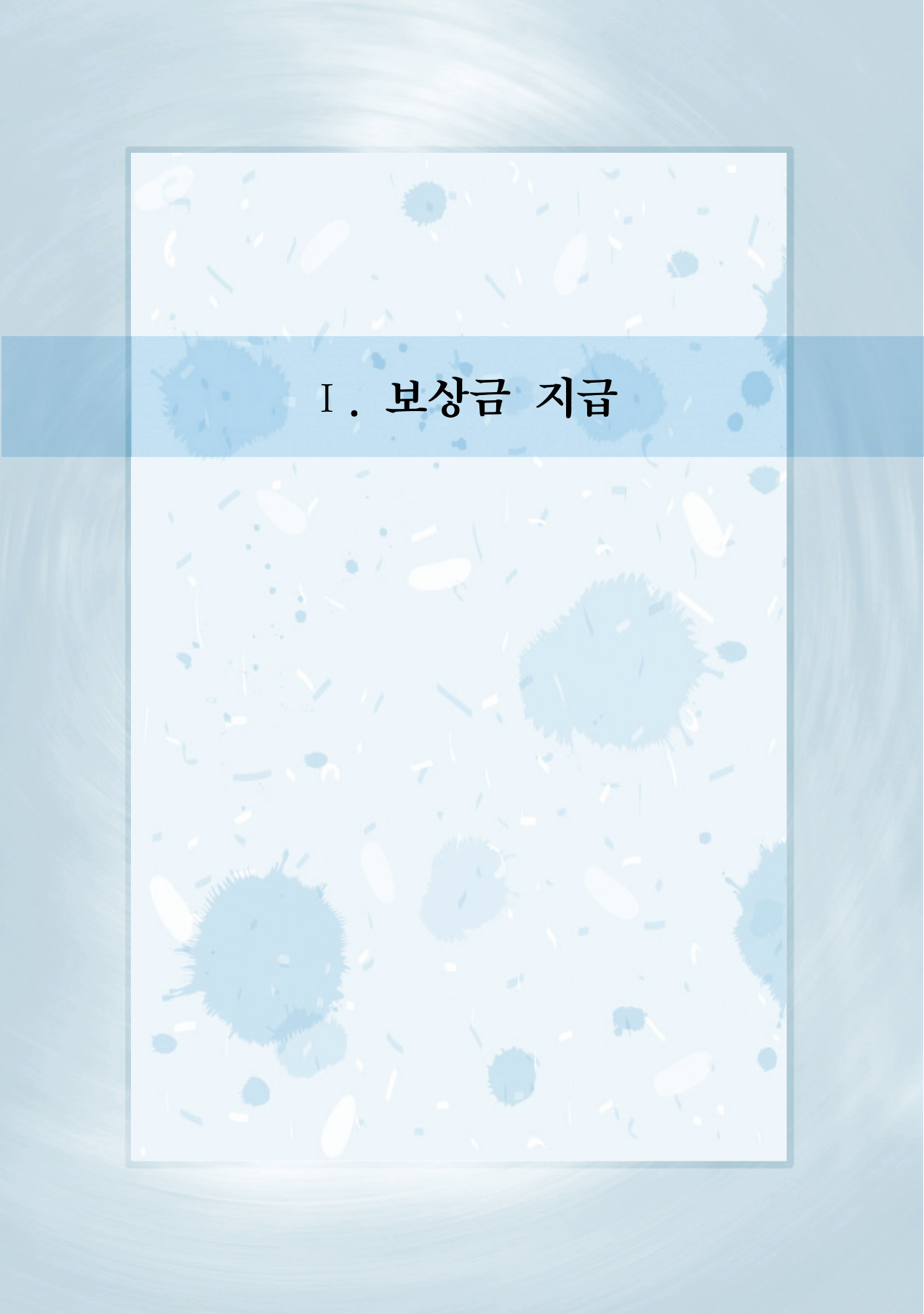
- 소속기관장에게 요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

4. 비 고

제3절 신고자 보상

I. 보상금 지급

II. 포상금 지급

The background features a light blue field with scattered white and light blue abstract shapes, including circles, ovals, and irregular clusters. A solid blue horizontal band runs across the middle of the image, serving as a backdrop for the text.

I. 보상금 지급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6. 9. 28.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건을 신고한 후 2008. 4. 30.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횡령한 금액이 전액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의 인정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부품·소재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취지인 “국제조달에 참여가 유망한 부품·소재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서 및 계획내용을 위반하여, 정부출연금 261,941,000원을 용도 외로 사용·횡령한 사실, 즉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횡령한 261,941,000원이 전액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42,671,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6-121호(2006. 11. 6.)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 자금 횡령 의혹」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6. 8. 22. 「부산 ○○의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건을 신고한 후 2008. 4. 22.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의 인정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의원 원장이 수진자가 자기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허위 기록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위 ○○의원 원장의 처인 ○○약국 약사는 약국 내방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26,927,600원(본인부담금 제외)에 대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고, 그 중 20,179,88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385,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7-12호(2007. 2. 5.) 「부산 ○○의원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7. 26. 「○○시 ○○동사무소 각종 수당 허위 청구」건을 신고한 후 2008. 4. 23.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액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의 인정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동사무소 직원 10여명이 '06년과 '07년 등 2년에 걸쳐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수령하고 있다는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들이 부당 수령한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6,511,180원이 전액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1,302,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5. 7. 21. 「○○시 ○○의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건을 신고한 후 2008. 4. 22.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함과 관련하여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의 인정 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의원 원장이 2003년 이후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방사선사와 물리치료를 채용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02,177,990원에 대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고, 그 중 92,394,36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20,304,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5-98호(2005. 12. 19.) 「○○시 ○○의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2. 22. 「청소년 수련단체의 보조금 횡령」건을 신고한 후 2008. 5. 26.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전액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청소년 수련단체 ○○지역연맹 사무처장 겸 ○○청소년수련소 운영국장이 2006년도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고의로 프로그램 중 일부만을 수행하고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제출하여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 14,132,670원이 전액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2,826,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의안>

- － 분과2007-49(2007. 5. 7.) 「청소년 수련단체의 보조금 횡령」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3. 3. 13.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등」건을 신고한 후 2008. 5. 27.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뇌물로 수수한 금액이 전액 환수 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에 대한 인정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교육청 고위 공직자로 재직하면서 27명 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특히 5급 승진과 관련하여 6급 직원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았다가 6개월 후 승진심사 발표 전일에 되돌려 주었으며, 건축인쇄업자들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가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뇌물로 수수한 10,000,00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2,0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의안>

- － 2003-43호(2003. 4. 21.) 「고위공직자의 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6. 9. 22.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의혹」건과 2007. 11. 26. 「○○서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건을 신고한 후 2008. 4. 16.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의 인정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특근매식비와 국내여비, 대원들의 식비 등을 식당운영비로 부당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공금을 횡령하였고, 또한, 대원들의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청구수령하고 있다는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들이 부당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17,564,412원 대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고, 그 중 10,204,541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2,894,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7-23호(2007. 2. 22.)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의혹」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5. 2. 28. 「○○시 ○○의원 등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건을 신고한 후 2008. 5. 23.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의 인정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의원 원장이 환자의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고가의 약을 처방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하고 있다는 내용과 ○○약국 약사는 상기 의원이 발급한 허위 처방전에 근거하여 약을 조제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고, 고가의 약으로 처방되었는데도 저가의 약을 사용하여 조제(대체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들이 부당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53,305,680원 대하여 대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고, 그 중 338,511,69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5,462,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5-62호(2005.5.23.)「○○의원 등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6. 7. 13. 「○○물자 운송관련 부조리 의혹」건을 신고한 후 2008. 6. 9.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운송비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의 인정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일반화물(LCL화물)로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을 특수컨테이너 화물(HQ화물)로 선적하여 수 천만원 상당의 운임을 부풀려 청구하였다는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지급 받은 운송비 23,774,240원 대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고, 그 중 7,500,00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4,754,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6-98호(2006. 9. 18.) 「○○물자 운송관련 부조리 의혹」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6. 3. 17.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건을 신고한 후 2008. 7. 22.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애아동지원금이 전액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의 인정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어린이집 원장이 행정실 사무요원을 보육교사로 ○○구청에 신고하여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과 정상아동을 장애아동으로 속여 장애아동지원금을 허위 청구하여 부당하게 교부받았다는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장애아동지원금 2,691,000원이 전액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3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6-48(2006. 5. 1.)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의혹」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6. 8. 22. 「○○연구원 출장비 횡령 비리」건을 신고한 후 2008. 7. 29.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출장비 전액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의 인정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연구원 임직원 71명이 허위로 출장을 기안하거나 출장기간단축 등의 사유로 정산하여야 할 출장비를 정산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출장비를 지급받은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출장비 32,226,750원이 전액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6,445,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6-128호(2006.11.7.) 「○○연구원 출장비 횡령 비리」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6. 9. 12. 「중소기업 창업관련 농지조성비 부당감면」건을 신고한 후 2008. 8. 18.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부당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추가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의 인정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35,703,000원 이외에 추가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중소기업 창업승인시 도시계획법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특정기업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주었다는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부당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 98,061,300원에 대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추가로 확정되었고, 그 중 43,000,00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13,72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6-131호(2006. 11. 20.) 「중소기업 창업관련 농지조성비 부당감면」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4. 12. 「○○ 직원사옥부지 매입 비리」건을 신고한 후 2008. 8. 5.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 간에 주고받은 뇌물에 대한 추정 판결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의 인정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직원아파트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가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들이 주고받은 뇌물 270,000,000원 대하여 법원의 추정 판결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며, 추정금의 부과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21,9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7-47호(2007. 5. 17.) 「○○ 직원사옥부지 매입 비리」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11. 26. 「○○시 청소용역업체의 비리」건을 신고한 후 2008. 8. 11.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그중 일부가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의 인정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맺은 후, 계약상의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운용하거나, 계약상의 인건비보다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부당지급된 청소용역비 224,853,350원에 대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고, 그 중 73,315,07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37,479,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3. 29. 「국고보조사업 관련 예산 편취」건을 신고한 후 2008. 8. 20.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회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의 인정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군으로부터 ‘2005년 ○○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조금 1억3,5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집행하면서, 개인용도로 민박업 등에 부당 사용하여 공공예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들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135,000,000원이 전액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24,9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7-39호(2007. 4. 18.) 「국고보조사업 관련 예산 편취」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5. 30. 「화학작용제 탐지장비 납품비리」건을 신고한 후 2008. 10. 31.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환수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그 중 일부가 환수되는 등의 사실이 직접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인정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화학작용제 탐지장비를 납품하면서, 수입부품의 일부를 마치 국내에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이중으로 원가를 청구하여 약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부당이득금 497,630,185원에 대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고, 그 중 254,941,13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75,66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7-113호(2007.11.5.) 「화학작용제 탐지장비 납품비리」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3. 26.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건을 신고한 후 2008. 10. 31.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25,108,123원 전액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공단 ○○본부 ○○지점 피신고자들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초과근무수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있다는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25,108,123원이 전액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021,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7-69호(2007. 7. 23.)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5. 8. 23. 「태풍피해 어민의 복구사업 보조금 편취」건을 신고한 후 2008. 10. 29.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의 인정여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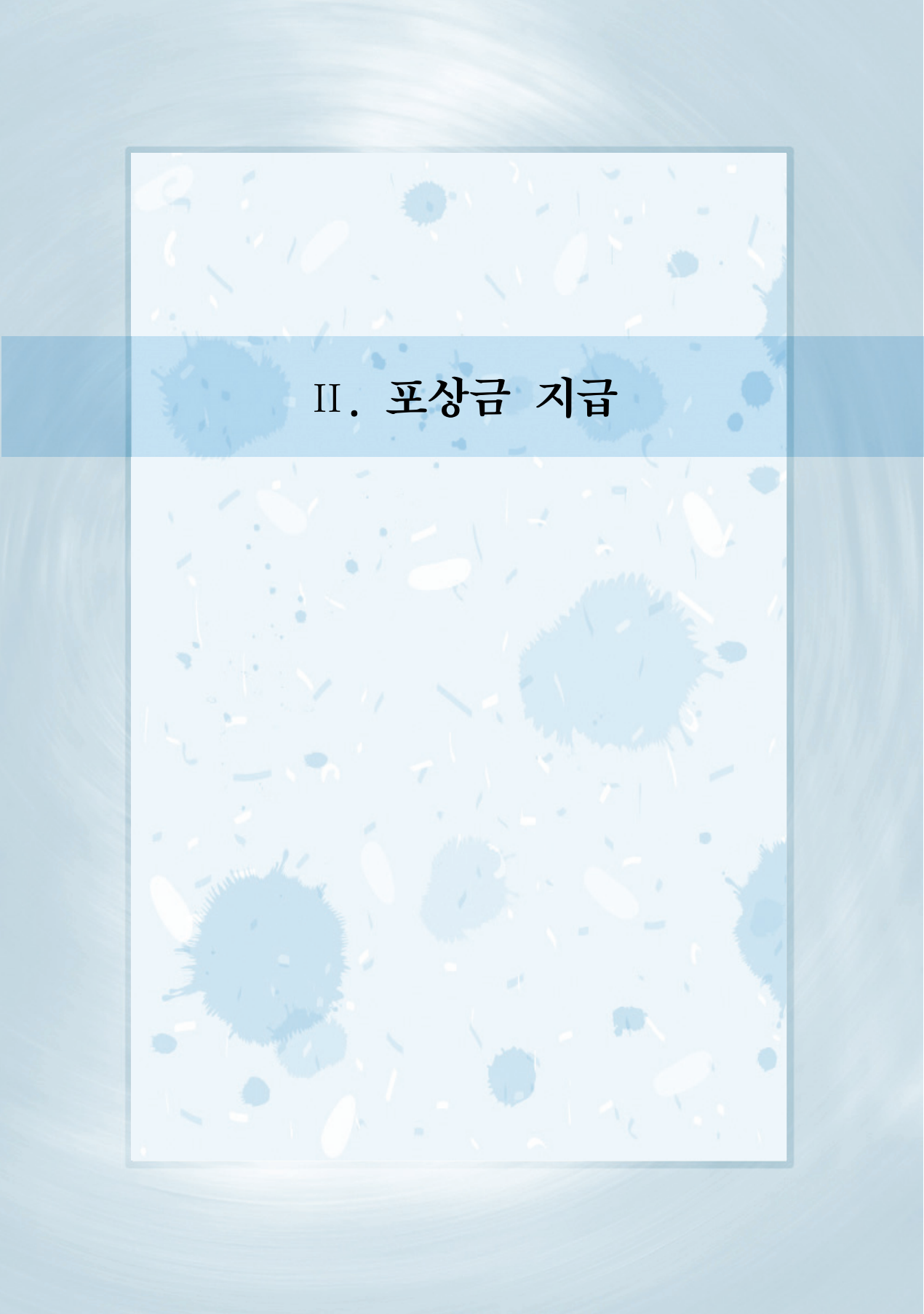
- 신청인은 태풍피해를 당한 어민이 자비로 선(先)복구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고, 그 복구사업비의 60~70%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신고자들이 폐사된 전복의 숫자를 늘리고 기존에 양식하던 전복을 외부에서 구입한 것처럼 계산서를 제출하여 복구사업비 보조금을 편취한 내용,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들이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편취액 48,985,500원 대하여 새로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고, 위 환수에 관한 법률관계 확정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4,89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5-78호(2005. 11. 7.) 「태풍피해 어민의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지급」



II. 포상금 지급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5. 12. 21. 「생동성시험결과 조작비리」건을 신고 하였는바,
- －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대 약학연구소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결과 시험데이터를 조작함으로써 약효가 미달되는 불량 의약품이 ○○청의 허가를 받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전 약학계에 성행하고 있어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 등을 신고함.
- －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즉 법 제2조제4호 가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 위 신고로 인하여 국내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생동성시험 조작을 근절하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국민보건과 공공의 안전이란 측면에서 부패방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0,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6-17호(2006. 2. 6.) 「생동성시험결과 조작비리」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6. 9. 28. 「국·공립병원 의료기기 납품비리」건을 신고하였는바,
- －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방사선촬영기계 등의 납품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유착하여 편의를 봐주는 방법 등으로 수억 원 상당의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또한 X-ray, C.T, M.R.I 등 촬영에 쓰이는 의약품인 조영제(造影劑)를 납품받아 주는 대가로 제약업체들로부터 골프접대 및 향응 등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신고함
- －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즉 법 제2조제4호 가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 위 신고로 인하여 의료계의 리베이트성 비리가 밝혀져 피신고자들이 기소유예 처분되고, 관련법령 및 제도의 개선과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 방지 등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1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7-4호(2007. 1. 15.) 「국·공립병원 의료기기 납품비리」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6. 8. 28. 「국가유공자등록비리」건을 신고하였는바,
- －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입대 전의 지병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복무 후 전역을 하였는바, 전역 후 부당하게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과, 국가유공자 ○○○의 배우자가 담당자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의 사망경위가 교통사고임에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하여 상위 등급의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아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신고함
- －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즉 법 제2조제4호 가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 위 신고로 인하여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방지에도 기여한 바가 크며, 이 사건을 계기로 허위 공상처리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제도의 악용사례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4. 2. 24. 「공무원 직무관련 부동산 투기」건을 신고하였는바,
- －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공무원인 피신고자가 도로 개설관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도로개설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한 땅지 2필지 1,643㎡를 피신고자 부인명의로 싼 값에 산 뒤, 노선계획안이 확정되어 땅값이 몇 배 치솟자, 이 땅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부당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신고함
- －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즉 법 제2조제4호 가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죄로 형사처벌 되고, 대법원이 최초로 (구)「부패방지법」제50조 제1항을 적용·판결하는 등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사실이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6. 11. 14. 「○○-○○ 공사구간 공사대금 편취」건을 신고하였는바,
- －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간 도로확포장공사’ 수주 건설사와 공무원들이 유착하여 철제용 가교는 임시구조물로서 시공 후 철거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설계보다 축소 혹은 미시공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국가예산 50여억 원을 편취 착복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함
- －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 위 신고로 인하여 건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건설 기술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국회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20,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관련 의안〉**

- － 분과2006-138호(2006. 12. 6.) 「○○-○○ 공사구간 공사대금 편취」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8. 2. 4. 「국가유공자 등록비리」건을 신고하였는바,
- －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주말에 ○○단 훈련장 부근 야산에 밤을 따라 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는데도 ‘훈련에 대비해 지형정찰을 나갔다가 다쳤다’고 속여, 국가유공자로 허위 인정받아 각종 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신고함
- －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즉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 위 신고로 인하여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공공기관 등의 재산상 이익 등을 가져온 점과 유사 비리사례 예방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제4절 제도개선

1. 의안개요

- 대부분의 가구에서 자동차를 보유하는 등 자동차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손해배상 등 자동차 사고 처리에 대비한 자동차보험은 전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나,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금 부당청구 행위의 증가로 선의의 피해자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불신이 야기되고 있어 자동차보험금 청구 관련 문제점을 심층 분석·개선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 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 심의내용

-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준·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및 사후관리 시스템의 강화방안 논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 유관기관 간 보험정보 공유제도 법제화
- ▶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 및 보험회사의 관심 제고
- ※ 별첨 :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 2007년 12월 현재 국내 자동차등록대수는 1,643만대(가구당 1대)이며, 자동차보험료는 9조1천억 원(가구당 57만원)으로 손해배상 등 자동차 사고 처리에 대비한 자동차보험은 전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나 보험금 부당청구가 빈발하여 선의의 피해자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사회전반에 불신을 야기시킴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자동차보험금 청구 관련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함

1. 유관기관 간 보험정보 공유제도 법제화

- 부당청구자 정보공유를 통한 예방시스템 도입
 - －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범죄의자 조회시스템’ 등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정보 집적기관을 통해 각 보험사가 부당청구자 관련 정보를 공유
 - 민영보험사와 유사보험사 간 정보공유제도 법제화
 - － 민영보험사와 농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기관과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법제화
- ⇒ 보험금 지급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당청구를 예방·적발

2.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 부품제작사의 국내자동차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 도입
 - － 부품정보(차종별, 연식별, 사양별 가격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자동차관리법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 － 전문기관은 소비자 등이 부품정보를 이용하여 수리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부품정보시스템을 구축

- 수입차에 대한 표준작업시간표 공표 및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
 - － 수입차(수입 이륜자동차 포함)에 대해서도 국산차량과 동일하게 표준작업시간표 공표 및 부품정보 공개를 의무화
 - － 수입차 직영사업자와 부품 수입사업자의 부품가격 경쟁이 가능하도록 수입차 직영사업자와 부품수입업자의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

3.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부당청구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 마련
 - － 보험업법에 보험금 부당청구에 대한 정의규정 및 부당청구 유형별 처벌규정을 신설
- 부당청구에 개입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 보험금 부당청구에 개입한 보험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요건 신설
- 부당청구업체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 － 보험금 부당청구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부품업체, 정비업체, 병의원 등 부당청구업체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

4.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 및 관심제고

- 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체계 개선
 - － 자동차수리비용 차이에 따른 2단계 할증을 세분화하여 합리성 제고
 - － 개인승용 대물담보 가입금액 구간 세분화
-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의무화
 - － 부당청구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환급 절차, 환급 방법 등을 포함한 환급 의무화 방안 마련

- 보험표준약관에 부당청구 경고 문구 기재
 - － 보험금 부당청구에 대한 경고 문구를 마련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 부터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고취

1. 의안개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주민생활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이나,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독점적 수익계약에 의한 시장 규제, 처리비용 부당청구,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손실은 물론,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 인상 등 부당행위가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 독점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 등을 위해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 심의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논의와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시장규제 완화
- ▶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타당성 제고
- ▶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 ▶ 가짜 쓰레기종량제 봉투 불법유통 관리·감독 강화
- ▶ 주민감시 및 참여 확대
- ※ 별첨 :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행정안전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주민생활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고유업무 중 하나이나,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독점적 수의계약에 의한 시장 규제, 처리비용 부당청구,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손실은 물론, 쓰레기종량제봉투 값 인상 등으로 주민 부담 증가로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중인 전국 175개소 중 98.8%가 독점 수의계약
 - '07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9.41%로 '05년(31.2%) 대비 1.79% 감소
 -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 주민부담율은 42.83%에서 45.27%로 2.44% 증가
-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감시요원” 구성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부당행위가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 자치단체만의 자체적인 노력에 한계가 있어
- 공개경쟁입찰의 확대, 대행비용 산출의 적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제도개선을 권고

제도개선 기본방향

- 대행업체 선정 **계약단계**에서의 부패소지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단계**에서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감독체계 강화

1. 공개경쟁입찰 확대로 시장규제 완화

-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 지정
 - － 인구, 지역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정기준(예시)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별로 공개경쟁 입찰 도입
- 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 마련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광역 시·도별로 관할 구역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적격심사 기준 완비
- 공개경쟁입찰 참가대상 확대
 - － 공개경쟁에 따른 대행비용 경쟁력 확보 및 공개경쟁 요건 마련을 위해 입찰 참가자격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로 확대

2. 대행비용 산출의 정확성·타당성 제고

- 원가계산 표준모델 제시
 - － 대행료 과다비용 발생 및 각종 산출용역 남발 방지를 위해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별 표준모델 제시
- 처리대행 집행비용 정산 의무화
 - － 용역서 및 계약체결 내역서를 근거로 지급되는 대행비용에 대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처리대행 집행비용 정산 의무화를 계약서에 명시

3. 대행비용 부담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 생활폐기물 계량업무 관리·감독 강화
 - － 수집·운반차량 공차무게 현실화
 - － 폐기물량 계량시 지자체 감독 공무원 배석 의무화
 - － 계량측정 수기방식 금지
- 생활폐기물 불법 혼합 방지
 - － 폐기물 종류별 수거·운반체계 개편
 -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수납 대행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 대행업체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체결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계약서에 명시
 - －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시 수집·운반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기존 수집·운반대행 허가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당행위 재발 방지

4.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관리·감독 강화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업소 지도·점검 철저
-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변조 방지시스템 강구
-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 신고포상금제 실시

5. 주민 감시 및 참여 확대

- 「주민참여단」(가칭) 구성 및 운영 확대
- 「주민참여단」 활용성과 극대화
 - － 주민참여 실적 자원봉사 마일리지 부여 등

1. 의안개요

- 국가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 등을 위하여 국립대학의 기성회회계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률적 근거 및 통제시스템 미비로 기성회비를 원래 목적인 교육시설 투자 등에는 일부만 사용하고 상당부분을 교직원의 급여성수당과 소모성 경비에 사용하는 등의 재정낭비와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 심의내용

- 교과부가 마련 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상 기성회회계의 통제시스템 확보방안 등 논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 기성회 회계의 법적 근거 마련
- ▶ 재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 예산의 합목적 사용 및 투명성 제고
-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의 구체화

※ 별첨 :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권고안

3.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

4. 권고결과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운영 개선대책 권고안

해당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의 기성회회계는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1977년에 도입되었으나, 효율적인 통제시스템 미비로
 - 기성회비를 원래 목적인 교육시설 투자에는 일부만 사용하고 상당부분을 나눠 먹기식 급여 보조성 수당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 외부 통제를 받지 않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주로 소모성 경비에 사용하는 등 재정낭비로 학생의 교육권 침해 등의 각종 부조리 발생 등
- 기성회 예산의 불투명성 문제로 국민감사청구가 제기되는 등의 사회문제화 대두되고 있음에도
 - ※ ○○대 총학생회 국민감사청구('08.3), ○○대 총학생회 국민감사청구('03.6)
- 교과부에서 마련 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에는 감사원, 국회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성회회계의 부정정한 운영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권고

【문 제 점】

1. 기성회비 징수의 법률적 근거 문제

-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의 징수 관련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었으나, 관련된 별도 규정 없음
-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기성회비를 「기성회규약」(대학내규)만을

근거로 대학이 자의적으로 징수하는 문제 발생

2. 기성회 회계집행의 합목적성 감소

- 긴급한 교육시설 및 학교운영 관련 지출 저조
- 교육연구활동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급여성 경비 지출
 - － 일반직원의 급여보조성 인건비 부당 집행
 - － 교재연구개발비 등의 부적정 집행
 - － 교원의 보직수행 지원비 편법지급
- 일반회계와 중복·편법 편성 및 부당집행
 - －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기성회계에 중복 편성

【제도개선 권고】

1. 기성회 회계의 법적 근거 마련

- 학부모에 금전적 부담을 주는 기성회비 징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 교과부에서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제정 추진 중

2. 재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재정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 법제화
 - ⇒ 개정시안 제8조제3항의 재정위원회 위원 자격에 명문화

시안	개선안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③ 생략 1. 해당 국립대학의 교직원 2. 동 문 3. 지역사회 인사 또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 4. 대학교육 및 운영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신 설〉 5. 기타 회계규칙이 정하는 자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학부형 또는 학생 대표 6. 현행 5호와 같음

3. 예산의 합목적 사용 및 투명성 제고

- 일반직, 기성회직 등의 급여보조성 수당 지급 제한
 - － 일반직, 기성회직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보수 외에 연구지원보조비 등의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 명시
- ⇒ 시안 제33조(연구보조비 등의 지급)의 개정

시안	개선안
제33조(연구보조비 등의 지급)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공무원의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회계의 재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보수 외에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연구보조비 등의 지급)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공무원의 소속 교원에 대하여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회계의 재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보수 외에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교원 연구보조비 등의 지급기준 강화
 - － ‘연구보조비 세부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위원회 심의
 - － ‘교재연구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위원회 심의

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의 구체화

- 법령 마련 전, 정부의「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
 -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및 관련법규 마련 전까지 국립대학 회계운영은 정부 각급 기관들의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
- 예산편성·집행기준의 구체화 및 책임성 강화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과부의 「국립대학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마련시 정부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집행지침 수준으로 구체화

1. 의안개요

- 운전면허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필수품이자 생계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면허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있고, 부정·부패 등 부조리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발급과정에서 국민부담 경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안

2. 심의내용

- 운전면허의 취득과 재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부담적 요소 경감 및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 운전면허 재발급 절차 개선
 - － 재교부 신청시 인터넷 사용 활성화
 - － 사진 즉석촬영 방식의 도입 및 활성화
- ▶ 운전면허학원 관리감독 제도 개선
 - －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 방안 강구
 - － 학원 등록생 출결관련 학사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 － 기능시험 전자채점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별첨 :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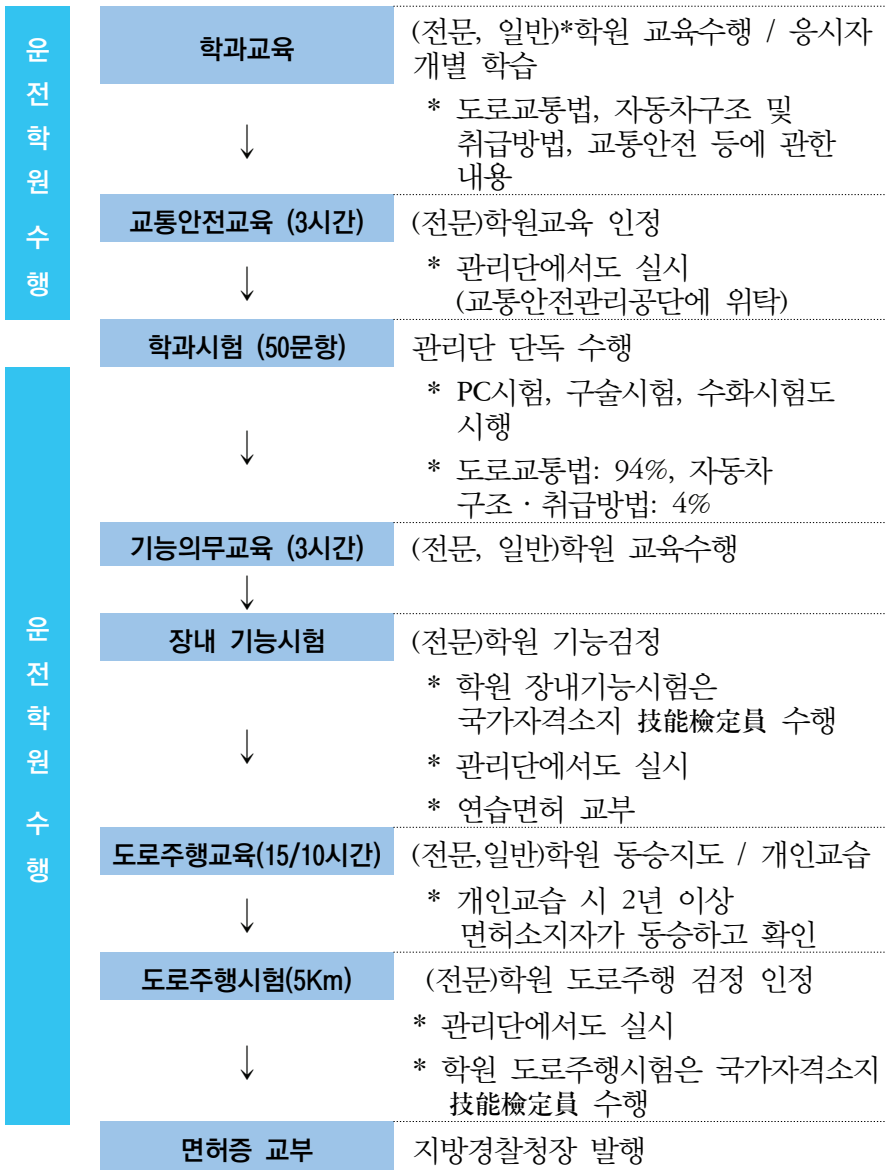
경찰청, 운전면허관리시험단

- 운전면허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기초 필수 품이자 생계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 면허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고 있고,
 - 면허증 재발급 과정에서
 - 대리인 신청제도를 악용한 가짜면허 발급,
 - 학원등록 수강생 교육시간 출결관리 부정,
 -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도 제재 없이 영업지속 등의 부정·부패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 운전면허의 취득과 재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에 있어 국민 부담의 경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관련 현황

- 운전면허시험제도는 학과, 기능, 학습지, 적성검사 등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간 시장매출액은 최소 6,000억원으로 추정
 - * 880천명('07년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x 700천원(최소비용) = 6,160억 원
- 운전학원은 수도권에 집중(119개, 전체의 23.6%)되어 있고, 등록의 판촉이나 운영과정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속성면허’ 등장, 가격질서 혼란 등 불·탈법적인 운영사례도 자주 발생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하 ‘관리단’으로 약칭)은 2000.1월 설립된 경찰청 산하 정부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전국에 26개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학원은 전국에 505개(전문학원 450개, 일반학원 55개)가 있음

《 운전면허 취득 절차도 》



* 일반학원은 등록제로, 전문학원은 지정제로 운영(도로교통법시행령 제60조)

* 일반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전환 지정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6조)

□ 제도개선(안)

1. 운전면허 재발급 업무처리 방법 개선

1-1 인터넷을 통한 본인 재교부 신청 활성화

- 면허인이 (임의)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기보다는 본인이 손쉽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의 사용을 활성화
-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대리인 신청기회의 악용 가능성도 막을 수 있고, 면허인이 경찰서 등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됨
⇒ 인터넷을 통한 재교부 신청 활성화 방안 강구

1-2 사진 즉석촬영 방식의 도입 및 활성화

- 본인이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 시 희망자에 한하여 증명용 사진을 민원창구에서 즉석 촬영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
 - *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 당국(BMV)이나 대학 등 공공기관은 각종 ID 발급시 컴퓨터시스템으로 즉석 촬영, 이를 시스템적으로 증명서(카드)에 인화·발급
 - 장기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면허증 재교부 제도로 인한 부정사례 방지 효과 기대
 - * 현행처럼 사진관을 찾아 증명용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도 없어지게 됨 (비용 경감효과 : 95만 명('07년도) x 10,000원 = 95억원)
- ⇒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 시험장으로 확대 검토

2. 운전면허 학원 관리감독 제도 개선

2-1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 방안 강구

-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코자 하는 사람이 운전학원에 등록하였을 경우 거쳐야 하는 단계가 총 7단계로서 통상 1개월 정도의 기간과, 1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됨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 운전기능 습득을 사회화 과정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면허제”(연습면허 → 중간면허 → 운전면허)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일정한 제한조건(야간운전 금지, 면허소지자 동승 등)과 소정의 경과기간을 둠
- 18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洲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운전기능의 습득과 관련하여 그 방법이나 절차 등을 의무적 과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시력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함
- 국민의 불편 및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3시간)”, “기능교육(3시간)”, “도로주행교육(10시간)” 등의 절차를 폐지 또는 축소 등 간소화 방안 강구

예시)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방안(안)

※ 폐지 : 관련 시험에 포함시키는 방안

- 교통안전교육(3시간), 기능교육(3시간) : 학과시험에 포함
- 도로주행교육(10시간) : 도로주행시험에 포함

※ 축소 : 3개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2-2 학원 등록생 출결관련 학사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 운전학원에서 학사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수기 또는 사후 입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일된 양식에 의거 구체적인 장애발생 사실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

☞ 예시) : 학원관리지침 상 관련규정 신설(안)

현행	학원관리지침 제32조 조항 신설 (안)
	<u>지문인식기나 학사관리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서면, 수기 또는 사후 입력을 하게 된 경우 장애발생 등 그 불가피한 사실의 내용을 <별표>의 양식에 구체적으로 기록·보관하고 감독관청이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u> * <별표> 양식 신설

- 감독기관(지방경찰청)은 사실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조작 및 허위 기록 등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

⇒ 학원관리지침 개정

2-3 기능시험 전자채점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채점기 설치 이후 운영과정에서의 관리상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보완
 - 채점기 관리상태 관련 지도·점검과 학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 시 그 작동상태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예시) : 학원관리지침 신설(안)

학사관리지침 상 조문 신설(안)
제 조 (채점기의 점검) ① 지방경찰청장은 채점기의 작동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학원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 시 그 작동상태를 동시에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점기를 점검한 결과 중대한 기능상의 결함을 발견하거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학원은 채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별지 제 호 서식에 의거 점검 관리상태를 기록·보관하고 감독관청이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채점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고장 방치에 따른 부당 합격 또는 합격을 조작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기대

⇒ 학원관리지침 개정

1. 의안개요

- 일부 공공기관이 중·대형 분양사업을 통해 민간과 과도한 경쟁을 함으로써 저소득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역할을 외면하고 공공주택이 특혜분양·부정입주, 불법양도·전대 등을 통해 투기수단으로 활용됨으로 인해 공공기관 주택사업에 대한 불신 가중으로 공공기관 주택사업의 공공성 역할 강화와 공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 심의내용

- 저소득자·무주택자 등의 주거부담 완화와 공공주택이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논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 공공기관 주택사업의 공공성 역할 강화
- ▶ 원가산출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
- ▶ 공공주택 공급과정의 투명성 제고
- ▶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 ※ 별첨 :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권고

4. 권고결과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 정부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 사회 저소득층 복지증진, 중장기적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중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 ('02) 77천호 → ('03) 95천호 → ('04) 115천호 → ('05) 136천호 → ('06) 132천호
-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과정이 입주자 선정에서부터 당첨자 관리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 공급과정에서 특혜분양, 편법양도·전대 등 각종 위·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부동산브로커, 분양담당자에 의해 투기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정부 주택정책의 신뢰도 저하 및 주택시장 혼란을 유발하고 있고 또한 공공기관은 민간업체로부터 공급이 충분치 않은 임대·소형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보완적 기능에 충실해야 함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중·대형 분양사업에 주력하여 민간업체와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에
- 공공기관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공급 및 관리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

□ 제도개선 기본방향

- 공공기관이 민간업체로부터 공급이 충분치 않은 임대·소형주택 공급에 주력하게 함으로써 공익적 역할을 강화
- 공공기관 원가산출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분양수익 폭리’ 논란을 차단
- 분양주택 공급 및 운영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특혜분양, 부적격자 당첨 등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위·탈법 행위 및 투기수단화를 방지
-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 임대주택 관리기능 재조정을 통해 불법양도·전대행위 방지 기능 강화

□ 제도개선(안)

1 공공기관 주택사업의 공공성 역할 강화

□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 공공기관은 민간 공급이 충분치 않은 임대·소형주택 우선 공급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임대·소형주택 우선 공급비율과 국민주택규모 공급비율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 특히, 민간주택업체에서 공급 가능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중·대형 분양사업은 가급적 지양
- ※ 중·대형 분양사업 추진시 임대주택 손실보전 범위내로 공급비율을 최대한 축소
- 공공주택을 개발·공급 및 관리하는 공공기관(지방공사 포함) 특성을 고려한 경영평가지표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
- ※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이 되도록 건설호수 등 양적 지표항목의 배점 조정 등

〈(예시) 경영평가 지표항목 보완사항〉

- 저소득층 등 주거안정(임대·소형주택) 기여정도에 대한 배점 가중치 상향 조정 방안
- 분양수익 폭리방지를 위한 건설원가 대비 주택공급가격 책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항목 도입 방안

□ 임대주택 관리업무 통합·운영 방안 검토(중·장기 방안)

- 임대주택 관리업무가 기관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 관리부실, 관리비 차등 부과, 시설 노후화 늦장 대처 등에 따른 임차인 불편해소 및 효율적 관리 필요
- ※ 예시) 임대관리 및 주택관리 업무를 구분하되, 임대업무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광역단위에서 통합관리하고, 주택업무는 민간주택관리전문회사에 위탁

2 원가산출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

□ 공공주택 공급가격(분양·임대) 산출의 적정성 심사강화

- 매년 초 사업물량에 대한 감독기관 업무보고시 분양가격, 원가 등과 관련한 심사 기본원칙과 심사방법을 포함
- 원가항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관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원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 민간위원은 과반수이상 전문가(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포함)로 구성하고, 시민단체, 협회·학회 등 외부단체의 추천을 의무화
 - ※ 이행추이 결과, 개선효과 미흡할 경우 원가심사위의 외부기관 설치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 공급가격 심의시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세부산출근거 제공
 - ※ (예시) 택지조성원가, 주택건설원가(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주택공급가격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그 밖의 자료는 요청시 제공

□ 건설원가 세부항목 및 산출근거 공개

- 분양전환가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근거인 공급당시 임대주택 건설원가의 세부항목별 비용에 대한 산출내역 공개
 - － 공공기관의 분양주택 공개항목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개
 - ※ 공공임대(주공)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08.5월 대법원)

-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택지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 조성원가 수준으로 변경
 - ※ 물류단지(물류시설개발법) 임대주택 택지비 공급가격을 택지지구(택촉법) 수준으로 적용

3 공공주택 공급 및 운영과정의 실효성 제고

- 입주자 선정업무 변경 : 자체 선정 → 대행기관(은행) 의뢰
 - 공공기관이 자체 전산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동·호수 배정하던 업무를 금지하고, 「입주자선정업무 대행기관」에 의뢰
 - ※ 예시) 공공시행자(전산추첨 의뢰) → 은행(당첨자 및 동·호수 전산추첨) → 금융결제원(재당첨 조회) → 국토해양부(주택전산 검색) → 공공시행자(부적격당첨자 확인)
 - 입주자선정 대행기관의 전산추첨 시스템에 대한 감독기관 정기 감사 실시
 - 개별 동·호수 지정 관련 특별배정 프로그램 기능 운영 금지
- 예비입주자 등 잔여세대 입주자 선정범위 및 공개 확대
 - 임의공급 물량 최소화를 위해 예비입주자 선정범위 확대
 - ※ 예시)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20% 이상(현재) → 50% 이상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잔여물량에 대한 정보(○○○동·호수, 잔여 예비입주자 현황 등) 홈페이지에 공개

□ 특별공급 물량 배정 및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 공공기관·자치단체장 등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기 전에 할당 범위를 해당지역 선정기관(보훈지청 등)과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 마련
- 해당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관련 세부 운영지침 마련
 - ※ 예시) 선순위자 신청포기 기록 비치, 당첨자 및 순위, 접수(추가접수 포함) 등 공개, 신청자 허위기재·고의누락 등에 대한 우선순위배점표 확인절차 도입 등

4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	---------------------------------

□ 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방지대책 마련

- 분양전환용 공공임대(5년, 10년)의 개인간 양도·전대행위 제한
 - － 임차권 양도허용 조항 중 편법양도에 주로 활용되는 근무·생업 관련 자격 심사기준 강화
 - ※ 예시) 전체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영국의 경우 임대주택의 개인간 양도는 불허하고 교환의 경우만 허용
 - － 이사 등의 사유 발생시 지역간 임대주택 상호교환 규정 신설 및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인프라 구축
- 인터넷 등으로 신고창구 다양화, 불법 양도·전대 행위 적발시 고발 조치 의무화 및 적발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 ※ 실태조사 세부절차 수립, 적정성 평가 시스템 구축, 태만시 제

재 방안 마련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임차인 대표회의 등의
조사 참여 방법 강구

□ 임대주택간 입주자 이동·순환 관리체계 방안 검토(중·장기 검토방안)

* 임차인 입주자격 변경에 따라 영구임대→국민임대(30년)→공공
임대(5년·10년)로 지역간·임대주택간 이동·순환할 수 있는 임
차인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임

○ 주거복지 지원대상임에도 해당 임대주택 자격요건 초과로 인한
퇴거 대상자에 대하여 미임대 주택 우선 알선방안 검토

※ 영구임대 퇴거대상자 중 국민임대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임대 알선, 국민임대 퇴거대상자 중 무주택자인 경우 공공
임대 알선 등

□ 부처별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 기관	조치 기한
국토교통 부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주택사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 공공기관은 민간공급이 충분치 않은 임대·소형주택을 우선 공급 - 국민주택규모(85m²)는 민간주택업체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마련	법적근거 마련	국 토 해양부 · 행 안전부	'09.10월
	- 공공기관(지방공사 포함)의 경영평가지표 개선 - 주거안정(임대·소형주택) 기여도에 대한 배점 가중치 상향조정 - 분양수익 폭리방지를 위한 건설원가 대비 주택공급 가격 책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항목 도입 방안	-	기 획 재정부 · 행 안전부	'09.10월
	임대주택 관리업무 통합·운영방안 검토	-	국 토 해양부	중·장기
인거사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 공급가격(분양·임대)의 적정성 심사강화 - 분양가격심사위원회를 사업시행기관에 설치·운영하되,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학회·협회 등을 통한 외부 추천을 의무화 - 공급가격 심의시 세부 산출근거 및 내역 제공	주택법 시행령	국 토 해양부	'09.10월
	공공임대 건설원가 세부항목 및 산출근거 공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국 토 해양부	'09.10월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택지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변경	물류시설 개 발 법령	국 토 해양부	'09.12월
국토교통 · 아파트 관련	- 입주자 선정업무의 공정성 제고 - 입주자 선정업무를 자체선정→대행기관에 의뢰 - 입주자선정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기관 정기 감사 실시 - 개별 동·호수 지정 관련 특별배정 프로그램 기능 운영금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 토 해양부	'09.10월
	- 예비입주자 등의 선정범위 및 공개 확대 -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20% 이상(현재)→50% 이상 - 잔여물량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 토 해양부	'09.10월
	- 특별공급 물량배정 및 대상자선정의 투명성 제고 - 물량배정 전 할당 비율(범위)을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관련 세부 운영지침 마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 토 해양부 · 특별공 급 소관부 처*	'09.10월

* 특별공급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관련	◦공공임대의 개인간 양도·전대행위 제한 - 임차권 양도허용 조항에 대한 자격심사기준 강화 - 이사 등 사유 발생시 지역간 임대주택 상호교환 규정 신설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임대주택법령 시행령	국토해양부	'09.10월
	◦공공임대 불법양도·전대 방지대책 마련 - 불법양도 등과 관련하여 신고창구 다양화(인터넷 활용 등) - 적발시 고발조치 의무화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안 마련	임대주택법령 시행령	국토해양부	'09.10월
	◦임대주택간 입주자 이동·순환 관리체계 방안 검토 - 임대주택 자격요건 초과로 인한 퇴거 대상자에 대해 미임대 주택 우선 알선방안 검토 등	-	국토해양부	중·장기

1. 의안개요

- 대학발전기금은 대학 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규모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자산운용 기준 미비로 운영주체 간 갈등 및 분쟁의 원인으로 부상하고 기업회계 원칙 문란 및 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함에,
- 변칙운용에 따른 기금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기부목적의 달성과 대학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 심의내용

- 대학발전기금의 부당한 지출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으로 부실화 방지와 투명성 확보로 기부목적 달성 및 대학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 기금 예산편성 및 관리기준의 법제화
- ▶ 목적기부금에 대한 집행기준 구체화
- ▶ 발전기금 금융자산운용의 투명성 확보
- ▶ 부당집행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 ※ 별첨 :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의 학술연구 활동 및 장학금 지원, 기자재 등 시설 확충 등의 목적을 위해 동문, 독지가 및 기업체 등으로부터 조성하는 대학발전기금은 대학 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 ※ '07 대학발전기금은 5,323억원('06년 4,822억원)으로 국립대 기성회계 1조 5,689억원의 34% 해당
- 모금한 대학 발전기금이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자산운용기준 미비로 기부 목적과 상이하게 집행되어 운영주체 간 갈등 및 분쟁의 원인으로 부상되었고,
 - ※ ○○대학교는 캠퍼스 부지기금조성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195억원 중 36억원만 기부목적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수연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가 기부자가 대학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기부약속 무효소송) 제기('08.7월 연합뉴스)
- 형식적 이사회 의결 및 회계간 임의 전·출입 등으로 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함에
 - ※ ○○대학교는 학교내 기념관 건립비로 발전기금을 모금하였으나 기금모금 실적이 저조하자 연구활동 지원 목적 등으로 조성한 발전기금에서 1,650백만원을 전용하여 기념관 건립비로 사용('08.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의 개선 필요

1. 대학발전기금 제도

☐ 조성목적 사업

- 학술연구 활동의 지원
- 학생의 장학사업
- 도서 및 연구기자재의 확충
- 교육연구 및 후생복지 시설의 확충 등

☐ 발전기금 구성

구 분	내 용
목적기부금	장학사업 등 용도가 지정되어 출연된 지정기부금
비목적기부금	“등록금 한번 더 내기” 등 특정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기부금
특수목적기부금	학교 내 기념관 건립 등 특수목적으로 출연된 지정기부금
기 타	기금 운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법인세 환급금 등

2. 기금 규모 및 운용현황

☐ 국·공립대 현황('08. 4. 1.기준)

구분	합계	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계	52	27	10	5	10
국립	42	25	10	5	2
공립	10	2	-	-	8

□ 기금규모

- '07년 국립대학의 발전기금은 5,323억원으로 국립대 일반회계 1조 9,865억원의 26.7%, 기성회계 1조 5,689억원의 34%에 해당함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재 산 규 모		
			기본재산	보통재산	기 타
2005		456,434,370	330,754,837	123,441,927	2,237,606
2006		482,238,387	347,926,497	131,547,532	2,764,358
2007		532,351,109	410,064,432	117,951,226	4,335,451

※ 기타 : 기본재산에 편입되지 않은 미술품 등 동산 및 부동산
(’08.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기 본 재 산	보 통 재 산
○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하거나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 기본재산의 과실소득, 회비수입 ○ 이사회 의결로 목적사업과 운영비로 사용

□ 조성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목적기부금	비목적기부금	특수목적기부금	기타
2005		135,499,031	86,080,023	18,895,599	6,509,272	24,014,137
2006		128,311,358	64,784,636	22,048,930	5,953,460	35,524,332
2007		137,004,557	73,712,976	18,690,460	4,789,141	39,811,980

※ 특수목적기부금 : 기념관 건립기금 등 , 기타 : 이자수익, 법인세 환급금 등

□ 집행내역

- 시설확충 및 장학사업 등 목적사업비를 포함한 '07년 발전기금 집행이 전년 대비 9% 증가하는 등 매년 대학재정의 큰 비중 차지
- 발전기금의 지속적 확충과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하여 집행 내역 중 기본재산 편입 비중이 급증 ('05년 21% ⇒ '06년 20% ⇒ '07년 45%)

(단위 : 천원)

연도 \ 구분	합계	목적사업비	경상비	기본재산 편입
2005	102,230,276	78,248,171	2,874,568	21,107,537
2006	129,352,795	100,529,220	3,021,503	25,802,072
2007	141,828,369	74,032,881	3,725,850	64,069,638

(자료 : '08.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3. 회계처리 원칙 및 의무

- 회계처리 기준
 - －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따라 처리(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 －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 의무
- 결산서류 공시 의무

1. 기금 예산편성 및 관리기준의 법제화

1-1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회계처리기준 법제화

- 발전기금의 변칙운용에 따른 기금의 부실화 방지 및 투명성 확보, 대학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을 법률, 예규, 지침 등으로 마련
 - － 대외활동비, 기금조성과 관련한 홍보비, 자료제작비 등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단 운영비, 사업비의 예산편성 및 관리기준 마련
 - － 이사장,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한 수당형태의 월정액 활동비 지급금지 및 실비정산 의무화

- 발전기금 조성과 무관한 대학직원의 복리후생비 등 지출 제한

⇒ “대학발전기금 회계처리 기준” 마련(교육과학기술부)

1-2 사업비의 세부 운용기준 구체화

-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인센티브 등 각종 명목으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 보전 성격의 경비 지출 금지
 - － 교수성과급 지원 명목으로 발전기금에서 이중 지급하는 급여 보전 성격의 경비
 - － 재단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대학 교직원의 해외여행 경비 등
- 장학금 지급·연구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연된 발전기금에 대한 세부 운용기준을 구체화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명시

- 장학금 지급 조건(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책정에 관한 사항
- 간접연구비 관리 및 연구비 정산에 관한 사항 등

⇒ “대학발전기금 회계처리 기준”에 반영(교육과학기술부)

2. 목적기부금에 대한 집행기준 구체화

2-1 목적기부금에 대한 재단 운영 관리비 공제 한도 규정

- 재단 운영 및 발전기금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목적기부금 공제 한도를 규정하여 목적사업의 부실화 및 기부자와 기부수혜자 등과의 갈등 방지
- 법인세 환급금, 일정규모 이상의 목적기부금 등 공제 대상 기금 및 출연금에 대한 공제율(10% 범위 내) 등을 정관에 명시

⇒ “대학발전기금 회계처리 기준”에 반영(교육과학기술부)

2-2 목적기부금의 구분 경리 및 용도변경 시 사전승인 의무화

- 발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기부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목적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
- 목적기부금 용도 변경 시 기부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 “대학발전기금 회계처리 기준”에 반영(교육과학기술부)

2-3 일정규모 이하 목적기부금의 사용절차 개선

- 기부금 전액을 사용해야 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용도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증서에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고, 감독기관인 시·도교육청에 그 사용내역을 결산보고 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 승인 전 사용한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결산보고서에 포함시키되 목적기부별로 별도 항목으로 첨부

⇒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반영(교육과학기술부)

3. 발전기금 금융자산운용의 투명성 확보

3-1 발전기금 금융자산 운용 체계 마련

- 발전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금융자산 운용 기준 및 자산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등 자산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 예규, 지침 등으로 마련
 - － 투자대상 상품 및 기관 선정, 금융상품별 투자방법, 채권보유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발전기금의 투자방식, 주식·채권 등 수익률 제고방안은 기금의 규모·사업의 목적에 따라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대학발전기금 금융자산 운용 기준” 마련(교육과학기술부)

3-2 『발전기금 금융자산 운용 자문위원회(가칭)』 설치

- 투자 의사 결정 및 위탁운영기관 선정 등 금융자산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금융자산 운용 자문위원회” 설치(자산 일정 규모 이상)

⇒ “대학발전기금 금융자산 운용 기준”에 반영(교육과학기술부)

4. 부당집행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4-1 발전기금 이사회 구성요건 강화

- 기금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에 동창회장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인사 선임 의무화

⇒ “대학발전기금 회계처리 기준”에 재단 이사회의 외부인사 선임 기준 마련(교육과학기술부)

4-2 발전기금 운용·집행내역의 공개 의무화

- 대학발전기금의 운용·집행현황에 대한 실적(명세서) 및 결산서류 등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 “대학발전기금 회계처리 기준”에 반영(교육과학기술부)

4-3 교비회계 등 발전기금회계로의 전입·전출 제한

- 발전기금회계 재원의 전입·전출에 관한 사안은 기부자 등이 참여하는 법인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시행령에 반영(교육과학기술부)
(2010.3.1. 시행 예정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이 공포될
경우 반영)

4-4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미 실시 등 회계처리 부적정 사유
가 고의일 경우 당초 경고처분 하였으나 고발 조치

⇒ “대학발전기금 회계처리 기준”에 반영(교육과학기술부)

III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조치 기한	비 고
1. 기금 예산편 성 및 관리기 준의 법제화	○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회계처리기준 법제화 ○ 사업비의 세부 운용기준 구체화	'09. 12.	교육 과학 기술부
2. 목적기부금 에 대한 집 행기준 구체 화	○ 목적기부금에 대한 재단 운영 관리비 공제한도 규정 ○ 목적기부금의 구분 정리 및 용도변경 시 사전승 인 의무화 ○ 일정규모 이하 목적기부금의 사용절차 개선	"	"
3. 발전기금 금융자산운 용의 투명성 확보	○ 발전기금 금융자산 운용 체계 마련 ○ 발전기금 금융자산 운용 자문위원회 설치	"	"
4. 부당집행에 대한 행·재 정적 제재 강화	○ 발전기금 이사회 구성요건 강화 ○ 발전기금 운용·집행내역의 공개 의무화 ○ 교비회계 등 발전기금회계로의 전입·전출 제한 ○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

※ '08. 11월 국회에 상정한「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공포 될 경
우 동 법에 따라 지침 등에 반영

1. 의안개요

- 생활체육협의회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공통된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도 생활체육협의회별로 임의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여 영수증 이중처리·부풀리기, 횡령, 사적사용 등 지원금 불법사용 사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 따라서 생활체육사업과 관련한 계획수립, 집행, 정산, 성과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마련하여 권고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생활체육협회의 공통된 회계처리 집행지침마련,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책임자의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생활체육사업계획 수립시 지자체와의 협조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 회계관리시스템 및 지도·감독규정 마련
- ▶ 생활체육사업 계획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 ▶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리의 투명성 제고
- ▶ 생활체육협회의 지원 근거 마련 및 독립성 제고
- ※ 별첨 :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체육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관계기관의 예산 지원이 급증하고 있음('07년도 1,527억원)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생활체육부문 예산 지원현황

연도별	1995	2000	2005	2007
예산	104억원	301억원	1,145억원	1,527억원

※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율

연도별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참여율	34.7%	37.6%	38.8%	33.4%	39.8%	44.1%

-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도 생활체육협의회별로 임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여 영수증 이중처리·부풀리기, 횡령, 사적사용 등 지원금 불법사용 사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 ○○구 생활체육협의회는 ‘○○ 가족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구청과 ○○시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각각 200만원과 80만원을 지원받아 사용 후 관련업체로부터 영수증을 이중으로 발급받아 회계처리('07.7. 위원회 신고사건)
- 따라서, 생활체육사업과 관련한 계획수립, 집행, 정산, 성과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1.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관련(국민체육진흥공단 소관)
 -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1항 10호(기금의 사용 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시·도 소관)
 -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1항(지방 체육의 진흥)
 -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2항(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과 권장)에 따른 조례 제정

2. 사업별 지원규모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공단) : 43,406백만원('08년)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08년 예산 (기금)	내용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668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기관운영비, 5개사업
전국연합회 육성	2,408	- 46개 종목별연합회 인건비·운영비 - 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
생활체육행사	4,688	- 전국한마당축전, 세계한민족축전 - 종목별 동호인 행사지원, 종목별 클럽리그제운영 - 노인생활체육지원
생활체육광장운영	1,184	- 전국 520개소 520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도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566	- 7개종목 120개 상설교실 운영
생활체육교류	469	- 한·일, 한·중 생활체육국제교류
합계	15,983	

□ 지방비(시·도 및 시·군·구) : 약 36,360백만원('08년)

○ 지방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8년 예산		내 용
	기금	지방비	
시·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	1,097	8,045	16개 시도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운영비
생활체육교실 운영	1,492	3,481	읍·면·동 단위 1개소 이상 총 3,307개 교실 지도자 여비, 급식비, 운동용구비 지원
시·도 생활체육프로그 램 (16개 시도 7개 사업)	2,556	2,556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력교실, 장수체육대학운영, 레크레이션교실, 여성생활체육 건강강좌,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생활체육지도자	12,348	12,348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지도자 1,200명 수당, 여비 등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3,922	3,922	시도(시·군·구)생체협 지도자 350명 수당, 여비 등
스포츠클럽 지원	3,160	3,160	16개 시·도내 한국형스포츠클럽 경 상경비 지원
시도 전국체육대회지원	2,848	2,848	대회일반운영비, 행사비, 경기운영비
합계	27,423	36,360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기금의 정률(50%)이상 지원

1. 회계관리시스템 및 지도·감독 규정 마련

1-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시·도 및 시·군·구는 기관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에 대한 보조사업비 전용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생활체육협의회에 제공
-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지방보조사업 집행시 의무적으로 보조사업비 전용신용카드를 사용
- 시·도 및 시·군·구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
 - ※ 사회단체보조사업 지원금에 대한 “체크카드 및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참조



시·도 및 시·군·구 「지방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2 생활체육협의회의 공통된 회계처리집행지침 마련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소속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매년 초 공통된 회계처리집행지침 마련 및 제공
 -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 및 사용 관련 지침, 생활체육 사업별 지침, 생활체육협의회 공통 보수규정, 여비규정 등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 집행시 세부회계처리기준 및 주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지침서로 마련, 회계프로그램 마련
- ※ 정부예산집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지침 참조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계처리 세부집행지침」 제정 및 시행

1-3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소속 생활체육협의회 및 전국종목별연합회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감사규정 마련
 - － 생활체육협의회의 공통된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포함

〈예시〉 감사규정(안) 내용

- － 회계처리지침 위반시 징계사항 마련
- － 임원 비리시 징계사항 마련 및 정보공유 등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감사규정」 제정

- 시·도 및 시·군·구는 소속 생활체육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감사규정을 조례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감사규정 마련

1-4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책임자의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의 선임 및 자격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예시〉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 자격 공통기준(안)

- － 행정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등

-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 장, 회계담당자에 대한 예산관리의 안전장치 마련
- － 신원보증보험 가입증서 등 신원보증을 확인 후 해당 직책 임명

➡ 국민생활체육협회의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인사규정」에 반영

2. 생활체육사업 계획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2-1 생활체육 사업계획 수립시 지자체와의 협조 시스템 구축

- 시·도 생활체육사업의 활성화와 지역별 특성화 체육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시·도와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및 시·도의 참여기회 부여 필요

- － 시·도별 생활체육의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하는 임원의 선임 및 업무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생활체육협회의 “승인사항”을 “보고사항”으로 개정, 시·도 자치단체와의 “협의사항”으로 명시

➡ 국민생활체육협회의 「정관」 및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인사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등에 반영

- 효과적인 생활체육사업을 위해 계획수립 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전 협의단계 마련 필요
- － 매년 지방생활체육사업 계획 수립시 사업별 지역 특성 반영 여부, 사업의 성과 제고방안 등에 대해 협의 후 공단에 제출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원사업 결정 및 계획수립 절차에 반영

- 생활체육사업을 위한 학교, 공공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생활체육협의회간의 협조체계 구축

- ※ 지방체육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 지원사항 규정
 - －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편의 제공 및 사용료 할인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시·군·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포함
 - －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 사용시 우선권 부여 등

➡ 지방자치단체의「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반영

2-2 사업 평가결과의 피드백 시스템 보완

-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시스템 마련
 - －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
 -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할 수 있는 차등 지원 예산배정 기준 마련
 - － 신규사업을 개발시 각 지역별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의 여론수렴 및 반영절차 마련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원사업 결정 및 계획수립 절차에 반영

3.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리의 투명성 제고

3-1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의 투명성 제고

- 시·군·구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채용방법 개선
 -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와 같이 시·도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
 - ※ 현재 시군구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 선발 채용,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시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개채용을 거쳐 선발하는 등 이원화 되어 있음
- 생활체육지도자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해당 종목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
 - － 채용 종목별로 체육전공자 등 외부전문가 1명 이상 포함
-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시 실기시험 항목 추가
- 서면심의회시 해당 자격증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확행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반영

3-2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시·도별, 시·군·구별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종목별 인력풀 관리를 통해 신규 채용시 활용
- ※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인력 풀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비리행위로 파면된 경우라도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협의회에

재임용 될 수도 있음

- 시·도내 시·군·구간 생활체육지도자 교류배치 근거 마련
 - ※ 현재는 시·도내 시·군·구간 생활체육지도자 교류배치 근거가 없어 우수인력에 대한 폭 넓은 경쟁 유치가 불가능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반영

3-3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별 연수원에서 발급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정보를 전국 통합 전산시스템으로 구축, 자격증 조회 서비스 제공
-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시 자격증에 대한 검증에 위해 조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에 반영

3-4 동호인 명부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운용 활성화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축한 “시도생활체육 동호인 현황” 시스템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
-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의 정확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종목별 동호인 명부를 수기방식이 아닌 전산시스템으로 전환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호인 정보시스템 관리지침에 반영

4.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 및 독립성 제고

4-1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

- 안정적·지속적 생활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국민체육진흥법의 지원단체로 명시
 - －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법」의 지원단체로 명시

4-2 생활체육협의회 독립성 제고

- 지역생활체육단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및 사무처장(사무국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 －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마련
 - － 임·직원 대상 정치 윤리의식 제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국민생활체육협회의 「산하 조직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및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인사규정」에 반영

II 조치 사항

- 권고일자 : 2008. 12. 24.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회계관리시스템 및 지도·감독규정 마련	1-1.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국민생활체육협의회	'09. 6.30
	1-2. 생활체육협의회의 공통된 회계처리집행 지침 마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09. 6.30
	1-3.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 마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09. 6.30
	1-4.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책임자의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09. 6.30
2. 생활체육사업 계획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2-1. 생활체육 사업계획 수립시 지자체와의 협조 시스템 구축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09. 6.30
	2-2. 사업 성과결과의 피드백 시스템 보완	국민체육진흥공단	'09. 6.30
3.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리의 투명성 제고	3-1.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의 투명성 제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09. 6.30
	3-2.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관리의 효율성 제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09. 6.30
	3-3.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09. 6.30
	3-4. 동호인 명부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운용 활성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09. 6.30
4.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및 독립성 제고	4-1.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09.12.30
	4-2. 생활체육협의회의 독립성 제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09. 6.30

※ 법령 및 조례 제정·개정사항은 '09. 12. 31 까지

1. 의안개요

- 영유아 보육사업 분야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과정이 불투명하고, 보육시설의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보육시설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여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권고

2. 심의내용

-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부 보육시설의 보조금 부당청구 및 사용방지,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통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 보육시설 회계관리 투명성 강화
- ▶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견인장치 활성화
- ※ 별첨 :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보건복지가족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

4. 권고결과

영유아 보육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보건복지가족부, 16개 광역자치단체

- 영유아 보육사업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동시에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중요 사업
-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육사업의 실효성과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
- ※ '04년 보육사업이 국가재원 배분 중점분야로 선정된 이후 '08년도 예산(29,981억 원)은 '04년도 예산(8,752억 원)의 3.4배 이상 증가

(단위 : 억 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예산액	8,752	13,355	17,286	22,918	29,981

- ※ 일반국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주위에서 만족스런 보육시설을 찾을 수 없다”고 응답('05. 6, 국무조정실 설문조사)
-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가 불투명하며, 보육시설 보조금 관련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여 학부모들의 불신 초래
 - ※ 최근 3년간 보육시설 부당지원 환수금액('08.11. 7, 보건복지가족부)
 - '05년 4억4천만원 → '06년 26억원 → '07년도 30억원(05년 대비 6.8배 증가)
-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부 보육시설의 보조금 부당청구 및 사용을 방지하며,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1. 영유아 및 보육시설 현황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현황

- 저출산 현상으로 전체 영유아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지속 증가

(단위 : 명,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영유아수	3,416,132	3,253,131	3,069,087	2,875,966	2,810,293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858,345 (25.1)	930,252 (28.6)	989,390 (32.2)	1,040,361 (36.2)	1,099,933 (39.1)

※ '03년 대비 '07년 영유아수 18% 감소,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28% 증가

□ 보육시설 현황

(’07.12. 기준, 단위 : 개소, 명, %)

구 분	계	국공립보육시설	국공립 이외 보육시설
시 설	30,856(100)	1,748(5.67)	29,108(94.33)
영유아수	1,099,933(100)	119,141(10.83)	980,792(89.17)
종사자수	169,585(100)	15,628(9.22)	153,957(90.78)

※ 국립보육시설은 없음

※ 국공립 이외의 보육시설은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21인 이상), 가정보육시설(20인 이하)로 구성(영유아보육법 제10조)

2. 예산 및 보조금 현황

□ 보육시설 예산 현황('08년)

- '08년 전체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97.7%인 약 2조 9,282억 원이
보육료 지원(56.1%) 및 시설운영 지원(41.6%) 보조금으로 편성

(단위 : 백만 원, %)

국비·지방비 예산	보육료 지원	시설운영 지원	평가인증	기 타
2,998,110 (100%)	1,682,716 (56.1)	1,245,529 (41.6)	20,997 (0.7)	48,868 (1.6)

- 보조금(보육료 및 시설운영지원)의 세부 항목

보조금	세 부 항 목
보육료 지원 (아동지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시설운영 지원	인건비 지원, 장애아 보육지원,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개선 및 기본보조금

-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규모('07년)

(단위 : 아동수, 백만원)

	총계	차등보육료	만5세아무상	장애아	두자녀 이상
지원아동수	859,353	586,836	145,303	17,615	109,599
지원금액	1,378,395	968,129	255,382	52,203	102,681

※ 전체 영유아의 31%,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78% 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음

□ 보조금 지급절차

구분	지급대상	청 구		지 급
		보호자	시설장	자치단체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아동	지원대상 증빙서류 보육시설에 제출	매월 보육료 및 시설운영 지원 보조금 e-보육시스템 이용하여 일괄신청	관련서류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통장으로 입금
시설운영 지원	지원시설로 지정된 시설	-		

※ ‘e-보육시스템’은 보육시설↔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가족부를 연결하여 보육료 및 시설운영 보조금 지원 신청을 처리하는 온라인시스템

4.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점검하고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06년 시행)
 - － 평가인증 지표는 40인 이상 시설은 7개 영역 80항목, 40인 미만은 5개 영역 60항목, 장애아전담시설은 7개 영역 85항목으로 구성
 - ※ 평가인증 실시 결과 보육시설 변화도와 개선도에 대하여 학부모 70.3%, 보육시설장 81.4%가 보육시설이 개선되었다고 응답('07. 12. 여성가족부)
 - ※ 현재 평가인증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위탁 받은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정규 인센티브제도는 없고 참여종사자(1회)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 수당 지급('08년 한)
 - ※ 일부 자치단체에서 평가인증 수수료 30만원 또는 격려금 등 지원

1.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1-1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수립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심사기준 수립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심의항목별 배점내역 등 심사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조례에 반영하도록 지침 시행
-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고 재위탁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하게 하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 보육지침에 심사기준 표준안 제시 및 자치단체 조례에 심사기준 반영

□ 국공립보육시설 재위탁 심사기준 수립

- 심의항목 별 배점내역 등 구체적 심사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조례에 반영하도록 지침 시행
- 재위탁 심의항목에 학부모 및 보육교사 의견반영 신설
 - － 해당 보육시설의 아동과 교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학부모 및 보육교사 만족도를 재위탁 심의항목에 포함
- 재위탁을 신청할 수 없는 배제기준(예 : 연 시정명령 2회 초과 불이행 등)을 마련하여 부적격 수탁자의 재위탁 진입 차단

⇒ 보육지침에 재위탁 심사기준 표준안 제시 및 자치단체 조례에 재위탁 심사기준 반영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 심사결과 공개

- 수탁자 선정 심사결과 등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일반인에게 원칙적으로 공개

⇒ 보육지침에 반영

☐ 심사위원 심사매뉴얼 마련

- 심사위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심사의 통일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에 대한 심사매뉴얼 마련

⇒ 보육지침에 반영

1-2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공정성 확보

☐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은 자격에 따라 공개모집하거나 지역주민단체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위촉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

☐ 위원자격별로 균등구성을 위한 구성 비율 설정

- 특정자격을 갖춘 위원이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 비율 상한비율 및 하한비율 설정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

☐ 이익충돌방지 규정 신설

- 위원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장치 마련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2. 보육시설 회계관리 투명성 강화

2-1 보육시설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

□ 경비지출시 시설전용 카드 사용 강화

- 시설전용카드 사용이 일정비율(지역규모 별로 비율 설정) 이하 시설은 회계관리 점검 강화 및 시정 명령, 재위탁 평가시 반영
 - － 현금영수증 사용 및 계좌이체는 시설전용카드 사용으로 인정
- 시설전용카드는 유흥, 퇴폐, 향락업종과 같이 보육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 사용제한

⇒ 보육지침 및 재무회계 규칙 개정

□ 자치단체와 보육시설 회계시스템을 전산망으로 연계

- 회계시스템 연계망을 구축하되 단계별(예 : 1단계－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 2단계－ 기타 보육시설) 도입
- 회계시스템상 수입·지출 결의서, 회계장부, 정산서 등 회계 관련 장부 자동 생성 및 출력 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시스템 구축 예산 우선 지원

□ 시설전용카드 사용율에 따라 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지급

- 시설전용카드 사용율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정부포상이나 정부사업에서 우선권 부여

⇒ 보육지침 및 예산에 반영

2-2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 지원대상자의 소득변경 정기점검 및 지원액 조정

-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금융정보 및 지원내역 등을 실시간 조회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복지정보망 구축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소득변경을 일제 정기점검(예 : 반기별)하고 소득변경이 확인된 경우 지원 금액 조정
 - － 소득변경 미신고로 과다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

⇒ 보육지침에 사후관리 관련 규정 반영

3.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견인장치 활성화

3-1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기능 내실화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수립

- 위원 임기 및 자격, 위원 선발절차, 회의운영, 심의사항 시행 및 결과보고, 회의결과 공개 등 기능 강화에 필요한 실질적 기준 마련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보육지침에 신설하고 e-보육시스템에 공지

3-2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 평가인증 지원체계 마련

-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정부 지원 차등화를 통한 평가인증 참여 유도

⇒ 보육지침 및 예산에 반영

☐ 평가인증 지표 개선 및 결과공개

- 평가과정의 간소화 및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 지표 개선
 - － 행정기관의 지도·감독과 중복되는 사항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평가항목을 간소화
 - － 보육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육종사자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보완

- 지표 개선 이후 평가인증시설별로 인증결과 관련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시설선택에 정보제공

⇒ **평가인증 지표 개선, 보육지침에 평가인증 결과 공개근거 마련**

3-3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보상 강화**

- 안전교육교재 및 보육시설 안전매뉴얼 개발·보급
 - － 보육시설의 안전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종사자, 영유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교재를 개발·보급
 - － 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준수하도록 안전매뉴얼 보급교육

⇒ **안전교육교재 및 보육시설 안전 매뉴얼 개발·보급**

- 영유아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거나 일정기준 이상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가 보장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보육지침 개정**

III

조치사항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관련법령	조치기한	관련부처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관련	1-1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수립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표준안 수립	보육지침	'09. 12월	보건복지 가족 부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 심사결과 공개	보육지침	'09. 12월	
	○ 심사위원 위탁심사 매뉴얼 마련	보육지침	'09. 12월	
	○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기준 조례 반영	조 례	'09. 12월	자치단체
	1-2 지방정책보육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공정성 확보			
	○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한 위원 위촉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09. 12월	보건복지 가족 부
	○ 위원자격별로 균등구성을 위한 비율 설정	“	'09. 12월	
	○ 이익충돌방지 규정 신설	“	'09. 12월	
보육시설 회계관리 관 련	2-1 보육시설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			
	○ 경비지출시 시설전용 카드 사용 강화	보육지침, 재무회계 규 칙	'09. 12월	보건복지 가족 부
	○ 자치단체와 보육시설 회계시스템 연계 - 1단계 : 국공립보육시설 - 2단계 : 기타보육시설	-	'09. 12월 '10. 12월	보건복지 가족부 및 자치단체
	○ 시설전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지급	보육지침	'09. 12월	보건복지 가족 부

분야별	세부개선과제	관련법령	조치기한	관련부처
보육시설 회계관리 관 련	2-2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 지원대상자 소득변경 정기점검 및 지원액 조정	보육지침	'09. 6월	보건복지 가 족 부
보육시설 서비스수준 제고관련	3-1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기능 내실화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 준」수립 및 공지	보육지침 e-보육	'09. 12월	보건복지 가 족 부
	3-2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 평가인증지원체계 마련	보육지침	'09. 12월	보건복지 가 족 부
	○ 평가인증 지표 개선	-	10. 6월	
	○ 평가인증 결과 공개 근거 마련	보육지침	10. 6월	
	3-3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강화			
	○ 안전교육교재 및 안전매뉴얼 개 발 및 보급	-	'09. 12월	보건복지 가 족 부
	○ 안전공제회 또는 일정기준 이상 의 보상한도 및 보상범위가 보 장된 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 가입 가이드라인 제시	보육지침	'09. 6월	

1. 의안개요

- 감정평가의 부실은 과다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반 상승을 유발하며 도로건설·공업단지 조성·택지개발사업 등 국책사업 수행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른 부동산 감정평가 분야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 심의내용

- 부동산 감정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및 평가 심사, 감정평가 관련 기준, 감정평가 자격관리,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 향상 등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개선 및 평가심사제 도입
- ▶ 감정평가 기준 등 제도의 정비
- ▶ 윤리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사 자격관리 강화
- ▶ 부동산 가격조사의 공신력 및 경제성 제고
- ※ 별첨 :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에 권고

4. 권고결과**5. 비 고**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 '90년대 이후 각종 공공사업 증가, 부동산관련 조세강화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감정평가에 대한 관심 급증
 - 감정평가제도가 각종 부동산 관련 부패사건의 핵심적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부패를 조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언론 등으로부터 부실 감정평가, 평가가격 담합, 과다 보상 등 감정평가 신뢰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 감정평가의 부실은 과다보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 동반 상승을 유발하며 국민경제 전반에 악순환 초래
 - 과다보상은 도로 건설, 공업단지 조성, 저렴한 택지 공급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 국책사업 수행에도 부담으로 작용
- 감정평가 제도 문제는 비단 부동산 관련 비리에 그치지 않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그동안 개선노력 미흡
 - 감정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며,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격 조사의 경제성과 균형성을 확보하여 감정평가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 대두

I

일반현황

1

감정평가 제도개요

□

감정평가사 업무영역

- 공익사업 보상평가, 국·공유지 평가, 택지비평가, 금융기관 담보 평가, 경매·소송, 일반거래 등 감정평가

【감정평가 종류 및 담당기관】

구 분		담당기관	비 고
복수평가	보상평가	개방	* 토지보상법, 부동산가격 공시법
	국공유재산 평가	개방	
	택지비 평가	감정원+민간	* 주택법(감정원+협회추천)
단수평가	담보, 경매·공매·소송 평가 등	개방	

※ 감정평가 외에 토지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등 부동산 가격 조사 업무 수행

2

감정평가업계 현황

□

감정평가업계 운영

-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평가업자(법인 23개, 개인 213개)의 2원 체제로 운영
 - － '89년 경쟁체제 도입 이후 감정평가시장은 완전경쟁체제로 운영

□ 감정평가사 수

구 분	합 계	법 인			한 국 감정원	개 인 사무소	준회원	미가입
		계	우수법인	기타법인				
평가사	2,727	2,219	1,976	243	222	219	40	27

□ 감정평가 시장규모

- 공시지가 조사 등을 포함한 연간 감정평가시장(수수료 기준) 규모는 5,500억원을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감정평가					지가조사, 변동률 등		
	소계	보상	국공유지· 택지비	공매·경매· 소송	담보평가 일반거래	소 계	공시지가 등 산정	지가 변동률
5,671	4,340	815	350	500	2,675	1,331	1,106	225
100(%)	76.5	14.3	6.2	8.8	47.2	23.5	19.5	4.0

(’07년말 기준,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 토지보상 현황

- － 최근, 행정·혁신도시 등 국가균형 발전사업, 신도시 개발 등 택지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매년 막대한 토지보상금 지급

▶ 연도별 토지보상금 추이

연도	’98~’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보상금(조원)	6~6.5	10.0	16.2	17.3	29.9	25.2

(국토해양부 자료)

- ◆ 도로·하천·택지조성 등 개발사업으로 토지보상금 지급 규모는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

-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일정 규모이상 보상평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가 제3의 기관에 추천 의뢰하여 선정
 - 제3의 기관은 공신력을 갖춘 중립적인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여 공정성 담보

□ 감정평가 심사 시스템 도입 운영

-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제3의 기관에서 감정평가 심사기능 수행
 - 일정규모 이상 사업 평가보고서 심사, 국가·공공기관 등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 적정여부 심사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반영

□ 토지소유자 추천제도 폐지

- 보상 평가시 토지소유자가 1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추천제는 폐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반영

□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등 마련

- 보상평가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객관적 기준 등 마련 운영
 - － 제3의 기관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기관은 감정평가의 기술요인, 가격요인 등 경쟁요소를 반영한 심사 항목으로 구성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마련
 - － 감정평가업자가 인터넷상에서 신청하고 전자심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선정 절차 간소화

⇒ 보상평가 시행기관 대상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안」 마련 (국토해양부)

- 담보평가는 보상평가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 운영
 - －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미운영 금융기관에 대해 평가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 운영토록 유도
 -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등 제시
- ⇒ 금융기관 대상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안 마련(금융위원회)

2 감정평가 기준 등 제도의 정비

□ 감정평가실무지침 법적근거 마련

-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자체 운영중인 토지보상평가지침 등 9종의 감정평가실무지침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제정 운영
 - － 감정평가 실무지침 내용 상당 부분이 「부동산공시법령」과 중복되므로 법령 정비와 함께 지침 법제화
- 감정평가 실무지침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제정하거나, 제3의 기관에서 제정·운영하되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 시행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반영

□ 감정평가보고서 작성기준 개선

- 감정평가 기재사항 누락, 미비, 모호성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쟁송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정평가보고서 작성기준 개선
 - － 현행「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정평가 보고서 필수적 기재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
 - － 평가목적·대상별 표준 평가 보고서 서식을「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에 명시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반영

□ 불합리한 감정평가 수수료율 체계 개편

- 감정평가에 투입된 노력, 시간, 난이도, 산출물 완성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개편
 - － 평가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종가제 비율을 축소하고 업무량·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하는 종량제 요소를 보다 확대
 - － 종가제 축소 및 종량제 확대의 적정 수준과 그 방법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 실시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반영

3 윤리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사 자격관리 강화

□ 감정평가사 제재 요건 강화

-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제26조(자격의 취소)에 조항 신설

- 부실(허위) 감정 평가를 제재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 부동산가격공시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감정평가사 벌칙 적용에 있어 ‘고의’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도 포함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제4호 규정 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반영

□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법제화

- 특수물건 평가 등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운영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 공장 등 산업시설, 특수기계, 무체재산권, 어업권, 광업권, 온천, 특수구조물 등 전문분야 평가 교육과정 운영
 - － 전문분야 평가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 해당 분야 평가 참여 기회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 전문분야 평가 교육과정은 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개설·운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반영

□ 부동산 공시가격 상시 조사 체계 구축

- 감정평가과세 기준과 국가 정책수행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공신력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가격조사 전담기관 운영
 - － 공시가격 조사관련 기능을 전담기관으로 통합하여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가격기준 정비, 조사방법 및 기법 등 통일된 기준 적용
 - ※ 외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조사(과표 등) 기능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공기관 수행
 - － 지가변동을 조사 업무는 부동산 가격조사 전담기관으로 일원화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반영

□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경제성 확보

- 표준자표준주택 공시가격 등 부동산 가격조사평가는 복수평가에서 단수평가제로 개선
 - － 단수 평가제로 전환은 부동산 가격조사 전담기관 운영 정착, 가격조사 시스템 정비 소요 기간 등을 감안 중기 과제로 추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반영

□ 부동산 가격·평가 정보 통합 관리 및 연구기능 강화

- 부동산 가격·평가 정보 DB를 부동산 가격조사 업무 전담기관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체계로 재정립

-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평가 관련 정보의 상호 공유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등
- 감정평가 기준 정립 및 평가기법 개발,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 방법 개선 등 감정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반영

□ 부동산 공시가격 객관성 제고방안 마련

-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 정보를 공시가격 조사·평가에 활용함으로써 공시가격의 객관성을 높일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 부동산 실거래가 축적 등 여건을 감안 중장기 과제로 검토 추진
- ※ 부동산 공시가격을 보상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연구검토 필요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반영

- ☐ 권고일자 : 2008. 12. 15.
-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조치기한	비 고
1.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개선 및 평가 심사 제 도입	-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감정평가 심사 시스템 도입 운영 - 토지소유자 추천제도 폐지 -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등 마련	'09.12. '09.12. '09.12. '09.12.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2. 감정평가기준 등 제도의 정비	- 감정평가실무지침 법적근거 마련 - 감정평가보고서 작성기준 개선 - 불합리한 감정평가 수수료율 체계 개편	'09.12. '09.12. '09.12.	국토해양부
3. 윤리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사 자격 관리 강화	- 감정평가사 제재요건 강화 -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법제화	'09.12. '09.12.	국토해양부
4. 부동산 가격 조사의 공신력 및 경제성제고	- 부동산 공시가격 상시 조사체계 구축 -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경제성 확보 - 부동산 가격·평가 정보 통합관리 및 연구 기능 강화 - 부동산 공시가격 객관성 제고방안 마련	'10. 6. '11.부터 '10. 6. 중장기	국토해양부

제5절 부패영향평가

1. 의안개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령」에 내재하는 과도한 기업의 준수부담, 불명확한 재량규정, 부패통제장치 미비 등으로 인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 개선안 마련

2. 심의내용

- 공산품 인증 관련 법령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 행정규칙)에 내재하는 과도한 각종 인증·검증제도에 의한 시험·검사의 중복에 따른 고비용, 제도상 불명확한 규정 등에 의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 권고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 안전인증 대상 지정 등 관련규정의 명확화
- ▶ 정기·자체검사 제도의 과도한 준수부담 완화
- ▶ 기업불편 검사시험제도 정비
- ▶ 부패통제장치 미비사항 정비

※ 별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령」 부패유발요인 제거를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 권고

4. 권고결과

5. 비 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령」부패영향평가 결과 법령 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지식경제부

- 공공·민간분야를 포함 57개 법령 140여개의 각종 인증·검증 제도로 업체는 한 품목에 대해서 KS, Q, 안전 등 중복 인증·검증은 물론 인증절차에 따른 시험·검사의 중복으로 인한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 이에 인증 관련 법령 중 하나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증·검사과정에서의 과도한 기업의 준수부담의 완화와, 불명확한 재량규정의 명확화, 부패통제장치 정비 등을 통한 부패유발요인 제거필요에 의하여 관련 법령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는 것임
- ※ ‘국가규격 및 적합성 평가체계의 혁신방안 연구’(산업자원부, ’06.1)에 따르면 1개의 인증을 얻는 데 약 1,388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업체당 평균 2.73개 인증 보유,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용까지 합칠 경우 총 매출 손실액은 무려 14조원에 육박

주요 법령개선 권고내용

1 안전인증 대상 지정 등 불명확화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1-1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지정 등 업무처리 기준 투명화

현 황

-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 등의 권한을 행사

문제점

- 위원회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지정하는 객관적인 지정요건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아 재량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 인증대상품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소비자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 또는 피해발생 사실 등을 고려한 인증대상품 재검토 필요성과
 - － 지정된 인증대상공산품일 지라도 시장상황이나 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간 경과나 소비자 위해발생 등에 따른 인증대상품 해당 여부의 타당성 등을 일정 주기별로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지정하는 요건과 기준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간 경과나 소비자 위해발생 등에 따른 인증대상품 해당 여부의 타당성 등을 일정 주기별로 재검토할 수 있는 규정 신설

1-2 조건부 안전인증 제도의 불합리한 요인 제거

현 황

- 안전인증 시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과 동 조건의 이행결과를 보고할 것을 조건부로 안전인증 발급가능

문제점

- 조건부 안전인증을 규정하면서 보완의 기간과 이행결과 보고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 － 부관으로 인증기준의 본질적 사항인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를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인증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조건부 안전인증의 요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이를 보완할 기간과 이행결과 통보시한을 명시

현 황

-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성 유지·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증공
산품 및 공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하도록 규정
- 정기검사 합격 및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 정기검사를 면제(전부 또는 일부) 받고자 하는 자는 최근 2년간
정가·자체검사 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공정심사, 제품검사, 공장
심사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면제하고 있음

문제점

- 정기검사를 “연 1회 이상”이라고 검사횟수를 불명확하게 정하여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이 저하
- 모델별 안전인증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단순 디자인만
바뀐 모델이거나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제품인 경우 등에는 연
간 수십 여회의 공정·안전기준·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준수
부담 과다
- 최근 2년간 정기검사 실적이나 자체검사 실적에 따라 제품검사
나 공장심사 등 정기검사의 일부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 － 자체검사 실적은 정기검사 항목 중의 일부분의 구성요소(제조
설비, 검사설비, 자체검사 기준·방법)로서, 정기검사의 합격 여
부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총합에 의한 일정 점수의 산출에

따라 결정됨에도

- 이를 정기검사 실적과 더불어 일부 면제범위의 새로운 독립적 요건으로 정함은 이 법 체계상 상호 규정 간 모순이고
 - 법 집행에 있어서도 자체검사 실적만으로 일부면제를 적용할 실익이 없어 면제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
- 시행규칙으로 최근 2년간 검사실적 제출의무를 신설하여, 서류준비 등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인증기관 자체에서 검사실적 기보관)
- 정기검사는 안전인증과 유사(또는 동일)하게 검사하므로 안전인증 후 하나의 제품에 최소한 2년간은 제품·공장·공장심사를 하게 되어 안정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 매년 정기검사를 하는 것은 업체비용 부담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아울러 2년 이상 연속하여 적합하여야 1회에 한하여 정기검사 면제하는 등 지나치게 면제범위를 축소 설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우려
- 한편, 「제조물책임법」상 최종적으로 기업의 자기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확보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각종 인증·검사제도의 강화는 기업에 대한 준수부담을 가중시키고 창의적 기업활동을 위축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정기검사의 검사횟수를 연 1회로 명확히 규정
- 정기검사 합격 시 당해 제품의 생산국별, 업체별, 제품별, 사고 발생 빈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수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면제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정하도록 면제기간의 탄력적 적용 근거규정 신설

- 정기검사 면제 및 최근 2년간 자체·정기검사 실적 제출의무 삭제하고,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자의 면제기간 동안 자체검사 실적 제출규정 신설
- 면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일부면제 규정 삭제

3 검사시험제도 운용 규정상의 부패유발요인

3-1 검사수수료 출장경비 징수체계 개편(사후정산제 도입)

현 황

- 안전인증기관과 시험·검사기관은 안전인증·정기검사, 시험·검사사업체로부터 제품검사비·공장심사비·출장비 등 수수료 징수토록 규정
 - ※ 출장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 안전인증은 모델별(법제14조)로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각 모델별 인증에 따른 제품검사비·공장심사비·출장비를 각각 부담

문제점

- 출장비의 경우, 국외는 업체에서 항공료를 사전 발권·심사자에게 제공하고, 숙박비·일바·식비는 인증기관에 사전 송금하고 있으나
 - － 운용과정에서는 약자인 업체는 출장한 심사자의 출장경비 중 일부 숙박비나 식비 등을 업체가 부담하여 이중부담 문제점 발생

- ※ 국내출장은 출장비 일체를 사전송금, 근거리(평택 등)도 숙박비 수령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사후 정산제 도입하여 출장비 지급체계 개선
 - － 항공료와 숙박 등 출장에 따른 경비는 심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비와 식비는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사후에 일괄 청구

3-2 인증기관간 정보공유체제 미흡으로 인한 기업불편 초래

현 황

- 사업자가 공장이전 등으로 신규 안전인증 신청이나 정기검사 등의 지리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안전인증 절차방법 등이 전산시스템화되어 있어 사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할 경우 체계적으로 인증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임

문제점

- 동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사업자의 안전인증 정보가 인증기관 간에 상호 공유되지 않아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신청 건은 거의 없음
 - ※ 사업자의 안전인증에 대한 정보 유출 등이 우려될 수 있으나, 법률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임직원은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안전인증기관 간에 정보공유(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이관 편의성 등 안전인증 서비스 향상

4 부패통제장치 미흡으로 인한 부패유발요인

4-1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조사 절차 명확화

현 황

-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검사일시, 검사 대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리도록 하고 있고,
- 법 제32조(보고 및 검사)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조사·검사 시 7일전 사전통보 규정 등 조사·검사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 －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도 공무원의제 규정(법 제37조)을 두어 인증기관 임직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문제점

-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인증·인증취소, 정기검사 실시 및 자체검사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면서
 - － 자료제출 요구, 출입 조사, 서류 확인, 질문, 통지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규정을 두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에 배치될 우려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안전인증기관의 조사검사 시 법 제32조(보고 및 검사)를 준용토록 하는 규정 신설

4-2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로 예측가능성 제고

현 황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정하면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만 규정

문제점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일을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라고만 정하여,
 - － 위반행위 적용 기산점이 최초 행정처분일인지, 위반행위 적발일인지, 위반행위의 시작일인지 등 위반행위 적용 기산점이 불명확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최초의 행정처분 일로부터 다시 적발된 날로 정하여 처분기준을 명확화

현 황

- 인증심사시 인력 수급과 편의성 등으로 대부분이 동일회사에 대해 동일직원이 심사하고 있음(Matching System)
- 정기검사에서도 같은 심사원이 같은 회사를 심사하고 있으며, 인증 심사와 정기검사를 동일 심사원이 심사하는 경우도 발생

문제점

- 인증심사와 정기검사 과정에서 같은 회사를 같은 심사원이 심사하는 경우 업무유착 우려와 심사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장치가 미흡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인증심사와 정기검사 과정에 원칙적으로 동일 심사원 배정 제한
 - － 같은 회사의 최초 인증심사와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같은 심사원이 심사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제한
- ※ 인력 수급을 감안, 같은 심사원이 같은 회사의 공산품 안전인증을 연속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적 제한하는 방안 강구(일정기간 순환 근무 등)

현 황

-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를 두고 공무원 이외에 한국소비자원장이 지명하는 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지정 등 이 법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하는 권한을 보유
- 한편, 법 제37조로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조항을 두면서 공무원이 아닌 인증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의제규정은 없음

문제점

- 심의위원회에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에 관한 지정 등에 관한 심의 등 정부정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 미비

평가결과 : 개선의견

-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형법상의 공무원 의제규정 추가

1. 의안개요

- 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의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등 재량권 남용에 따른 부패소지가 있어 관련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 마련

2. 심의내용

- 주택 등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의 설치여부가 허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 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현실성 없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관련 규정 삭제
 - ▶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
 - ▶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45조를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 본 예시(안)을 참조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3. 의결결과

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개선 권고

4. 권고결과

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부패영향평가 —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

해당기관

자치단체

I.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주택 등의 건축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규정 한 것임
-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의 설치여부가 허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도시계획조례」의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등 재량권 남용에 따른 부패소지
 - ※ 건축법·국토계획법 등 법령별로 ‘도로’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며, 현황도로 등 기존 관습도로의 인정여부가 불투명
- 국민신문고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의 문제점 제기
- 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한 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
 - ※ 자치단체별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하고 있으며, 수도권 인근은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일률적 조례 개정은 곤란(광역시 소속 자치단체 제외)

II. 현 황

□ 도시계획조례 상위법령 : 국토계획법시행령 「개발행위허가기준」

-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총 144조로 구성)
 - － 당초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2003.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전면 시행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 기반시설 :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 할 것
 - － 건축물의 건축 :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
- ※ 도시지역 :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 지역
비도시지역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마. 기반시설

-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계획조례

- 「도시계획조례」는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총 80조로 구성)
 - － 개발행위허가 규모(제19조), 개발행위허가기준(제2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21조) 등
 - ※ 2003. 1월 국토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도시계획조례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보급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도시계획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운영
- 「도시계획조례」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평가대상조문

▲ ○○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준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략)

Ⅲ. 문제점

○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조례」 규정

- － 도시계획조례상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군 지역의 경우 **군관리계획**)의 결정여부가 개발행위허가의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매번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개별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도로는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이 아님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 도시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 현실성 없는 규정에 따른 운영상 혼란 초래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도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주고 있었으나,
- '07년도 정부합동감사시 이에 대해 지적을 받게 되자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엄격히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게 되자
-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이 설치하는 시설의 진입도로 등에 대해서는 주변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공문 시행**(’07. 8.)

※ 실태조사결과 도시계획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1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8개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도시관리계획 관련 조항 삭제

○ 개발행위허가시 ‘도로’ 대한 판단기준 모호

-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의 요건을 국토계획법상의 도로로 할 것인지, 건축법상의 도로로 할 것인지(도로의 폭 등)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령적용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재량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패발생 소지

※ 실태조사결과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도시지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의 도로요건과는 달리, 도로 (3미터이상)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

※ 도로의 정의

- 국토계획법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로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

- 건축법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개발행위허가시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의 관리 기능 미흡
 - 도로의 설치여부는 개발행위허가의 중요 요건으로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시 설치되는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고 도로대장에 등재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 제4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개발행위허가시 실제로 도로는 설치되고 있지만 법령의 불비로 지정·공고를 하지 못하는 등 개설된 도로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이 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허가시 분쟁발생 예상
 - ※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시 개설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지정고시를 하고 있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법령의 근거는 없으나 도로로 지정고시하여 관리(실태조사)

VI. 개선방안

1.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
 -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
 -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과 관련하여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 규정 삭제
 - 개발행위허가시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45조를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하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본 예시(안)을 참조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예시(안)]

당 초	개선(안) 예시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u>도시관리계획(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2. ~ 3. (생략) 4. (신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u>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u>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u>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u> 2. ~ 3.(생략) 4.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6절 법령·예규, 기타

I. 법령·예규

II. 기타

I. 법령·예규

1. 의안개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2008. 2. 29.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37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제정되어 국가청렴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및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에 맞추어 정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주요골자
 - 가.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의 구성 체계는 총 4개장, 27개조,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됨
 - 나.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서 작성, 평가결과 통보, 재평가 및 처리기한 등 부패영향평가업무의 절차를 정함
 - 다.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부패영향평가 관련 문서와 자료의 관리 및 부패영향평가 종합자료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결결과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안」 의결

4. 비 고

1. 의안개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8878호, 2008. 2. 29.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737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제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구 국가청렴위원회의 기존 업무인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주요골자
 - 가.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의 구성 체계는 총 8개장, 54개조 및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됨
 - 나. 신고자 상담, 신고등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 신고사항의 확인, 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이첩, 고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조사결과와 통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조사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 고발사항의 수사결과 통보, 재정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바. 처리상황 점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비밀누설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사. 신고기록의 이관 보존 절차, 보존기간의 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아. 기록의 열람 및 그 밖의 보존 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결결과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안)」의결

4. 비 고

1. 의안개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2008. 2. 29.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37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구 국가청렴위원회의 기존 업무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주요골자
 - 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의 구성체계는 총 5개 장, 14개조로 구성됨
 - 나. 비위면직자의 범위, 업무관련성,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취업제한 규정 위반여부에 관한 점검결과 보고 절차, 관계기관 자료제출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 취업자의 해임요구,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결결과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안)」 의결

4. 비 고

1. 의안개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2008. 2. 29.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37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구 국가청렴위원회의 기존 업무인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주요골자
 -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2008. 2. 29. 공포·시행),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총 5개장, 25개조, 부칙 3개항으로 구성
 - 다. 형식, 명칭, 내용 등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 교육,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바. 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등 행정사항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결결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안」의결

1. 의안개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8878호, 2008. 2. 29.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737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구 국가청렴위원회의 기존 업무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등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주요골자
 -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정안의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사무 운영지침」의 구성 체계는 총 5개 장, 44개 조,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됨
 - 다. 신고서식의 비치, 신고 상담, 신고 접수절차 등 신고 등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신고사항의 인계, 신고의 보완, 출석 및 진술 요구, 신고처리의견서 작성 등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 신고기록의 보존, 보존기간, 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 등 신고기록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바.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허가여부의 결정, 열람·등사의 제한 등 신고기록의 열람·등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결결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사무 운영지침안」의결

4. 비 고

1. 의안개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2008. 2. 29.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37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제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은 총 5개장, 36개조,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됨
- 나. 신고자 신분상 불이익 등의 내용, 신분보장조치등의 내용, 신분보장조치등 요구의 접수·처리절차 및 방법, 신분보장조치등을 불이행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 내용,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서의 접수·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신변보호요구의 접수·처리 절차 및 방법, 긴급 및 사전 신변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 과태료 부과기준결정 및 통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조사문서 편철 및 신고자 보호상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결결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안」의결

4. 비 고

1. 의안개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2008. 2. 29.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37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보상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가.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의 구성 체계는 총 6개장, 47개조,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됨
- 나. 정부포상 대상과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 포상금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포상금의 결정, 보상금의 지급신청, 지급사유, 지급신청 기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감액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 등의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 마.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 지급절차, 지급시기 및 보상금 등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바.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연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결결과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안」의결

4. 비 고

1. 의안개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8호, 2008. 2. 29.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으로 「부패영향평가지침」의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법령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지침을 그에 맞게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법령 제정('08. 2. 29)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절차 신설
 - 평가 결과의 관계기관(규개위, 법제처) 통보사항 반영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 명칭 및 법령명 수정 등
- 법규별(법령·행정규칙,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독립 편제
 - 제개정 법령 등과 현행 법령 등의 평가절차 구분 및 명확한 절차도 제시
 -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가 쉽게 자율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모형 체크리스트 등 제공

3. 의결결과

「부패영향 평가 지침 안」의결

4. 비 고

1. 의안개요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가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등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07년 9건, '08년 상반기 5건)하고 있으므로, 비위면직자에게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취업제한규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때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 － 제3조의2(취업제한 안내)

3. 의결결과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일부수정안 의결

4. 비 고

제9차 제1분과위원회(2008. 8. 4.) 사전검토
(분과2008-31)

1. 의안개요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뿐만 아니라 종교를 이유로도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종교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특정 종교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공무원행동강령 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 － “지연·혈연·학연”을 “지연·혈연·학연·종교”로 하고,
 - － “특혜를 주어서는”을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으로 한다

3. 의결결과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4. 비 고

제12차 제1분과위원회(2008. 9. 22.) 사전검토
(분과2008-45호)

1. 의안개요

-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 강령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며,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심의내용

- 직무관련자 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1호 사목)
- 행동강령 운영기관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아목)
-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우선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절차 마련(안 제4조)
-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 확대 및 상담 의무화(안 제5조)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대상 확대(안 제13호)
-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안 제14조의2)
-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 확대(안 제15조)
- 금전차용 등 금지 범위 확대(안 제16조)
- 경조사 통지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안 제17조)
-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특례(안 제24조)

3. 의결결과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4. 비 고

제18차 제1분과위원회(2008. 12. 1.) 사전검토
(분과2008-73호)

1. 의안개요

-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기준 및 서식 등을 개정 공무원행동강령에 맞추어 정비하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행동강령 적용근거를 명확하게 함(안 제3조 ~제6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를 개선함(안 제8조)
- 직무관련자가 되면 그 업무의 회피여부에 대하여 상담을 하여야 하는 이해관계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9조)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서식을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맞게 개선함(안 제13조)
- 금전거래 신고서식을 개선함(안 제14조)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근거 및 방법을 정비함(안 제25조)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 안의 내용을 반영함(별표 1)

3. 의결결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전부개정령(안) 의결

4. 비 고

제20차 제1분과위원회(2008.12. 15.) 사전검토
(분과2008-81)

1. 의안개요

- 2008. 12. 15. 제12차 전원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2008-240호「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전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제1분과 위원회에 위임한 바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중 법제처의 법제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법제처의 법제심사 과정상 수정내용 확인·검토
 - － 운영지침 본문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 이 운영지침은 등 12개
 -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 제1조(목적) 정하는→ 규정하는 등 122개

3. 의결결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수정안 의결

4. 비 고

제20차 제1분과위원회(2008.12. 15.)－ 분과2008-81
제12차 전원위원회(2008.12.15.)－ 2008-240호

II. 기 타

1. 의안개요

- 정부조직 개편(2008. 2. 29.)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새로이 출범하게 됨에 따라
- (구)국가청렴위원회에서 운영하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이 되어,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선임

2. 심의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중 부패방지 업무를 분장하는 부위원장을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

3. 의결결과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 의결

4. 비 고

1. 의안개요

- 「위원회법」 제82조제1항에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비위면직자인 A와 B가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2. 심의내용

- 비위면직자인 A와 B의 취업과 관련하여,
 - 1) 법률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공직자)인가의 여부
 - 2)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여부
 - 3) 공공기관 등에서의 취업 여부
 - 4) 퇴직일부터 5년 경과 여부에 대한 심의

3. 의결결과

- 심의결과 취업제한 위반자에 해당하여 A와 B가 각각 취업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임요구 및 재직 당시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통지

4. 비 고

제9차 1분과위원회 검토(분과2008-31, 2008.8.4)

제2장 보고사항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light blue color with a pattern of white, irregular, brush-like strokes and small white dots. A solid blue horizontal band runs across the middle of the page. The title '보고목록' is centered within this band.

보고목록

보 고 목 록

○ 전원위원회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 관	비고
------	-----	-----	-----	----

〈제2차〉

제2008-27호	'08. 5. 19.	보호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28호	'08. 5. 19.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29호	'08. 5. 19.	「생동성시험결과약효조작」건관련이첩 사항조사결과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30호	'08. 5. 19.	「고속유도전압대책비용예산낭비」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및 이의 신청 검토	신고심사단	
제2008-31호	'08. 5. 19.	「국립병원의료기기납품비리」건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32호	'08. 5. 19.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법인선정비리」 건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및 이의신청 검토	신고심사단	
제2008-33호	'08. 5. 19.	○○병원정보화사업등비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조사결과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34호	'08. 5. 19.	「예산낭비 부패행위」건 관련 이첩 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35호	'08. 5. 19.	중소기업체의 국고보조금편취 및 횡령 의혹」건관련 이첩사항조사결과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36호	'08. 5. 19.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운용 비리」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37호	'08. 5. 19.	「화학오염탐지및측정장비납품비리」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38호	'08. 5. 19.	「○○공사감리원의뇌물수수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39호	'08. 5. 19.	사회복지법인국고보조금횡령등비리 의혹」건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40호	'08. 5. 19.	「사립대학교수연구지원비횡령」건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41호	'08. 5. 19.	「건강보험요양급여부당청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42호	'08. 5. 19.	「사건당사자에게사건처리명목금품 수수」건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43호	'08. 5. 19.	「국립대학교수연구비횡령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 관	비고
------	-----	-----	-----	----

〈제3차〉

제2008-46호	'08. 6. 16.	부패행위 신고사건 처리절차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47호	'08. 6. 16.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사건 처리절차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48호	'08. 6. 16.	제3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 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49호	'08. 6. 16.	제4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 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50호	'08. 6. 16.	제5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 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51호	'08. 6. 16.	제1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 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52호	'08. 6. 16.	“하수도준설공사 관련 문서조작 및 국고재산낭비” 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 결과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53호	'08. 6. 16.	“지자체와청소업체간의비리”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54호	'08. 6. 16.	“지방자치단체보조금부정수급”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55호	'08. 6. 16.	“공공기관청사신축교환사업”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56호	'08. 6. 16.	“골재불법반출”건 관련이첩사항 조사 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57호	'08. 6. 16.	“정부투자기관납품비리”건 관련이첩 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58호	'08. 6. 16.	“광역시의원의원불법전기사용”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4차〉

제2008-68호	'08. 7. 21.	'08 상반기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 실적보고	법령제도개 선단	
제2008-69호	'08. 7. 21.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부패영향평가결과 법령개선 권고	법령제도개 선단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 관	비고
------	-----	-----	-----	----

〈제4차〉

제2008-70호	'08. 7. 21.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법령제도 개선단	
제2008-71호	'08. 7. 21.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방안	법령제도 개선단	
제2008-72호	'08. 7. 21.	제6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 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73호	'08. 7. 21.	제7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 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74호	'08. 7. 21.	제8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 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75호	'08. 7. 21.	제2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 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76호	'08. 7. 21.	제3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 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77호	'08. 7. 21.	“초과근무수당 부정청구”건 관련 이첩 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78호	'08. 7. 21.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79호	'08. 7. 21.	“군부대 유류시설 개선공사 납품비리” 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5차〉

제2008-98호	'08. 8. 18.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 운영개선대책 보고	정책협력단	
제2008-99호	'08. 8. 18.	제10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00호	'08. 8. 18.	제4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 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01호	'08. 8. 18.	제5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 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 관	비고
------	-----	-----	-----	----

〈제5차〉

제2008-102호	’08. 8. 18.	“군부대 유류시설 개선공사 납품비리 의혹”건 관련이첩사항 조사결과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03호	’08. 8. 18.	“중소기업대표기술개발지원금 횡령 등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04호	’08. 8. 18.	“보조사업자보조금 허위교부 등 비리”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05호	’08. 8. 18.	“매립폐기물처리용역사업자 선정비리”건 관련 이첩사건 재조사 요구 보고	신고심사단	

〈제6차〉

제2008-117호	’08. 9. 22.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권고	법령제도개선단	
제2008-118호	’08. 9. 22.	제11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19호	’08. 9. 22.	제12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20호	’08. 9. 22.	제12차 제1분과위원회 보호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21호	’08. 9. 22.	제6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22호	’08. 9. 22.	제7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23호	’08. 9. 22.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관련 비리”건 관련 이첩사항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24호	’08. 9. 2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건 관련 이첩사항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25호	’08. 9. 22.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관련 예산낭비”건 관련 이첩사항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26호	’08. 9. 22.	“민간병원의 영양급여 부당편취 비리”건 관련 이첩사항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27호	’08. 9. 22.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비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 관	비고
------	-----	-----	-----	----

〈제6차〉

제2008-128호	'08. 9. 22.	“약국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건 관련 이첩사항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29호	'08. 9. 22.	“예산낭비 부패행위”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30호	'08. 9. 22.	“군숙소 보수 운영경비 비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31호	'08. 9. 22.	“공사와 관련 시공사에게 뇌물수수”건 관련 이첩사항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32호	'08. 9. 22.	“정부투자기관 전산시스템 구축관련 부패”건 관련 이첩사항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33호	'08. 9. 22.	“중앙부처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7차〉

제2008-151호	'08. 10. 13.	제13차 제1분과위원회 보호사건 심의 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52호	'08. 10. 13.	제8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 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53호	'08. 10. 13.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등 비리”건 관련 송부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54호	'08. 10. 13.	“매립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자 선정” 관련 이첩사항 재조사 요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55호	'08. 10. 13.	“고교 조기졸업을 위한 성적조작 등 비리”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56호	'08. 10. 13.	“토지거래업무와 관련한 뇌물수수”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57호	'08. 10. 13.	“국립00연구기관 예산횡령 비리의혹” 관련 이첩사항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58호	'08. 10. 13.	“시금고 선정관련 금품수수 등 의혹” 건 관련 이첩사항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59호	'08. 10. 13.	“기초자치단체장과 도로관련 공무원 부패” 관련 이첩사항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60호	'08. 10. 13.	“철도안전연구시설 특혜의혹”건 관련 이첩사항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 관	비고
------	-----	-----	-----	----

〈제8차〉

제2008-181호	'08. 11. 10.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보고	법령제도개선단	
제2008-182호	'08. 11. 10.	제14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83호	'08. 11. 10.	제14차 제1분과위원회 보호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84호	'08. 11. 10.	제15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85호	'08. 11. 10.	제16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86호	'08. 11. 10.	제9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87호	'08. 11. 10.	제10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88호	'08. 11. 10.	“유령직원을 이용한 복지관 인건비 횡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89호	'08. 11. 10.	“군청직원의 인사채용 비리”건 관련 기관 송부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90호	'08. 11. 10.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부당발급 관련 신고”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91호	'08. 11. 10.	“○○식품 군납비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192호	'08. 11. 10.	“중소기업사장의 정부지원금 편취”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9차〉

제2008-202호	'08. 11. 17.	제16차 제1분과위원회 행동강령 위반 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204호	'08. 11. 17.	“정부보조금 부당집행”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 관	비고
------	-----	-----	-----	----

〈제11차〉

제2008-218호	'08. 12. 1.	제11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심의·의결사항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219호	'08. 12. 1.	제12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심의·의결사항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220호	'08. 12. 1.	“도로보수용 관급자재 납품비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221호	'08. 12. 1.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산손실 비리”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222호	'08. 12. 1.	“농지전용관련 허위공문서 작성”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12차〉

제2008-274호	'08. 12. 15.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275호	'08. 12. 15.	제18차 제1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276호	'08. 12. 15.	제13차 제2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277호	'08. 12. 15.	“요양급여 부당편취 등 비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278호	'08. 12. 15.	“공공기관 발주공사 담합비리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279호	'08. 12. 15.	“○○과학화 무인경계시스템 사업 비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신고심사단	
제2008-280호	'08. 12. 15.	“경찰관 수뢰후 부정처사 등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제2008-281호	'08. 12. 15.	“연안정비사업 관련 예산횡령 비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단	

○ 분과위원회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 관	비고
------	-----	-----	-----	----

〈제3분과위원회〉

분과2008-6호	'08. 1. 21.	초·중등교원 인사분야 제도개선 권고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재심의 요청 사항 검토 및 조치계획	제도 개선단	
-----------	-------------	--	-----------	--

〈제1분과위원회〉

분과2008-32호	'08. 8. 4.	탈세제보자 신변보호조치요구 처리사항 보고	신고 심사단	
------------	------------	---------------------------	-----------	--

〈제1분과위원회〉

분과2008-41호	'08. 9. 1.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개정령안 보고	운영 지원과	
------------	------------	---------------------------	-----------	--

〈제1분과위원회〉

분과2008-83호	'08.12.15.	세금포탈 및 세무공무원 뇌물수수의혹 신고관련 신변보호조치요구 처리사항 보고	신고 심사단	
------------	------------	---	-----------	--

부 록

1.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2. 전원위원회 ·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4.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5. 국민권익위원회 이용 안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운영지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 부처·청의 장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한한다)의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4. “지방의회의 장”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5. “교육위원회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회의 의장을 말한다.
6. “공직유관단체의 장”이란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7. “기관별 행동강령”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정·시행하는 행동강령을 말한다.

제2장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

제4조(형식) ①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위원회의 장은 조례로 정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2. 지방의회 :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
3. 교육위원회 : 「(기관명) 위원 행동강령」
4. 공직유관단체 :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표 1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이라 한다)과 이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에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행정기관의 장과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4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해당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6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6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허용되는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의 범위를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3항에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이나 기관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4조(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15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15일

③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과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권익위원회 제로미 사이트(<http://cry.acrc.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제정된 기관별 행동강령은 이 예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5호, 제5조제3호, 제4조 및 제6조 중 “교육위원회” 관련 부분은 201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6조제2항 관련)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 3 조 【적용범위】 강령은 ○○○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 4 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 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 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제11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의2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 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1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 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4조 【징계】 ① ○○○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 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6조 【교육】 ① ○○○의 장은 임직원에게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 【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포상】 ○○○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행동강령의 운영】 ○○○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강령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3조 관련)

비위 유형		수수 행위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1,000 만원 이상
의례적인 수수의 경우	금품·향응	수 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조사·수사·단속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2. 전원위원회·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전원위원회 - 총 16회(심의·의결 : 311건)

○ 부패방지 분야 심의·의결 내역 : 14회, 177건

합 계	의 결 사 항					보고사항
	소 계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예규·훈령, 기타	
177건 - 〈100%〉	60건 (100%) 〈34%〉	5건 (8%) -	26건 (43%) -	11건 (19%) -	18건 (30%) -	117건 - 〈66%〉

◆ 분과위원회

○ 회의개최 : 45회, 심의·의결 : 총 100건

구 분	개 최	처 리	의결사항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	예규·훈령, 기타
계	45회	100건 (100%)	73건 (73%)	8건 (8%)	11건 (11%)	8건 (8%)
제1분과위원회	25회	56건	34건	8건	7건	7건
제2분과위원회	18회	40건	36건	-	4건	-
제3분과위원회	2회	4건	3건	-	-	1건

◆ 신고사건 심의·의결 내역

합계	조사기관별 이첩 건수							불이첩
	소계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기타	
73건 - 〈100%〉	71건 (100%) (97.3%)	21건 (29.6%) -	32건 (45.1%) -	6건 (8.5%) -	5건 (7.0%) -	5건 (7.0%) -	2건 (2.8%) -	2건 - 〈2.7%〉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양 건 (梁 建)	· 한양대 법대학장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위 원	박인제 (朴仁濟)	· 변호사(서원합동법률사무소) · 청렴위 비상임위원 · 대한변협 공보이사	부위원장 (사무처장)
위 원	이영근 (李榮根)	· 청렴위 정책기획실장 ·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총괄심의관 ·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부위원장
위 원	김필규 (李權相)	· 변호사(김필규법률사무소) · 대구지검 형사1부장 ·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장	부위원장
위 원	이권상 (李權相)	·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 · 대비실 비서관	상임위원
위 원	이재충 (李在忠)	· 충북 행정부지사 · 행자부 지방자치국장 · 행자부 의정관리국장	상임위원
위 원	홍현선 (洪炫善)	· 청렴위 홍보협력단장 · 청렴위 제도개선심의관 · 반부패특위 기획평가팀장	상임위원
위 원	함인선 (咸仁善)	· (사)한국건축가협회 이사 · 새건축사협회 부회장 · UAI 대표	
위 원	박종렬 (朴鍾烈)	·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상임대표 · 생명평화기독연대공동대표	
위 원	신광영 (申光榮)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위 원	최상림 (崔相林)	·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사회권위원회위원장	
위 원	이유정 (李洙精)	· 법무법인 원(one)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위 원	강정혜 (姜貞嘑)	· 서울시립대 부교수 ·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위 원	황현주 (黃玄周)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원	박정훈 (朴正勳)	· 서울대 교수 · 서울대 법학연구소 소장	

4.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이영근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위 원	우경종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단장	당연직
위 원	이선숙 (李宣叔)	· 변호사 · 미국 뉴욕대 로스쿨 졸업(LLM)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위촉직 (법률전문가)
위 원	홍진원 (洪鎭元)	· 변호사 · 춘천, 수원, 서울지방법원 판사 · 법무법인 새시대 변호사	위촉직 (법률전문가)
위 원	이기화 (李起花)	· 공인회계사 · 재정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 다산회계법인 대표이사	위촉직 (회계전문가)
위 원	김원태 (金元泰)	· 감정평가사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단장 · 한국감정원 상무이사	위촉직 (감정평가 전문가)
위 원	채원호 (蔡源互)	· 경실련 정책위원 ·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위촉직 (비영리 민간단체)

먹물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이용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 갑니다.

소 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에 출범함으로써 국민권의 증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는 일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발생의 예방·적발을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 확립
행정심판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

조직도



공직자의 부패행위, 깨끗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부패신고 접수와 처리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확인절차를 거쳐 조사기관에 의뢰, 결과를 통보받아 알려 드립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이행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손해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공직자가 공직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행동강령 위반사항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
- 공용물(관용 차량, 선박 등) /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 수수
- 기타 예산의 목적의 사용, 알선·청탁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부패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는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 보상금 지급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합니다.



답답한 고충민원,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민원이 접수되면 60일 이내 조사·심의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고충민원 처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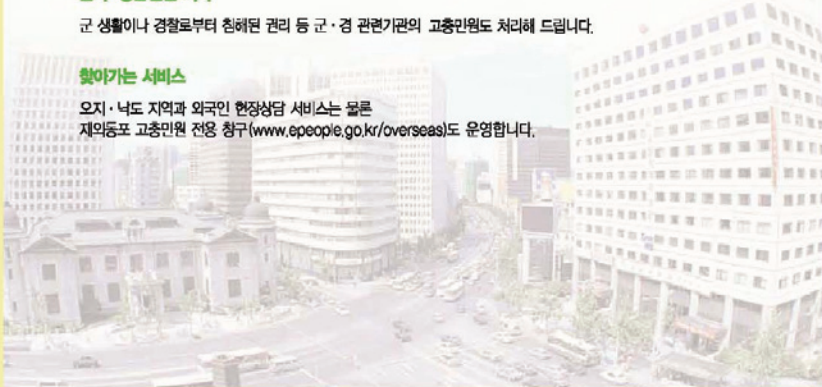
- 사정권고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표명 고충민원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법령이나 그 밖의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합 의 권익위의 합의, 권고 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로 당사자가 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권익위가 확인한 경우
- 조 정 당사자의 신청 또는 권익위의 직권으로 당사자가 조정서에 기명 날인 후 권익위가 확인한 경우로 '민법' 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
- 기 타 각하 또는 이송(이첩), 기각

군사·경찰민원 처리

군 생활이나 경찰로부터 침해된 권리 등 군·경 관련기관의 고충민원도 처리해 드립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오지·낙도 지역과 외국인 한장상담 서비스는 물론
지역동포 고충민원 전용 창구(www.epeople.go.kr/overseas)도 운영합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판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정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 각종 국가면허·인·허가 관련 처분
- 영입정지·과징금·부담금 부과처분
- 국가시험의 불합격처분
-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합의제 재결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방법

청구서 제출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에서
사식을 다운받거나, 처분청 민원실에서 사식을 교부받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합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모든 민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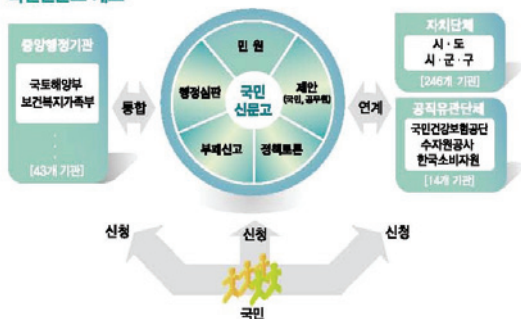
국민신문고를 통해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43개 중앙부처와 246개 지방자치단체, 14개 공공기관 등 우리나라 전 행정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을 통합·연계한 온라인 포털입니다. 누구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이나 국민 제안을 신청하면 행정부 내에서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서 처리해 줍니다. 또 처리과정과 결과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개요



call & change / Government Call Cente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부업무 중 일반사항은 상담사가 상담·안내해 드리고 전문사항은 해당기관으로 중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 일 | 08:00~21:00

토요일 | 09:00~13:00

근무시간 이후(공휴일 포함)에는 예약콜을 접수받아 다음 근무일에 처리해 드립니다.



이 · 용 · 안 · 내

방문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81(마곡동 257)
임경일팀 신관 1층 종합인권상담센터, 부패신고센터

우편

(120-705)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81(마곡동 257)
임경일팀 신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전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고충민원 · 행정심판 상담전화 1588-1517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전화 1398

팩스

고충민원 02)360-2710
부패신고 02)360-6879

인터넷

www.acrc.go.kr
www.epeople.go.kr
simpan.go.kr (권리누리.kr)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홈페이지 www.acrc.go.kr 대표전화 1588-1517



2008년도
부패방지 심의·의결레집
〈제7집〉

발행일 : 2009년 2월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TEL : 02)360-2677

FAX : 02)360-3750

인쇄처 : 금현정보프린테크

TEL : 02)2266-5011

FAX : 02)2272-5011